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545-01

---

#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정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023. 12.

[수행기관]

(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데일리푸드&메드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귀하

본 보고서를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정비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참여연구원	소속
조성호	(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박태균	데일리푸드&메드
김종복	(사)한국펫푸드연구소
최보연	(사)한국펫사료협회
송미영	(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윤혜정	데일리푸드&메드

2023. 12.

(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데일리푸드&메드



# 목 차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7
II. 연구 내용 및 범위	7
III. 연구 추진 방법 및 전략	7
IV.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제도검토	9
1.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	9
2.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현황	10
3. 반려동물 사료 의무 표시사항	10
4. 반려동물 사료 강조 표시사항	30
5. 연관 제도 조사 분석 및 담당 기관별 역할 검토	41
V. 학계 · 산업계 ·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공청회 등 의견 검토	43
1. 설문조사	43
2. 전문가 자문회의	69
3. 펫푸드 표시제도 정비방안 공청회	71
VI.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정비방안 마련	101
1. 개요	101
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개정안) 및 [별표4의2]신설(안)	101
3. 반려동물사료의 표시기준 고시(안)	105

VII. 결론 및 제언	144
※참고문헌	145
※부록	
1.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개정(안)및 별표4의2(안)	146
2. 반려동물사료의 표시기준(안)	147
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와[별표4의2]대조표	174

##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목적은 펫푸드 산업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에 알맞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시기준, 광고 등 관련 제도의 정비에 있다.
- 펫푸드 표시와 광고 기준을 마련하면 펫푸드 표시 관련 법령 제정이나 개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으로 펫푸드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양축사료 중심의 사료관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가 많은 상태다.

## II. 연구 내용 및 범위

- 이 연구는 선행 연구인 국내외 펫푸드 표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펫푸드의 분류·표시 제도의 개선 필요점을 발굴하여 국내 펫푸드 표기 및 광고 제도안을 만들었다.
- 공동 수급사인 (사)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만한 해외 우수 제도 등을 찾아내기 위해 선진국의 펫푸드 라벨링 제도에 대한 연구논문·보고서 등 관련 문헌을 수집·조사했다.

## III. 연구 추진 방법 및 전략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펫푸드 표시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제도를 정밀 검토했다. 국내외 반려동물 사료 관련 사례, 현황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요 해외 표시 및 광고 기준 사례 등을 국내 사례와 비교·검토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펫푸드 표시와 광고 기준을 제시했다.
- 국내외 펫푸드 라벨 연관 제도 조사·분석 및 담당 기관별 역할을 검토하고, 학계·산업계 관련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이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내 현실에 동떨어지지 않는 펫푸드 표시 관련 고시 등 법령안을 제시했다.
- 반려동물 소유자 및 관련 업계 등 정책 고객의 수요를 분석하고, 펫푸드 표시 제도 개정 방향 및 필요성 구체화, 쟁점사항,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 관리 법령제정 방향 및 쟁점 및 국내외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요 제정사항을 도출하고, 펫푸드 관련 표시기준(고시 등) 등 주요 개정사항을 도출했다.
- 펫푸드 표시 관련 법령 제정안 조문화와 함께 조문별 제정사유, 주요내용, 해석, 기존 법령 체계와 비교, 관련 통계 등 법제화 근거자료를 수집해 제시했다.
- 펫푸드 표시 관련 국내외 현황 파악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2023년 9월 13일 개최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제시했다.
- 펫푸드 표시 법령 마련 시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펫푸드 제조·수입·판매업체 대상 설문조

사를 2023년 9~10월 중 수행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제시했다.

- 펫푸드 표시 법령 마련 시 관련 펫푸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펫 보호자 313명 대상 설문 조사를 2023년 9월 15~16일 수행했다. 설문조사를 위해 '2023 서울펫쇼'(서울 SETEC)에 부스를 설치하고, 설문조사에 응한 펫 보호자에게 펫 간식을 제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제시했다.
- 펫푸드 표시 법령 마련 시 관련 펫푸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공무원·업체 관계자 등 35명이 참여한 공청회를 2023년 10월 24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제시했다.



## IV.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제도검토

국내외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기준<sup>1)2)</sup>과 국내외 유통 중인 제품의 표시사항을 실태조사를 한 결과, 표시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또한,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선행 연구자료<sup>3)</sup>들을 참조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 외국과 국내의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분류기준을 비교하였다.
- 외국과 국내의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제도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사항은 크게 의무 표시사항, 강조 표시사항으로 분류된다.
- 의무 표시사항이란,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용한 원료, 사료의 용도, 사업자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해당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에 따른다.
- 강조 표시사항이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시사항으로, 마케팅 클레임이라 하며,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그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 1. 반려 동물 사료의 분류

#### 가. 주요국 반려동물사료의 분류 현황

- EU는 반려동물용 사료를 별도 정의하지 않고 사료의 한 종류로서 관리하는 반면, 미국, 일본 및 중국은 반려동물용 사료를 별도로 정의
- 미국은 대상 축종에 따라 pet food(개, 고양이)와 specialty pet food(그 밖의 반려동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완전배합사료(complete feed), 간식류(snacks, treats, chew)로 구분
- EU는 한국과 동일하게 양축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의 구분이 없음
  - 그러나 EU는 펫푸드 모범 라벨링 관행 강령 3.2.1.1에 따라, 영양학적 적합성 문구 대신, '사료의 유형(type of feed)'이라는 항목에 사료 물질(Feed material), 완전 사료(Complete feed), 보충 사료(Complementary feed), 복합 사료(Compound feed) 중 하나를 표시하도록 한다. 처방식(특수목적영양사료)에 해당하는 PARNUTs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특수목적영양사료(PARNUTs)의 경우 세부 영양가이드라인은 EU별도 규정 EU 2020/354의 Part A. Annex에서 다룬다.
- 일본은 반려동물용 사료의 분류가 존재
  - 배합사료에 해당하는 사료를 종합영양식이라고 분류하며 간식, 요법식 및 기타목적식으로 분류
- 중국은 애완동물 사료를 양축용 사료와 분리하여 정의
  - 애완동물 배합사료: 애완동물의 성장 과정 또는 특정한 생리나 병리 현상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사료원료와 사료 첨가물을 일정한 비율로 배합해서 제조한 사료를 말하며, 단독 사용으로 애완동물의 전반적인 영양을 충족할 수 있음

1) AAFCO 펫푸드 라벨링 가이드

2) FEDIAF 펫푸드 모범 라벨링 강령

3) 2023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펫푸드 특화 분류·표시 기준마련 실태 조사 보고서」

- 애완동물 첨가물 예비 혼합사료: 아미노산, 비타민, 미량 광물성 물질, 효소 등과 같은 영양공급용 첨가물이 일정한 비율로 영양공급용 사료 첨가물 또는 희석제를 배합한 사료
- 기타 애완동물사료: 애완동물에게 보상을 주거나 애완동물과의 상호작용 또는 애완동물이 씹고 무는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사료원료와 사료 첨가물로 제조한 사료

## 나. 우리나라 반려동물사료의 분류 현황

- 한국 및 EU는 반려동물용 사료를 별도 정의하지 않고 사료의 한 종류로써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료는 양축동물과 마찬가지로 배합사료,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음

## 2. 반려 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현황

### 가. 주요국 반려동물사료 표시제도 현황

- 미국의 경우 AAFCO(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는 펫푸드의 영양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영양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원료의 정의와 허용 가능한 원료, 표시기준에 대한 라벨링 가이드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EU의 경우 FEDIAF(The Europe Pet Food Industry)는 표시에 대한 규정집(FEDIAF Labeling Code)을 별도로 운영하여 이에 따라 펫푸드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별도의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표시사항이 양축사료와 분리되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사료 및 사료첨가물 관리 조례」에서 별도로 '3. 애완동물사료 라벨 규정'을 두어 별도로 표시사항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

### 나. 우리나라 반려동물사료의 분류 현황

- 우리나라는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별표4에서 양축사료와 같이 배합사료, 보조, 단미사료로 구분되어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인 「사료의 기준 및 규격」 별표15에 양축사료와 같이 구분하지 않고 표시하고 있음

## 3. 반려 동물 사료 의무 표시사항

- 반려동물 사료의 의무표시사항을 주요국별로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 <표 1>에서 주요국의 의무 표시사항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만 의무사항인 것은 붉은색 글씨, 한국은 아니지만 주요국에서는 의무사항인 부분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하였다.
- 미국, 유럽, 일본은 국내 대비, 관리적 측면보다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보다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국 반려동물 사료 의무표시사항 비교

국내 사료관리법 <sup>4)</sup>	미국 AAFCO <sup>5)</sup>	유럽 FEDIAF <sup>6)</sup>	일본 <sup>7)8)</sup>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6) 주의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정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 제품명과 브랜드명 2) 대상 동물 3) 중량, 단위, 개수 4) 보증성분량 5) 원료 리스트 6) 급여 용도(예. 성견용 완전식) 7) 급여 가이드 8) 칼로리 9) 제조원 또는 유통업자의 명칭과 주소	1) 제품 유형(예. 완전사료) 2) 대상동물의 종 및 성장단계 3) 보관 및 급여 가이드 4) 원료 리스트 5) 분석성분량 6) 칼로리 7)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8) 추적 가능한 번호(예. 배치번호) 9) 실제 중량 (액체의 경우 부피) 10) 최소 저장 수명 11) GMO정보	1) 제품명 2) 원료명 3) 제품의 용도 4) 등록성분량 5) 내용량 6) 급여 방법 7) 유통기한 8) 제조국a 9) 제조사 및 수입업자 등의 주소

국내외 중점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인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제품명’, ‘사료의 용도(예.완전식, 간식)’에 대해 집중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 실태조사 결과, 이 부분의 표기에 많은 혼선이 있었고, 주요국 3국은 이것이 의무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과감한 생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국내 사료관리법상, 사료의 명칭에는 배합/혼합/단미/보조사료를 표시, 사료의 용도에는 대상동물의 종과 성장단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합사료 중, 그 밖의 동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사료는 그 뒤에 동물명과 성장단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사료의 용도와 겹치고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4)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5) 미국 AAFCO 펫푸드 라벨링 가이드, II. 펫푸드 모델 규정

6) 유럽 FEDIAF 펫푸드 모범 라벨링 강령, 3.2 법적 요구 사항

7) 일본 농림수산업성, 반려동물 사료 사료안전법, 「반려동물 사료의 성분규격에 관한 성령」

8) 일본 소비자청, 「반려동물 식품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표 2〉 국내 유통 펫푸드 ‘사료의 명칭 및 형태’ 표시 사례-1

 <p>• 사료 관리법에 의한 표시 사항          • 제품명: 유안 육가공실 및 채소 오리저분          • 성분동물명: 닭 44.2% (2020호)          • 사료의 명칭 및 형태: 혼합성단미사료/고형 (가열하지 않고 급여하는 냉동사료)          • 사용한 원료의 명칭: 조지방 2.9% 이하, 조단백질 16.1% 이상, 닭고기 및 가금살 33.0%, 닭안심 20.0%, 고구마, 양배추, 단호박, 닭발, 당근, 브로콜리          • 제조일: 2020년 11월 10일          • 유통기한: 2021년 11월 10일          • 제조업체: 유안식품(주)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처성로 250번길 10, 기흥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목곡읍 백죽로 1800번길 10, 목곡공장          • 포장재질: 나일론(LLD) / 유안 고객상담실: 1833-5246</p>	 <p>사료의 명칭 및 형태: 혼합성단미사료/고형          사료의 용도: 애완동물용</p>
<p>사료의 명칭 및 형태: 혼합성단미사료/고형          사료의 용도: 애완동물용</p>	<p>사료의 명칭 및 형태: 애완육성개/액상고형          사료의 용도: 1.6개월령이상 전연령</p>
 <p>원재료명          성분표시          사료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p>	 <p>사료의 명칭 및 형태: 애완개개14/개검          사료의 용도: 애완개용(3개월령 이후~전연령)</p>
<p>사료의 명칭 및 형태: 애완개개14/개검          사료의 용도: 애완개용(3개월령 이후~전연령)</p>	<p>사료의 명칭 및 형태: 애완개개사료98/익스트루전          사료의 용도: 애완동물용(생후 12개월령 이후)</p>

〈표 3〉 국내 유통 펫푸드 ‘사료의 명칭 및 형태’ 표시 사례-2

대상동물	표기 사례	이미지
개	개, 소형견, 애완견, 애완개, small dog, 애완큰(어른)개, 애완육성견	<p>• 사료의 명칭: 애완개 3</p> <p>사료의 명칭 및 형태: 애완육성개</p>
고양이	고양이, 애완고양이, 애완육성고양이, 애완큰고양이	<p>사료의 명칭 및 형태: 애완큰고양이11</p> <p>명칭 및 형태: 애완큰(어른)고양이사료 323호</p> <p>사료의 명칭 및 형태: 애완육성고양이18</p> <p>•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애완고양이002</p>
개·고양이	애완동물용, 애완개·고양이	<p>• 사료의 용도: 애완동물용</p> <p>사료의 형태/명칭: 견/묘/애완개·고양이13</p>

〈표 4〉 국내 사료관리법 상의 ‘사료의 명칭 및 형태’ 및 ‘사료의 용도’ 기준

사료의 명칭	사료의 형태	사료의 용도
<p>「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7조(사료의 명칭)</p> <p>① 제조업자가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성분등록 및 표시할 때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단미·보조사료 중 별표3의2에 해당되어 별표 1과 별표 2에 사료 명칭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배합사료 중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규정한 명칭을 세분화하는 기준은 별표 3의 3과 같다.</p>	<p>「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나. 표시방법</p> <p>2) 사료의 형태는 사료 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다.</p> <p>가) 종류</p> <p>(1) 가루: 곱게 가루로 만든 것</p> <p>(2) 펠릿: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p> <p>(3) 크럼블: 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목적에 맞게 분쇄·선별한 것</p> <p>(4) 후레이크: 사료를 그대로 또는 증기로 찌서 납작하게 압편한 것</p> <p>(5) 익스트루전: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을 호화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p> <p>(6) 액상: 용액으로 된 것</p> <p>(7) 그 밖의 형태: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p> <p>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p> <p>5) 사료의 형태 중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2)가)7)의 그 밖의 형태는 개걸, 겔, 과립, 도넛, 바, 박편, 베일, 생물, 스틱, 시럽, 액상고형, 육포, 젤리, 종실, 칩, 캡슐, 쿠키, 큐브, 페이스트상, 편상, 환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6) 사료의 용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p>가) 단미·보조사료는 사료원료용, 양축농가용, 양어농가용, 실험동물용, 애완동물용, 사육하는 동물용, 관상용수산동물용, 양식용수산동물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p> <p>나) 단미·보조사료 중 사료원료용 이외의 용도는 “성장단계 + 동물명”, “성장단계”, “동물명”, “동물종류”로 용도를 표시할 수도 있다.</p> <p>다) 배합사료는 별표 13에 따른 사용범위를 용도로 표시하거나, 나)를 준용하여 동물명 및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p>

〈그림 1〉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시행 2022. 7. 2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5호, 2022. 7. 22., 일부개정]

·별표목적 [별표 3] 배합사료의 범위(제6조제2항 관련)

·별표연혁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 [제2022-55호, 고시, 2022. 7. 22.]

5.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나.의2 알 다. 기타 반수동물	양육용 배합사료의 명칭에 준하여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경합
	가. 실험용동물	실험용 동물별 사료명칭 및 사용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명에 의거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조업자가 경합
나. 애완동물	애완용 동물별 사료명칭 및 사용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명에 의거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조업자가 경합	
다. 사육하는 동물	사육하는 동물별 사료명칭 및 사용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명에 의거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조업자가 경합	
라. 수산동물	어종별 사료명칭 및 사용범위는 어종별 및 성장단계별 용도로 구분하여 제조업자가 경합 · 반건조배합사료(SEP, Soft Extrude Pellet 혹은 Semi-moist pellet<반습사료>)라 함은 수분함량이 25% 내외로 70℃에서 사료제조과정을 거친 다음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냉각처리 후 포장되어 냉동 유통되는 양식수산동물용 배합사료로서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운반시 동결되지 않고, 특히 여름철에는 운반 및 보관시 산패·변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저온 보관이 필요함	

## 나. 제품명

- 제품명은 주요국 중 미국과 일본에서는 의무표시사항이며, 한국과 유럽에서는 의무표시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내 유통 중인 펫푸드를 실태조사한 결과, 250개 샘플 중 100%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제품명을 자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 제품명 관련 공청회 의견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하나의 사료성분등록번호에 여러 개의 제품명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각 도청에서는 제품명 변경 건이 많아, 업무에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실제로 제품명이 사료성분등록시에는 필수등록사항이나, 포장지에 의무표시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품명 실태조사 결과, 국내의 제품 모두 제품명에 원료나 성분명을 포함한 경우가 많았다. 국내 유통 제품의 44%가 <표 5>과 같이 제품명에 원료나 성분명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해외 제품의 해외 제품의 경우는 <표 6>과 같이 제품명에 포함된 원료 명칭과 함께 ‘flavor’, ‘recipe’, ‘formula’ ‘with’ 등을 제품명에 쓰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표 5) 원료/성분명이 포함된 제품명 국내 예시

이미지	제품명	이미지	제품명
	풀무원 amio 자연담은 간식 인섹트 너겟		두먼 닭가슴살 & 채소
	탐사 도그 푸드 연어		펫파운드 육즙가득 리얼연어통살
	ANF 6free 비프		더리얼 삼계탕
	시니멀 도그트릿 향태		프롬벳 초록입홍합·멸치파우더



〈표 6〉 원료/성분명이 포함된 제품명 예시

구분	이미지	제품명	구분	이미지	제품명
[미국] Flavor(맛) 표시 사례		Pedigree ADULT GRILLED STEAK & VEGETABLE FLAVOR	[미국] With(함유) 표시 사례		Purina Beneful Healthy Weight Dry Dog Food with Farm-Raised Chicken
[미국] Recipe(레시피) 표 시 사례		ACANA RED MEAT RECIPE	[미국] Formula(포뮬러) 표시 사례		Purina ONE Lamb & Rice Formula
[유럽] Recipe(레시피) 표시 사례		ALPS PURENESS CANNED FOOD PORK RECIPE	[말레이시아] Formula(포뮬러) 표시 사례		Coco&Joe BARF FOR DOGS LAMB RECIPE
[일본] Flavor(맛) 표시 사례		고양이 스맥 Nyans 만족 사케&사시미맛	[태국] Formula(포뮬러) 표시 사례		APro® I.Q Formul a 20kg TUNA Cat food
[중국] Recipe(레시피) 표시 사례		ODIN me 신선한 닭고기와 대추 레시피	[중국] With(함유) 표시 사례		ODIN Full Price Adult D og Food With Bro ccoli

- 주요국의 경우 <표 7>, <표 8>와 같이 제품에 함유된 원료의 함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품명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고 있다.
- 자문단 회의 결과, 최근 펫푸드의 형태가 다양해져 AAFCO와 FEDIAF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복잡한 면이 있고, 'flavor', 'recipe', 'formula' 'with'를 한글화하여 제품명에 반영하는 것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우므로, 제품명에 원료나 성분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식품의 기준처럼, 원재료의 함량을 배합비 기준이나, 고형분(건물) 기준으로 표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7〉 AAFCO 제품명 내 원재료 표시 규칙

제품 내 원료 함량	제품명에 포함된 원료 표시의 예	제품명에 표시하고자 하는 원재료의 함량(%)	배합비 중량 속 원료의 최소 함량(%)
100%, all	100% 소고기 전체 고구마	100%	-
95%	체리, 송어	95%	70%
25%	치킨 플래터, 칠면조 레시피	25%	10%
“with (들어간)”	블루베리, 당근, 크렌베리가 들어간	각각 3%	N/A
“Flavor (맛)”	땅콩 버터 맛	향을 내기에 충분한	N/A

<표 8> FEDIAF 주성분 표시 세부기준

주성분(Major Component)		
클레임 유형	표시 예시	해당 원료의 필요한 수준에 해당하는 값
Bloggo X맛 (flavor)	베이컨 맛	명명된 재료의 함량은 0%이지만, 맛은 향미 물질에서 나올 때  첨가물 부분에 향료를 신고해야 한다.예: 첨가물: 감각 첨가물: 쇠고기 향료 X mg/kg  N.B. 향미제 존재는 펫푸드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향미의 모든 성분에 법적 최대 한도가 적용되는지와 관계없이 향미제의 첨가량을 리벨에 표시해야 한다.
X로 맛을 낸 Bloggo (flavoured with X)	X로 맛을 낸 / Y로 맛을 낸복수 클레임 (X와 Y로 맛을 낸) 예시. •토끼로 맛을 낸 Bloggo	명명된 재료의 함량이 0% 이상 4% 미만일 때
X를 포함한 Bloggo (with X, contains)	X를 포함한 / Y를 포함한X와 Y를 포함한 / X를 함유한X와 Y를 함유한 예시. •닭을 포함한 Bloggo •닭간을 포함한 Bloggo •닭과 쌀을 포함한 Bloggo •토끼를 함유한 Bloggo	명명된 재료의 최소 4% 또는 언급된 각 재료의 최소 4% 이상 일 때  원재료의 최소 4% 이상이 닭일 것원재료의 최소 4% 이상이 닭간일 것 원재료의 최소 4% 이상이 닭과 쌀일 것 원재료의 최소 4% 이상이 토끼일 것
X가 풍부한, 높은, 추가한 Bloggo (rich in X, high in, with extra)	X함량이 높은(또는 Y) X가 풍부한(또는 Y) X를 추가한(또는 Y) X와 Y 함량이 높은 예시. •닭 함량이 높은 Bloggo •닭과 쌀 함량이 높은 Bloggo •닭과 쌀이 추가된 Bloggo •닭과 쌀 함량이 높은 Bloggo	명명된 물질의 최소 14% 또는 언급된 각 물질의 최소 14% 이상일 때  닭고기 함량이 최소 14% 이상일 때 닭고기 함량이 최소 14% 이상이며, 쌀 함량이 최소 4% 이상일 때 닭고기 함량이 최소 14% 이상이며, 쌀 함량이 최소 4% 이상일 때 닭고기 함량이 최소 14% 이상이며, 쌀 함량이 최소 14% 이상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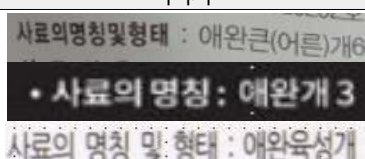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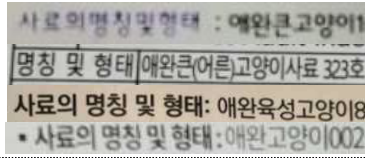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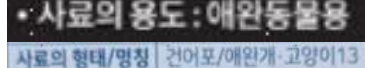


주성분(Major Component)		
클레임 유형	표시 예시	해당 원료의 필요한 수준에 해당하는 값
BloggoX BloggoX 메뉴 BloggoX 디너 menu dinner	브랜드명 X / 브랜드명 Y X 디너 -Y디너 X메뉴 - Y메뉴 예시. •Bloggo 소고기와 닭 •Bloggo 소고기와 가금메뉴	명명된 재료의 최소 26% 또는 언급된 각 재료의 최소 26% 이상일 때  쇠고기 함량이 최소 26% 이상 및 가금류 함량이 최소 26% 이상 일 때
전체가 X인 Bloggo All X	전체 X (또는 Y) / 오직 X (또는 Y) 예시. •Bloggo 전체 소고기 젤리 •Bloggo 말린 야채, 전체 채소 •Bloggo 말린 야채, 전체 두부	원재료 외에 다른 성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영양 완성도를 위해 필요한 허용되는 첨가제, 미네랄 또는 기타 미세 성분 및 처리를 위한 물 제외)

#### 다. 급여 대상

- 급여 대상은 대상 동물의 종(개, 고양이), 성장단계(연령대), 임신/수유기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급여 지침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국내·외 모두 의무 표시사항이다.
- 국내 유통 제품의 96.8%가 대상 동물의 종을 표시함(애완동물 포함)
- 해외 유통 제품은 개와 고양이 공용 제품 조사는 포함되지 않음
- 국내 유통 제품의 69.6%가 대상 동물의 성장단계 또는 연령대를 표시함
- 해외 유통 제품의 68.8%가 대상 동물의 성장단계 또는 연령대를 표시함
- 그 실제 예는 <표 9>와 같다.

(표 9) 대상 동물 국내 표시 사례

대상동물	표기 사례	이미지
개	개, 소형견, 애완견, 애완개, small dog, 애완큰(어른)개, 애완육성견	
고양이	고양이, 애완고양이, 애완육성고양이, 애완큰고양이	
개,고양이	애완동물용, 애완개,고양이	

#### ○ 표시 방법

- 국내 유통 제품의 경우, 대상 동물 연령(성장단계)을 표시하는 방식은 율령을 사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표 10>.
- 해외 유통 제품의 경우도 국내와 유사했으며, 특히 일본산 펫푸드에선 7세 이상, 11세 이상, 15세 이상 등 연령이 세부적으로 구분된 제품도 눈에 띄었다<표 11>.

○ 특이점:

- 국내 사료관리법에서는 급여 대상을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료의 명칭 및 형태’와 ‘사료의 용도’라는 항목하에 표기하도록 하는데, ‘사료의 명칭’에 대상 동물의 종과 성장단계, 즉, 급여 대상을 쓰는 것이 정확히 연상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또한, 국내 사료관리법에서 ‘사료의 용도’에도 동물의 종과 성장단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료의 명칭’과 중복될 뿐 아니라, 해외의 펫푸드 라벨링 기준에서는 사료의 용도를 급여 목적(purpose) 또는 영양학적 적합성(nutritional adequacy)에 해당하는 완전식(complete food), 보완식(complementary food), 간식 등의 구분을 위한 항목으로도 사용하므로, 이 부분도 용어를 명확히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표 10> 대상동물 연령(성장단계) 국내 표시 사례

대상동물	표기 사례	이미지
개	성견, 전연령용, Adult7+, 7세이상, 1살 이하, For adult dog, 0-2개월, 2개월령이상, 3개월에서 전연령, 생후 3개월이상 전연령, 생후 3개월 이후	
고양이	육성고양이, 큰(어른)고양이, 큰고양이, 어른 고양이, Adult cat, 육성고양이(전연령), 1세 이상, 전연령, 생후 1년이상 성묘, 13개월에서 7년까지의 고양이, 생후6주, 전연령(생후 3개월 이후)	

<표 11> 대상동물 연령(성장단계) 해외 표시 사례

구분	표기 사례	이미지
미국, 유럽	‘ADULT’, ‘For Kitten’, ‘All Life Stages’, ‘All Cats’, ‘For All Ages’, ‘Every Stage of Life’, ‘For Puppies and Adult Dogs’, ‘Senior Dog’, ‘숫자+YEARS’, ‘Stage+숫자’	
일본	‘11歳以上(11세 이상)’, ‘成用(성용)’, ‘全成長段階用(전성장단계용)’, ‘子猫用(새끼고양이용)’, 1세부터 모든나이’	
중국	‘全犬期适用(包括幼年期, 成年用, 老年用)(모든 반려견 대상)(전체 연령대, 성견용, 노견용)’	
말레이시아	FOR ALL BREEDS AND STAGES,	

라. 사료의 유형(급여 용도)

- 국내와 다르게,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반려동물 사료가 급여하는 대상동물에게 영양학적으로 어떤 용도로 급여하는지에 해당하는 완전식(주식), 간식 등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미국은 AAFCO 라벨링 가이드 PF 2.a.2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적합성(Nutritional adequacy)에 대해 포장지에 기술해야 하며, 단, 주표시면에 명확하게 스낵, 간식, 보조제라고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양학적 적합성에 대한 기술은 특정 생애주기와 급여 대상을 포함해야 하는데, 그 표준 문안에 대한 기준은 <표 12>와 같으며, 그 예시는 <표 13>과 같다.

<표 12> AAFCO 영양학적 적합성 표준 문안<sup>9)</sup>

영문 원안	한글 번역	___단계 예시
(Name of product) is formulated to meet the nutritional levels established by the AAFCO Dog (or Cat) Food Nutrient Profiles for _____	(00제품)은 AAFCO 개(또는 고양이) 식품 영양 프로파일에서 _____에 대해 설정한 영양 수준을 충족하도록 제조되었습니다.	임신/수유기, 성장기, 유지기, 전연령 개 사료가 “성장기”, “전연령”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경우, 70lb이상의 대형견의 해당 단계를 포함한 것인지, 포함하지 않은 것인지도 명시할 것 예. 대형견의 성장기 포함(또는 불포함)
Animal feeding test using AAFCO procedures substantiate that (Name of product) provides complete and balanced nutrition for ____.	AAFCO 절차를 사용한 동물 사료 테스트는 (제품명)이 다음 동물에게 완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임신/수유기, 성장기, 유지기, 전연령
(Name of product) provides complete and balanced nutrition for ___ and is comparable in nutritional adequacy to a product which has been substantiated using AAFCO feeding test.	(00제품)은 ___에게 완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며 AAFCO 급여 테스트를 통해 입증된 제품과 영양적 적절성이 유사합니다.	임신/수유기, 성장기, 유지기, 전연령 유사 제품군(family)이 인정될 경우 사용 가능하며, AAFCO 개와 고양이 식품 급여 프로토콜 색션에 펫푸드 제품군 설립 절차 참조
This product is intended for intermittent or supplemental feeding only.	본 제품은 간헐적 또는 보충 급여 용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완전 균형식이 아니면서, 스낵, 간식, 보조제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 문구가 필요함 (예. 펫푸드 믹서, 향미가 첨가된 물)
Use only as directed by your veterinarian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하세요.	수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사용하거나 고안된 제품은 Regulation PF7(c)(1) 또는 (3)에 따라 반드시 해당 문구를 표시해야 함

유럽에서는 펫푸드 모범 라벨링 관행 강령 3.2.1.1에 따라, 영양학적 적합성 문구 대신, ‘사료의 유형 (type of feed)’이라는 항목에 사료 물질(Feed material), 완전 사료(Complete feed), 보충 사료(Complementary feed), 복합 사료(Compound feed) 중 하나를 표시하도록 한다. 특수목적식에 해당하는 PARNUTs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특수목적식(PARNUTs)의 경우 세부 영양가이드라인은 EU별도 규정 EU 2020/354의 Part A. Annex에서 다룬다.

9) AAFCO 라벨링 가이드 PF 7

〈표 13〉 영양학적 적합성 및 급여 용도에 대한 해외 사례

구분	내용	이미지
완전식	'Complete and Balanced', 'OOO is formulated to meet the nutritional levels established by AAFCO Dog Food Nutrient Profiles for maintenance.'	
	[일본] '캣푸드(전성장단계고양이용종합영양식) 이 제품은 애완동물 식품 공정거래협회가 정한 분석시험의 결과, 종합영양식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종합영양식이므로 본 제품과 물만으로도 필요한 모든 영양을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보충식 (간식)	'Complement' 'OOO are intended for supplemental feeding only. This product may be fed daily along with a complete and balanced food diet.' 'Supplement for dogs'	
	[일본] '○○용 스낵' '애완동물 식품의 용도를 지켜주세요'	

○ 국내에서는 영양학적 적합성 문구나 완전식, 간식 등 급여 목적 또는 사료의 유형에 대한 표기가 의무 표시사항은 아니지만, 실태 조사 결과, 국내 유통 펫푸드 250개 제품 중 20.8%인 52개 제품이 표 25와 같이 AAFCO, NRC 등의 영양 기준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균형식, 완전식, Complete&Balanced, Sanck, 간식 등의 명칭으로 펫푸드 제품의 영양학적 급여 목적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수입 펫푸드 제품은 대부분이 영양학적 적합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14〉 급여 목적에 대한 국내 사례(영양학적 적합성 표기 사례)

구분	내용	이미지
Complete&balanced	균형있는 영양공급, 영양적으로 100% 균형잡힌 주식, 균형잡힌 영양 발란스-NRC와 AAFCO 기준 의거 제조, Balanced nutritions, 주식, Completed & balanced, 균형잡힌 주식사료-AAFCO 기준, 주식건식사료, 균형영양식, 100% 균형잡힌 영양, AAFCO 영양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 AAFCO 기준 성견을 위한 균형잡힌 영양 제공, 최적의 영양 포뮬라, 주식캔, NRC, AAFCO 기준 충족	
Snack & treats	간식, 보조사료, Supplement, Treat, Snack, Complementary food, 임신 수유 중의 영양보조, 간식 이니 주식으로 급여하지 마세요.	

- 주요국 대부분에서 주식, 간식 등의 급여 목적에 대해 ‘사료의 유형’, ‘급여 목적’, ‘영양학적 적합성’ 등 몇 가지 형태로 표시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 완전식의 표시를 위해서 필요한 영양학적 기준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다.

#### 마. 완전식(complete) 표시를 위한 조건

- 미국 AAFCO에서는 제한된 목적(limited purpose), 특정 생애주기(specific life stage) 대상 완전균형 표시는 특정 생애주기와 크기의 동물을 위해 “완전하고 균형 잡힌(complete and balanced)”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제품이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와 크기의 동물을 위해 AAFCO가 인정하는 식품 영양 프로파일에서 정한 영양소 수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을 때
  - AAFCO가 인정하는 “동물 급여 프로토콜”을 완료하였을 때
  - 제품이 유사 제품군(family)에 속하고 “유사 제품군에서 대표되는 제품의 실험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미국 AAFCO에서는 완전하고 균형 잡힌(Complete and balanced) 표시는 특정 성장단계와 함께 사용 가능하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전 연령, 모든 크기 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어, 부적격 대상이 될 수 있다.
- 미국 AAFCO에서는 특히, 전 연령(All life stages) 대상으로 한 표시에 엄격한데, 전연령 대상의 “완전하고 균형 잡힌”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AAFCO가 인정하는 동물 급여 프로토콜을 전 생애주기의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중 한 조건을 만족하면 표시 가능하다.
  - AAFCO가 인지하고 있는 동물 급여 프로토콜에 따라 실험을 마쳤을 때. 단, 임신/수유기 프로토콜과 임신/수유기 프로토콜에서 얻은 자견들로 성장기 프로토콜에 따른 실험을 마쳤을 때
  - 제품이 유사 제품군(family)에 속하고 해당 제품군에서 대표되는 선두 제품의 실험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단, 해당 제품군과의 유사성을 AAFC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전 연령 동물에게 영양학적으로 적합해야 하며, 주 관리 당국은 합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군의 추가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다.

#### 바. AAFCO와 FEDIAF의 영양 가이드라인 비교<sup>10)</sup>

‘주식(maintenance or complete feed)/간식(snack and treat)/기타’의 분류 체계를 반려동물 사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와 고양이의 성장단계별 하루 영양소 요구량(daily nutrient requirements)의 정립이 필요하며, 본 연구를 통해 개와 고양이의 성장단계별 영양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AAFCO와 FEDIAF의 개와 고양이의 영양가이드라인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개와 고양이가 하루 필요한 대사 에너지(Metabolic Energy) 계산법의 차이- AAFCO는 modified Atwater equation 사용하고 약 80%의 소화율에 4000 kcal/kg의 에너지 농도의 사료를 기준으로 함
- FEDIAF는 GE를 활용한 4단계 계산법 또는 NRC기준 사용
- Modified Atwater equation:
  - $3.5 \times \text{조단백질}(\%) + 8.5 \times \text{조지방}(\%) + 3.5 \times \text{NFE}(\%)$

10) AAFCO 개와 고양이의 영양소 프로파일 및 FEDIAF의 개와 고양이 영양 가이드

- NFE(Nitrogen free extract)=100-(조단백질%+조지방%+조섬유%+수분%+조회분%)
- FEDIAF FEDIAF 영양 가이드 7.2.의 에너지 계산법
  - 1단계 총 에너지 계산(gross energy)
    - GE(kcal) = (5.6 x 조단백질%) + (9.4 x 조지방%) + [4.1 x (NFE%+조섬유%)]
  - 2단계. 에너지 소화율 계산(%)
    - 개: 에너지 소화율(%)=91.2 - (1.43 x 건물기준 조섬유%)
    - 고양이: 에너지 소화율(%)=87.9 - (0.88 x 건물기준 조섬유%)
  - 3단계. 가소화 에너지 계산(digestible energy)
    - DE(kcal)=(GE x 에너지소화율)/100
  - 4단계. 대사 에너지 계산(metabolisable energy)
    - 개: ME(kcal)=DE - (1.04 x 조단백질%)
    - 고양이: ME(kcal)=DE - (0.77 x 조단백질%)
  - 혹은 NRC의 계산식을 활용하는 방법: 개는 4 x 조단백질(%) + 9 x 조지방(%) + 4 x NFE(%),  
고양이는 4 x 조단백질(%) + 8.5 x 조지방(%) + 4 x NFE(%)
- AAFCO는 최소/최대 함량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FEDIAF는 영양소 권장량으로
  - 공통적으로 건물 기준(unit per 100g dry matter)과 1000kcal당 함량 기준(unit per 1000kcal)을 모두 제시
  - NRC는 영양소 요구량, FEDIAF는 섭취 안전 범위까지 고려한 영양소 권장량, AAFCO는 영양소 함량 농도로 가이드를 제시
- AAFCO보다 더욱 세분화된 FEDIAF의 성장단계 구분- AAFCO는 단순히 성장단계를 두 단계(자견/자묘 및 번식기와 성견/성묘 유지기)로 나눈 반면, FEDIAF는 대사 에너지 요구량(MER)에 따른 구분을 추가하였고, 개의 경우에는 성장기를 14주령(약 3달 남짓)이전과 14주령 이후로 더욱 세분화한 것이 특징
- 자견&번식기의 필수 영양소를 비교하면, AAFCO는 40가지, FEDIAF는 41가지 영양소 함량 기준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셀레늄을 제외하고, AAFCO의 최소기준이 높은편
- 성견 유지기의 필수 영양소를 비교하면, 둘다 38가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었으며, AAFCO가 FEDIAF의 에너지 요구량 110 kcal/kg0.75의 성견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에너지 요구량이 낮은 성견의 경우, 건물 100g당 필수 영양소의 함량을 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성견에서는 양측 기준 모두 아라키돈산이나 오메가3에 대한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었다.
- 자묘&번식기의 필수 영양소는 AAFCO가 44가지, FEDIAF는 비타민 K가 빠진 43가지의 영양소 함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양측 모두 유사한 수준을 권장하고 있었으며, 자묘의 경우 AAFCO의 기준이 더 상세했다.
- 성묘의 필수 영양소는 AAFCO는 42가지, FEDIAF는 비타민K를 제외한 41가지의 영양소 함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
- FEDIAF는 성묘의 성장단계를 대사 에너지 요구량에 따라 2단계로 더욱 세분화함 전반적인 필수 영양소 요구량은 AAFCO와 유사한 수준이나 대사에너지 요구량이 낮은 성묘에게 더 많은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표 15〉 AAFCO와 FEDIAF의 반려견 영양 가이드라인 비교

No.	Nutrients	단위 Unit/100g DM	AAFCO 자견& 번식기	FEDIAF 14주이하 자견& 번식기	FEDIAF 14주이상 자견	AAFCO 성견 유지기	FEDIAF MER 95kcal /kg0.75 의 성견	FEDIAF MER 110kcal/kg0.75의 성견
1	Crude Protein 조단백질	g	22.50	25.00	20.00	18.00	21.00	18.00
2	Arginine 아르기닌	g	1.00	0.82	0.74	0.51	0.60	0.52
3	Histidine 히스티딘	g	0.44	0.39	0.25	0.19	0.27	0.23
4	Isoleucine 이소루신	g	0.71	0.65	0.50	0.38	0.53	0.46
5	Leucine 루신	g	1.29	1.29	0.80	0.68	0.95	0.82
6	Lysine 라이신	g	0.90	0.88	0.70	0.63	0.46	0.42
7	Methionine 메티오닌	g	0.35	0.35	0.26	0.33	0.46	0.40
8	Methionine-cystine 메티오닌-시스테인	g	0.70	0.70	0.53	0.65	0.88	0.76
9	Phenylalanine 페닐알라닌	g	0.83	0.65	0.50	0.45	0.63	0.54
10	Phenylalanine-tyrosine 페닐알라닌-티로신	g	1.30	1.30	1.00	0.74	1.03	0.89
11	Threonine 트레오닌	g	1.04	0.81	0.64	0.48	0.60	0.52
12	Tryptophan 트립토판	g	0.20	0.23	0.21	0.16	0.20	0.17
13	Valine 발린	g	0.68	0.68	0.56	0.49	0.68	0.59
14	Crude Fat 조지방	g	8.50	8.50	8.50	5.50	5.50	5.50
15	Linoleic acid 리놀레산	g	1.30	1.30	1.30	1.10	1.53	1.32
16	Arachdonic acid 아라키돈산	g	-	30.00	30.00	-	-	-
17	alpha-Linolenic 알파-리놀레익	g	0.08	0.08	0.08	ND	-	-
18	EPA+DHA	g	0.05	0.05	0.05	ND	-	-
	Minerals 미네랄							
19	Calcium 칼슘	g	1.20	1.00	0.80/1.00	0.50	0.58	0.50
20	Phosphorus 인	g	1.10	0.90	0.70	0.40	0.46	0.40
21	Potassium 칼륨	g	0.60	0.44	0.44	0.60	0.58	0.50
22	Sodium 소듐	g	0.30	0.22	0.22	0.08	0.12	0.10
23	Chloride 염화물	g	0.45	0.33	0.33	0.12	0.17	0.15
24	Magnesium 마그네슘	g	0.06	0.04	0.04	0.06	0.08	0.07
25	Iron 철	mg	8.80	8.80	8.80	4.00	4.17	3.60
26	Copper 구리	mg	1.24	1.10	1.10	0.73	0.83	0.72
27	Manganese 망간	mg	0.72	0.56	0.56	0.50	0.67	0.58
28	Zinc 아연	mg	10.00	10.00	10.00	8.00	8.34	7.20
29	Iodine 요오드	mg	0.10	0.15	0.15	0.10	0.12	0.11
30	Selenium 셀레늄	µg	35.00	40.00	40.00	35.00	35.00	30.00
	Vitamins & Others 비타민과 기타							
31	Vitamin A	IU	500.00	500.00	500.00	500.00	702.00	606.00
32	Vitamin D	IU	50.00	55.20	50.00	50.00	63.90	55.20
33	Vitamin E	IU	5.00	5.00	5.00	5.00	4.17	3.60
34	Thiamine (B1) 티아민	mg	0.225	0.18	0.18	0.225	0.25	0.21
35	Riboflavin (B2) 리보플라빈	mg	0.52	0.42	0.42	0.52	0.69	0.60
36	Pantothenic acid (B5) 판토텐산	mg	1.20	1.20	1.20	1.20	1.64	1.42
37	Niacin (B3) 니아신	mg	1.36	1.36	1.36	1.36	1.89	1.64
38	Pyridoxine (B6) 피리독신	mg	0.15	0.12	0.12	0.15	0.17	0.15
39	Folic acid (B9) 엽산	µg	21.60	21.60	21.60	21.60	29.90	25.80
40	Vitamin B12 코발라민	µg	2.80	2.80	2.80	2.80	3.87	3.35
41	Choline (B4) 콜린	mg	136.00	170.00	170.00	136.00	189.00	164.00

〈표 16〉 AAFCO와 FEDIAF의 반려묘 영양 가이드라인 비교

No.	Nutrients	단위 Unit/100g DM	AAFCO 자묘&번식기	FEDIAF 자묘&번식기	AAFCO 성묘 유지기	FEDIAF MER 75kcal /kg0.67의 성묘	FEDIAF MER 100kcal /kg0.67의 성묘
1	Crude Protein 조단백질	g	30.00	28.00/30.00	26.00	33.30	25.00
2	Arginine 아르기닌	g	1.24	1.07/1.11	1.04	1.30	1.00
3	Histidine 히스티딘	g	0.33	0.33	0.31	0.35	0.26
4	Isoleucine 이소루신	g	0.56	0.54	0.52	0.57	0.43
5	Leucine 루신	g	1.28	1.28	1.24	1.36	1.02
6	Lysine 라이신	g	1.20	0.85	0.83	0.45	0.34
7	Methionine 메티오닌	g	0.62	0.44	0.20	0.23	0.17
8	Methionine-cystine 메티오닌-시스테인	g	1.10	0.88	0.40	0.45	0.34
9	Phenylalanine 페닐알라닌	g	0.52	0.50	0.42	0.53	0.40
10	Phenylalanine-tyrosine 페닐알라닌-티로신	g	1.92	1.91	1.53	2.04	1.53
11	Threonine 트레오닌	g	0.73	0.65	0.73	0.69	0.52
12	Tryptophan 트립토판	g	0.25	0.16	0.16	0.17	0.13
13	Valine 발린	g	0.64	0.64	0.62	0.68	0.51
14	Crude Fat 조지방	g	9.00	9.00	9.00	9.00	9.00
15	Linoleic acid 리놀레산	g	0.60	0.55	0.60	0.67	0.50
16	Arachidonic acid 아라키돈산	g	0.02	20.00	0.02	8.00	6.00
17	alpha-Linolenic 알파-리놀레익	g	0.02	0.02	ND		
18	EPA+DHA	g	0.012	0.01	ND		
	Minerals 미네랄						
19	Calcium 칼슘	g	1.00	1.00	0.60	0.79	0.59
20	Phosphorus 인	g	0.80	0.84	0.50	0.67	0.50
21	Potassium 칼륨	g	0.60	0.60	0.60	0.80	0.60
22	Sodium 소듐	g	0.20	0.16	0.20	0.10	0.08
23	Chloride 염화물	g	0.30	0.24	0.30	0.15	0.11
24	Magnesium 마그네슘	g	0.08	0.05	0.04	0.05	0.04
25	Iron 철	mg	8.00	8.00	8.00	10.70	8.00
26	Copper 구리 (익스트루전)	mg	1.50	1.00	0.50	0.67	0.50
	Copper 구리 (습식캔)	mg	0.84		0.50		
27	Manganese 망간	mg	0.76	1.00	0.76	0.67	0.50
28	Zinc 아연	mg	7.50	7.50	7.50	10.00	7.50
29	Iodine 요오드	mg	0.18	0.18	0.06	0.17	0.13
30	Selenium 셀레늄	µg	30.00	30.00	30.00	40.00	30.00
	Vitamins & Others 비타민과 기타						
31	Vitamin A	IU	666.8	900.00	333.2	444.00	333.00
32	Vitamin D	IU	28.00	28.00	28.00	33.30	25.00
33	Vitamin E	IU	4.00	3.80	4.00	3.80	3.80
34	Vitamin K	mg	0.01	-	0.01	-	-
35	Thiamine (B1) 티아민	mg	0.560	0.55	0.560	0.59	0.44
36	Riboflavin (B2) 리보플라빈	mg	0.40	0.32	0.40	0.42	0.32
37	Pantothenic acid (B5) 판토텐산	mg	0.575	0.57	0.575	0.77	0.58
38	Niacin (B3) 니아신	mg	6.00	3.20	6.00	4.21	3.20
39	Pyridoxine (B6) 피리독신	mg	0.40	0.25	0.40	0.33	0.25
40	Folic acid (B9) 엽산	µg	80.00	75.00	80.00	101.00	75.00
41	Biotin (B7) 비오틴	µg	7.00	7.00	7.00	8.00	6.00
42	Vitamin B12 코발라민	µg	2.00	1.80	2.00	2.35	1.76
43	Choline (B4) 콜린	mg	240.00	240.00	240.00	320.00	240.00
44	Taurine 타우린 (익스트루전)	g	0.10	0.10	0.10	0.13	0.10
	Taurine 타우린 (습식캔)	g	0.20	0.25	0.20	0.27	0.20



## 사. 사용한 원료의 표시

사용한 원료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직하게 표시하는 것은 구매의 결정적 요소이므로 매우 중요하며, 미국에서는 「AAFCO Official Publication」 제6장에 원료의 명칭, 정의가 정리되어 있고, FEDIAF는 사료원료 카달로그에 정리되어 있다. 동물성 원료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현재 국내엔 펫푸드에 대해 동물성 원료를 가공하는 방법, 원료의 부위, 상태 등으로 세분화해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 미국이나 유럽에선 동물성 원료를 세분화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닭고기를 예로 들면, Poultry, Poultry By-Product Meal, Poultry By-Product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펫푸드의 원재료명 표시를 위해 AAFCO는 고기, 고기 부산물, 육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곡물 원재료명 표시를 위해 곡물을 훨씬 세분화하고 있다.

〈표 17〉 AAFCO 원료의 정의 중, 동물성 원료 표시 예시<sup>11)</sup>

표시 내용	표시 조건
Meat (육 또는 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된 포유류의 깨끗한 살(flesh) 부분으로 골격이나 허, 횡경막, 심장, 식도에서 발견되는 평활근(striate muscle)으로 한정함</li> <li>· 이때, 붙어 있는 지방, 피부, 건, 신경, 혈관들은 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li> </ul>
Meat By-Products (고기 부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된 포유류로부터 파생된 고기를 제외한, 렌더링을 거치지 않은 깨끗한 부위</li> <li>· 예를 들어 폐, 비장, 신장, 뇌, 간, 혈액, 뼈, 저온에서 지방을 제한 부분, 위, 장이 해당</li> <li>· 그러나, 피모, 뿔, 발톱, 치아는 제외</li> </ul>
Meat Meal (육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유류의 조직을 렌더링한 것으로 혈액, 털, 뿔, 발톱, 비료, 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단, GMP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은 예외</li> <li>· 칼슘이 인의 2.2배를 넘어서는 안 됨</li> <li>· 펙신 소화 불가 잔류물이 12%를 넘어서는 안 되며 펙신 소화 불가물이 9%를 넘어서는 안 됨</li> <li>· 라벨에는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인, 칼슘의 분석치가 표기되어야 함</li> </ul>
Meat & Bone Meal (육골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유류의 조직을 렌더링한 것으로 뼈를 포함하나, 혈액, 털, 뿔, 발톱, 비료, 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됨. 단, GMP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을 예외</li> <li>· 최소 4%의 인을 포함해야 하며, 칼슘이 인의 2.2배를 넘어서는 안 됨</li> <li>· 펙신 소화 불가 잔류물이 12%를 넘어서는 안 되며 펙신 소화 불가물이 9%를 넘어서는 안 됨</li> <li>· 라벨에는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인, 칼슘의 분석치가 표기되어야 한다.</li> </ul>
Animal By-Product Meal (동물 부산물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유류의 조직을 렌더링한 것으로</li> <li>· 혈액, 털, 뿔, 발톱, 비료, 위는 제외.</li> <li>· 단, GMP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은 예외</li> </ul>
Poultry (가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한 가금류의 부분이나 전체에서 파생된 뼈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살과 피부</li> <li>· 깃털, 머리, 발, 부리는 제외</li> </ul>

11) AAFCO Official Publication, Chapter 6

<표17 이어서>

표시 내용	표시 조건
Poultry By-Product Meal (가금부산물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하고 남은 가금류의 깨끗한 부위를 렌더링하고 같은 것</li> <li>· 목, 발, 부화하지 않은 달걀, 내장과 전체 몸을 포함</li> <li>· 깃털은 제외, 단, GMP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을 예외</li> <li>· 칼슘이 인의 2.2배를 넘어서는 안 됨</li> <li>· 라벨에는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인, 칼슘의 분석치가 표기되어야 함</li> </ul>
Poultry By-Product (가금부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렌더링하지 않은 가금류의 깨끗한 부위</li> <li>· 머리, 발, 내장과 전체 몸을 포함</li> <li>· 이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됨. 단, GMP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을 예외</li> </ul>

<표 18> EU 동물성 원재료 표시 예시<sup>12)</sup>

표시 내용	표시 조건
Animal By-Product (동물 부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혈 육상동물 전체 또는 일부, 신선, 냉동, 조리, 산 처리 또는 건조</li> <li>· 수분 함량이 8% 이상이라면 조단백질과 조지방을 표기해야 함</li> </ul>
Processed Animal Proteins (가공된 동물 단백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과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무척추동물을 제외한 육상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가열, 건조, 분쇄하여 얻은 제품으로 지방이 부분적으로 추출되거나 물리적으로 제거되었을 수 있음</li> <li>· 용매로 추출할 경우 최대 0.1%의 핵산을 함유할 수 있음</li> <li>· 예를 들어 폐, 비장, 신장, 뇌, 간, 혈액, 뼈, 저온에서 지방을 제한 부분, 위, 장이 해당</li> <li>· 수분 함량이 8% 이상이라면 조단백질과 조지방을 표기해야 함</li> </ul>
Fish (생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선 전체 또는 일부: 신선, 냉동, 조리, 산 처리 또는 건조</li> <li>· 수분 함량이 8% 이상이라면 조단백질을 표기해야 함</li> </ul>
Fish Meal (생선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선 전체 또는 일부를 가열, 압착 및 건조하여 얻은 제품으로, 건조 전에 생선 가용성을 다시 첨가할 수 있음</li> <li>· 수분 함량이 8% 이상이라면 조단백질과 조지방을 표기해야 함</li> <li>· 조회분의 함량이 20% 이상이라면 표기해야 함</li> </ul>

- 국내외 모두 의무표시사항이며, 소비자가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는 정보로, 2021년 11월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sup>13)</sup>에서도, 소비자가 반려동물 사료 구매 시, 고려하는 표시사항에서 ‘인증마크 유무’가 25.6%로 1위 ‘영양성분 표시’가 25%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 현재 국내엔 펫푸드에 대해 동물성 원료를 가공하는 방법, 원료의 부위, 상태 등으로 세분화해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본 용역에서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 미국이나 유럽에선 동물성 원료를 세분화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닭고기를 예로 들면, Poultry, Poultry By-Product Meal, Poultry By-Product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sup>14)15)</sup>

12) FEDIAF 사료 원료 카달로그

13) 한국소비자보호원 「반려동물 사료 유통 및 표시 실태조사」, 2021년 11월

14) AAFCO Official Publication

15) FEDIAF 사료 원료 카달로그

- 국내 사료관리법상 보존제 표기 가이드라인이 사료관리법 내에서 충돌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에 명시된 명칭을 사용하거나, [별표 15]의 3) 가)에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료를 제조 시에 직접 사용·첨가하는 보조사료등은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는 2개의 기준이 존재한다.
- 그러나, 국내 사료관리법상 별표 2는 ‘3. 보존제’ 카테고리 내에 ‘다. 항산화제’와 ‘라. 항곰팡이제’가 하위로 존재하는 반면, 식품에서는 보존제와 산화방지제가 별도의 카테고리로 존재하고 용어와 정의도 달라서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표 19〉 국내 동물성 원료 실제 표기 사례

구분	실제 표기 사례	대표 이미지(예시)
가금류	닭고기, 닭가슴살, 계육분, 뼈를 발라낸 칠면조, 닭간, 닭안심, 닭안심살100%, 오리고기, 가수분해 닭간 파우더, 닭고기 분말, 탈수 가금육, 치킨가수분해분말, 닭고기육수, 닭고기생육, 오리고기생육, 가금류분말, 치킨윙팁, 순살닭고기, 뼈를 발라낸 유기농, 가수분해단백질(닭), 닭고기분, 육분(닭,오리), 가금부산물건조분, 가금류분말, 뼈제거한 닭고기, 동물복지 인증 받은 무항생제 닭가슴살, 오골계, 무항생제 닭가슴살, 오리 안심살, 닭가슴살(국내산), 닭육수, 가금분, 분자량이 낮은 가수분해 깃털단백질, 가수분해 가금간, 가금간, 치킨, 뼈바른 생 닭고기, 칠면조 가슴살, 건조오리고기, 육류 및 유도단백질(닭), 육분(닭,칠면조,오리), 동물성 유도단백질(닭,칠면조,돼지), 오리, 타조고기, 칠면조(같은뼈 포함), 육류(닭,돼지), 육분(닭,오리), 가수분해 닭간 파우더, 탈수가금단백질(닭,칠면조 등), 칠면조 힘줄, 가수분해 닭고기	
소, 양, 염소, 사슴	쇠고기, 천연소가죽, 무항생제 한우사골액, 양고기분말, 소신장, 소뼈, 소심장, 돈육, 돼지간, 육류 및 육류산물(가금육, 쇠고기), 양고기, 사슴위, 사슴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간), 가수분해 양고기, 가수분해 쇠고기	
계란	난황분말, 계란분말, 계란, 통 건조란	
생선류	가수분해연어, 뼈를 발라낸 연어, 참치, 연어, 대구, 참치분말, 연어분말, 다랑어, 말린 가다랑어, 북어, 황태살, 참치(붉은살), 어분, 순살청어, 고등어, 생선연육, 가다랑어포, 멸치, 생선, 새우, 참치분, 명태	
곤충	등애분말	

- 사용한 원료의 명칭 중, 가장 소비자에게 민감한 ‘동물성 원료’ 표시방법과 ‘보존제’ 표시 부분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내 유통 제품의 동물성 원료는 가금류(닭, 오리 등) 및 그 밖의 동물성 원료(예. 소, 양, 돼지 등)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예시는 <표 19>과 같다. 그러나, 정확한 사용한 부위나 가공형태 등의 정보는 확인이 어려웠다.
  - 또한, 생산자 및 소비자 자문회의에서 현재 원재료명이 불필요한 한자어나 영어 사용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 반면, 해외 유통 제품의 경우, 같은 종류의 동물성 원료라고 해도 <표 20>과 같이 세부적인 명칭으로 표기되고 있었다.

(표 20) 해외 동물성 원료 표기 방식

국가	구분	이미지
미국	Meat (원재료명)	
	Meat+Meal (원재료명+가공 형태)	
	Meat+by-product meal (원재료명+가공 형태)	
	Meat+Bone meal (원재료명+추가)	
	Hydrolyzed + Meat (가공형태+원재료명)	
	Freeze Dried+Meat (가공형태+원재료명)	
중국	표시 항목: 원재료명 표시 내용: 원재료명(함량 %)	
		원재료명: 생오리고기(27%)      생소고기(3%)
일본	표시 항목: 원재료명 표시 내용: 곡물(00, 00, 00), 육류(00, 00, 00), 해산물(00, 00, 00) 등	
인도	미국과 유사 (원재료명, 원재료명 + 가공 형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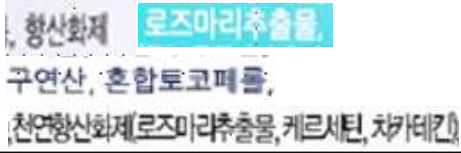
○ 보존제 표시방법 실태조사 결과:

사용한 원료의 명칭에서 소비자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다른 하나인, ‘보존제’ 표시 부분으로 이 부분을 실태조사 한 결과 다음과 같다.

- 국내 유통 펫푸드 제품 36.8%가 보존제 원료 사용에 대해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 표시 사례는 <표 21>과 같다.

- 국내 유통 펫푸드 중, 소비자에게 논란이 있는 보존제(예. 에톡시퀸) 표기를 피하기 위하여, 사용한 보존제 원료의 명칭과 용도(예. 항산화제)를 함께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존제의 용도만을 표시한 제품이 많이 있었다.

〈표 21〉 국내 유통제품의 보존제(Preservative)와 산화방지제(Antioxidant) 표기 사례

보존제 표기 사례	산화방지제 표기 사례
솔빈산칼륨,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보존제), 보존료(소르빈산칼륨), 소브산칼륨, Preservatives,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 	천연토코페롤, 로즈마리 추출물, 토코페롤(천연보존제), 천연항산화제 (로즈마리, 비타민E, 구연산, 플라보노이드), Antioxidant, 산화방지제 (BHA, BHT), 에리소르빈산나트륨, BHT, BHA(항산화제), 항산화제 

- 해외 유통 펫푸드 제품은 크게 지방(Fat)이나 기름(Oil) 뒤에 보존제 첨가에 대한 부가 설명을 추가하거나(예: Chicken Fat(preserved with Citric Acid)) 보존제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었다. 보존제를 별도로 기재한 사례에선 보존제의 명칭만 사용한 제품, 보존제 뒤에 괄호 또는 with를 사용해 보존제라는 용도를 부가 설명한 제품 등이 있었다. 용도까지 부가 설명한 제품이 더 많았다. (예시: 미국, 유럽의 경우, Mixed Tocopherols, Preserved with Mixed Tocopherols, BHA Used as preservatives, Citric Acid for freshness 등)
- 일부 국가(인도, 태국)에선 원료명 없이 산화방지제(Antioxidants)라고만 표시된 사례도 있었다.

〈표 22〉 해외 유통제품의 보존제(Preservative)와 산화방지제(Antioxidant) 표시 사례

보존제 표시 사례	산화방지제 표시 사례
[미국, 유럽] Mixed Tocopherols, Preserved with Mixed Tocopherols, BHA Used as preservatives, Citric Acid for freshness  <무첨가 강조 문구>  No artificial flavors or artificial preservatives	[인도, 태국] Antioxidants  [일본] 酸化防止剤(ローズマリー抽出物, ミックストコフェロール)(산화방지제(믹스트코페롤, 로즈마리 추출물)) 酸化防止剤(ミックストコフェロール、ハーブエキス) <무첨가 강조 문구>  着色料, 香料不使用(착색료, 향료 무첨가)

- 해외 유통 펫푸드 제품 중, 합성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은 펫푸드 제품에선 ‘천연 보존제 함유’, ‘인공 보존제 무첨가’ 등과 같은 강조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수 눈에 띄었다. 미국의 한 제품에는 ‘No artificial preservatives\*’라고 강조 표시를 한 다음, 아래에 ‘제조공정에서의 교차 접촉으로 인해 미량

의 인공 보존제가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 문구를 포함하기도 하였다. (예. This is naturally preserved product. No artificial preservatives, 着色料, 香料, 防腐劑無添加(착색료, 향료, 방부제 무첨가), 無着色(무착색) 등)

#### 4. 반려동물 사료 강조 표시사항

○ 체계적이고 상세한 주요국의 ‘강조 표시사항’

-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강조 표시사항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을 따르며, ‘2조 표시방법의 서항 강조 표시기준’과 ‘4조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 및 ‘5조 주의사항 표시’에 걸쳐 산재해있다.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강조 표시사항’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관할 당국인 FDA와 EU가 미국사료관리자협회(AAFCO)와 유럽 펫사료협회(FEDIAF)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있다.

- ‘강조 표시사항’은 국내의 사료관리법이 기존 양축 사료의 테두리 내에서 식품의 것들을 차용하여 나열한 부분이 많아서, 주요국의 라벨링 표시 기준처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반려동물 사료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하다.

- 반면, 국외 반려동물 사료의 강조 표시사항은 하부 카테고리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표 23>과 같다.

- 국내 펫푸드를 위한 ‘강조 표시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제품명에 원료명칭이 포함되어 있을 때의 기준, 고/저 관련 기준과 휴먼 그레이드, 그레이인 프리 등 제품을 설명하는 용어에 대한 기준이다.

○ 주요국에도 상세 기준이 미흡한 ‘기능성 강조 표시사항’

- ‘기능성 강조표시’ 관련 부분은, 신체의 영양공급 및 구조/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쓸 수 있다는 것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언급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에서는 같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외도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한 사례집은 본 연구에서는 찾기 어려웠다.

○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특수목적식에 대한 세부기준-유럽의 PARNUTs

- 반면, 만성질환 환자의 식이요법에 해당하는 ‘특수목적식 기준’은 유럽에는 보다 자세히 나타나 있었는데, PARNUTs를 통해 개와 고양이의 특수목적식에 대한 기준은 21가지 카테고리를 명시하고 있었다.

예) 개의 만성 신부전증 특수목적식:

영양 기준 (단백질, 인 제한)

급여 대상 및 급여 기간

추가 성분 표시항목 (단백질 공급원, 칼륨, 나트륨, 필수 지방산)

주의 문구(사용 전 수의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표시

- 다만, 이러한 PARNUTs도 한계점이 있었는데, 수분 12% 이하의 건사료에 대한 기준만 나타나 있고, 그 기준 또한 여러 가지 문헌 자료의 기준과 비교하여 상이한 점이 많이 존재하였으며, 최신 연구 방향을 다 반영하지 못하여 전적으로 모든 기준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표 23〉 주요국 펫푸드 강조표시 사항 비교

분 류	항 목	한국	미국 AAFCO	유럽 FEDIAF
함량 강조 표시	고/저 강조표시	기준 유	기준 유	기준 유
	영양소와 첨가제 강조표시	기준 유	기준 유	기준 유
	없음/무첨가 강조표시	기준 유	기준 유	기준 유
	관련 규정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5] 서. 강조 표시 기준의 3), 4, 5), 6)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9조 및 별지 1의 규정을 준용	AAFCO 펫푸드 라벨링 가이드 II의 PF10, VII의 B, X의 P	FEDIAF 펫푸드 모범 라벨링 강령 5.2.1.3, 5.2.1.4, 5.2.2
설명형 강조 표시	내추럴 천연	기준 유	기준 유	기준 유
	신선한 프레쉬	기준 무	기준 무	기준 유
	오가닉 유기농	기준 유	기준 유	기준 유
	휴먼 그레이트	기준 무	기준 유	기준 무
	기타		저혈당, 저탄수화물 그레인프리, USDA인증 00의 승인을 받은 Made in U.S.A	진실된, 리얼 지리적 위치
	관련 규정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 서. 강조표시 기준	AAFCO 라벨링 가이드 X.	FEDIAF 모범 라벨링 강령 5.2.4
기능성 강조 표시	구조/기능	기준 마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준용	허용	허용
	질병/예방	불가	불가	불가
	특수목적식	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PARNUTs규정
	관련 규정	· 사료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 4.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 성분 함량	· FDA 「식이 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 · 기능성-AAFCO 라벨링 가이드 X의 A,B · 특수목적식-AAFCO 라벨링 가이드 X의 L에서 간단한 원칙만 언급됨	

### 가. 함량 및 성분 강조 표시

국내 유통 펫푸드 제품 중 45.2%에 해당하는 제품이 특정 원료(영양소 및 첨가제 등)의 사용, 제품이나 원료의 성분 고(高) 또는 저(低), 특정 원료의 무첨가 또는 Free 등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내 유통 펫푸드의 원료나 성분 강조 표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합성 보존제, 색소, 향미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Free 혹은 No 표시와 광고였다.
- 실제 국내 유통 펫푸드 강제 표시 사례는 <표 24>와 같다.



<표 24> 국내 제품 함량 및 성분 강조 표시 사례

분류	실제 표시 사례
영양소 및 첨가제 사용	<p>아미노산 강화, EPA/DHA, 타우린 강화, 식이섬유, 루테인, 유산균, 콜라겐, 오메가3 지방산 첨가, 클로렐라 사용, 테아닌 첨가</p>  <p>타우린      엘라이신      오메가3지방산 DHA/EPA 함유      비타민 함유</p> <p>기오강이 표기      10,000 mg/kg 이상 첨가      루테인+제아잔틴 37.5 mg/kg 이상 첨가</p>
제품, 원료 등의 특정 성분의 고저	<p>저지방 고단백, 낮은 지방과 나트륨, 낮은 지방함량, 저칼로리, 단백질과 아미노산 풍부, Low fat, 고농도의 타우린, 칼로리 down</p>  <p>LOW-FAT -21%      "칼로리" DOWN      PROVEN RESULTS -14% CALORIES</p>
무첨가, No, Free	<p>No meat by-product, No 합성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무방부제, 무첨가(합성보존료, 부산물), 무항생제, 첨가물 No, 0%첨가(무방부제, 무색소, 무보존제, 무증량제), 합성보존료 0%, 무MSG, 5무(글루텐, 방부제, 인공향, 인공색소, 감미료), 4무첨가(합성보존료, 향미제, 밀가루, 팽창제), 그레인프리, 무부산물, Non-GMO, 6Zero(GMO, Antibiotics, Synthetic color, Synthetic flavor, Hormone, Synthetic preservative), 무항생제 닭가슴살, 무살충제</p>  <p>0% 첨가물      6 Free      Free (GMO, MSG, 방부제, 첨가물)      GRAIN FREE</p> <p>5무 (글루텐, 방부제, 인공향, 인공색소, 감미료)</p>

- 해외 유통 펫푸드 제품에서도 영양소 및 첨가제 사용, 특정 성분의 고저, NO, FREE, NON 등의 강조 표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특성에 대해 강조 표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표 25>와 같다.
- 해외 유통 펫푸드 제품에서 가장 흔한 강조 표시 역시, No와 Free였다. 두 단어를 사용해 Gluten, Grain, 합성 보존제, 색소, 부산물(by-product), GMO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 전체적으로 국·내외 모두 유사한 함량 강조 표시 카테고리의 표시가 많았다.



〈표 25〉 분류별 해외 제품 강조 사례

분류	실제 표시 사례
영양소 및 첨가제 사용	Fiver, Protein, Probiotics, Omega fatty acid, Vitamins, Minerals, Taurine, etc. 乳酸菌(유산균), 食物纖維(식이섬유), B-グルカン(베타글루칸), グルコサミン(글루코사민)
제품, 원료 등의 특정 성분의 고저	 <p>低カロリー設計 *銀のスプーン全成長段階用比 約85%</p> <p>High protein, Low calories, Low Sodium, etc. (저칼로리 - 실버스푼 전체성장단계용 비율 약 85%)</p> <p><b>低マグネシウム設計</b> (저마그네슘설계)</p>
무첨가, No, Free, Non	<p><b>NO ARTIFICIAL FLAVORS OR PRESERVATIVES</b></p> <p>Grain free, Free from peas, No corn, Gluten free, No artificial flavors, No artificial colors, No artificial preservatives, Made without by-product meals, Non-GMO, etc.</p> <p>香料・着色料・保存料<sup>※</sup>無添加</p> <p>(향신료, 색소, 보존제 무첨가)</p> <p>肉類+骨: 骨内脂肪無し, 人工合成物減少(骨内脂肪無し)</p> <p>(고기 함량이 높고 곡물이 들어있지 않음)</p>

○ AAFCO에서는 함량 표시 기준 중, 에너지 및 지방의 함량과 관련된 “라이트”, “저칼로리”, “칼로리가 적은”, “칼로리를 낮춘”, “지방이 적은”, “저지방”에 대한 보다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sup>16)17)</sup>

－. 라이트(light) 표시 - PF10(a)(1)A-개 사료

수분 함량	열량 기준
<20%	≤3100 kcal/kg
20%이상 65%미만	≤2500 kcal/kg
≥65%	≤900 kcal/kg

－. 라이트(light) 표시 - PF10(a)(1)B-고양이 사료

수분 함량	열량 기준
<20%	≤3250 kcal/kg
20%이상 65%미만	≤2650 kcal/kg
≥65%	≤950 kcal/kg

16) AAFCO 펫푸드 라벨링 가이드 모범 규정(Model Regulation) PF10과 XIII. 펫푸드 라벨 체크리스트

17) AAFCO 펫푸드 라벨링 가이드 모범 규정(Model Regulation) X. 펫푸드 라벨 클레임

-. 지방이 적은(lean) 표시 - PF10(b)(1)A-개 사료

수분 함량	지방 함량 기준
<20%	지방 ≤9%
20%이상 65%미만	지방 ≤7%
≥65%	지방 ≤4%

-. 라이트(light) 표시 - PF10(b)(1)B-고양이 사료

수분 함량	열량 기준
<20%	지방 ≤10%
20%이상 65%미만	지방 ≤8%
≥65%	지방 ≤5%

또한, AAFCO에서는 비필수 영양소(non essential nutrients)에 대한 성분보증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PF4(3)의 규정에 따라 “Not recognized as an essential nutrient by the AAFCO dog (or cat) food nutrient profile\*”이라고 성분보증을 표기한 바로 옆에 명기해야 한다(AAFCO 개(또는 고양이) 식품 영양 프로파일에서는 필수 영양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명형(descriptive) 강조 표시

- 국내 유통 펫푸드 제품 250개 중 37.6%의 제품에서 설명적 용어(descriptive terms)관련 강조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국내 유통 펫푸드 제품의 대표적인 표기 내용은 천연(Natural), 신선 또는 생(Fresh), 리얼 또는 진짜(Real, Authentic), 유기농(Organic), 휴먼 그레이트(Human-Grade) 등이며, <표 26>과 같다.
- 해외 유통 펫푸드 제품 250개 중 82.8%에서 “Natural”이란 표현이 있을 만큼 해외에서도 원료의 특성 표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해외 유통 펫푸드 제품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특성 표현은 “Natural”, “Real”, “Fresh”, “Organic” 순서였다. Human Grade(휴먼 그레이트) 표시도 일부 포함됐다.

<표 26> 제품이나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특성을 표시 광고한 국내 사례

분류	사용 사례 수 (250개 중)	표기 사례
천연(Natural)	27	 All natural, 내추럴 레시피, 100% Natural, Natural antioxidant, 천연항미제, Natural ingredient, Natural food, 100% 자연식 원료
신선 또는 생(Fresh)	24	  신선한 생고기, Fresh, 신선한 참치, 신선한 원료육, 신선한 닭가슴살, 신선한 생닭고기, 생고기, 신선한 습식, 신선한 멸치 사용, 신선한 오리 안심과 대구 사용, 신선한 연어고기

분류	사용 사례 수 (250개 중)	표기 사례
리얼 또는 진짜(Real)	6	 Real meat, Real 연어, Real insect, 리얼 순살 닭고기
유기농(Organic)	9	 유기농 원료 70% 이상, Made with organic,
휴먼 그레이드 (Human-Grade)	26	 100% 내가 먹는 식재료로 만든, 100% 휴먼 그레이드, 100% Human Grade, 휴먼 그레이드, 휴먼 그레이드 닭가슴살, 휴먼 그레이드 원료, 100% Human grade(FDA 인증)

〈표 27〉 제품이나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특성을 표시 광고한 해외 사례

분류	사용 사례 수 (250개 중)	표기 사례
천연(Natural)	207	 [미국, 유럽] Natural ingredients, All-Natural 등 ・天然の原材料 [일본] 天航の長く材料(천연의 원재료), 天縁食物纖維(천연식이섬유)
신선 또는 생(Fresh)	72	 [미국, 유럽] Fresh chicken, Fresh food, Farm-fresh [일본] フレッシュミート(신선한 미트)
리얼 또는 진짜(Real)	113	 [미국, 유럽] Real animal meat, Real ingredients, Real steroid-free, Real protein
유기농(Organic)	23	 INGREDIENTS Organic Chicken, Organic Chicken Meal, Organic Sweet Potatoes, Organic Potatoes, Organic Peas, Organic Tapioca, Organic Chicken Fat, Organic Sunflower Seed Meal, Organic Pea Protein, Natural Flavor, Organic Flaxseed, Organic Sunflower Oil, Organic Chicken Organic chicken, USDA certified organic, organic flavors, organic pet food
휴먼 그레이드 (Human-Grade)	5	 Human-Grade, 100% Human grade cluster, Human grade kitchen

○ 전체적으로 국내와 해외의 설명형 강조표시가 유사했으며, 대표적인 AAFCO의 설명형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국내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 그레인프리 강조 표시(grain-free claims)는 식물의 분류에 근거하여, 보리, 옥수수, 기장, 귀리, 쌀, 수수, 밀은 곡물로 분류됨 반면, 곡물로 분류되지 않는 것에는 메밀, 치아, 아마, 퀴노아, 완두, 대두가 있다.
- 살충제 프리, 항생제 프리, 호르몬 프리, 스테로이드 프리(pesticide-free, antibiotic-free, hormone-free, steroid-free) 강조 표시는 아주 적은 양이라도 동물의 조직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는 거짓이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농약 없이 키운 곡물” 또는 “항생제 없이 키운 닭”과 같은 문구는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면 허용될 수도 있다.
- 내추럴 강조 표시(natural claims)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물리적 가공, 열 가공, 렌더링, 정제, 추출, 가수분해, 효소 분해 또는 발효를 거친 식물, 동물 또는 채광 소스에서만 유래한 사료 또는 성분. 화학적 합성 공정을 거치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첨가제 또는 가공 보조제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표기 가능하다. 이 때, 모든 재료가 내추럴 원료라도 비타민 등 일부 첨가제는 합성일 경우의 표기방법, 전체는 내추럴 원료가 아니더라도 특정 원료가 내추럴 원료일 때의 표기법 등 자세한 기준이 있다.
- 유기농 강조 표시(organic claims)는 미국 농무성인 USDA의 유기농 규제에 따른다.
- 휴먼그레이드 강조 표시(human grade claims)의 경우, “휴먼 그레이드”, “사람이 먹는 음식” 등의 문구를 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사가 원료 공급사의 원료가 식품용 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종제품의 생산이 식품을 생산하는 GMP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 등 생산, 포장, 운송, 유통에 걸친 전 과정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Made in the USA 강조표시는 물리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 모든 원료들이 미국산일 때 표기가능한 클레임입니다. 또한, 어떠한 해외의 재료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저혈당 클레임(low glycemic claims)은 펫푸드에서의 기준이 없고,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해당 클레임은 사용할 수 없다.
- 탄수화물 클레임(carbohydrate claims)은 NFR(nitrogen-free extract)와 탄수화물이 보증성분에 빠져 있고 기준이 없으므로, “저탄수화물” 같은 탄수화물 클레임은 사용할 수 없다.
- USDA 미농무성 인증, 미농무성 검증 클레임(USDA-certified and USDA-inspected Claims)과 관련된 문구는 식품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물용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 승인 클레임(“approved by” claims)는 펫푸드에는 FDA, USDA, AAFCO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수의사나 기타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표현은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승인되었다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 다. 기능성 강조 표시



- 기능성 강조 표시 역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주요 요소이며, 문구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부분 중 하나이다.

- 실태조사 결과, 국내 유통 펫푸드 제품 250개 중 67.2%에서 한 개 이상의 건강 기능성 표기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류는 <표 28>, 그 예는 <표 29>와 같다.
- 조사한 250개 제품 중에 해당 기능이 표시된 비율. 한 제품에 여러 개의 기능성이 표시된 사례가 많음.

<표 28> 국내 유통제품 기능성 표시 사례

기능성 표시 분류	표시 사례 수	표시 비율*
면역	33	13%
피부피모	34	14%
눈 건강	20	8%
알러지	22	9%
장 건강, 소화	45	18%
심장 건강	15	6%
관절 건강	17	7%
요로결석, 신장 건강	24	10%
헤어볼	9	4%
뼈 건강	8	3%
구강 건강(치석, 입냄새)	32	13%
스트레스 완화	8	3%
기타(혈액순환, 체중관리 등)	50	20%

<표 29> 기능성 광고 표시에 대한 국내 사례

구분	이미지
원료 함유로 인한 기능성 표시	
원료 배제로 인한 기능성 표시	알러지에 민감한 반려견을 위해 가수분해 연어를 주단백질원으로 곡물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각 원료와 영양 성분의 최적의 배합 노하우로 반려견의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치아에 부담 없는 소프트 사료입니다.
물리적 기능으로 인한 덴탈 케어 기능성 표시	

- 해외 유통 펫푸드 경우, 81.6%의 제품에서 하나 이상의 기능성 클레임을 하고 있었다. 해외 유통 펫푸드 제품도 국내 유통 제품과 비슷하게 피부와 모질, 헤어볼, 면역, 관절, 눈 건강, 구강 및 치아 건강 등에 기능성 표시가 집중됐다<표 30>.

<표 30> 기능성 광고 표시에 대한 해외 사례

구분	내용	이미지
미국 유럽	<p>'to help support the control of hairballs', 'to improve cat's eyesight', 'boosts cat's immune system', 'for healthy skin and coat', 'help sustain joint health'</p> <p>'Supports your cat companion's urinary health', 'to decrease thyroid hormone(T4) production in 3 weeks' 등</p>	
일본	<p>'건강하고 튼튼한 고양이에게 베타글루칸 배합 - 뛰어난 영양 균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지원'</p> <p>'타우린 배합'</p> <p>하부요로의 건강 유지에 도움 마그네슘 표준치 0.10%</p>	
중국	<p>콜레스테롤 조절: 오리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고유 지방 함유</p> <p>건강 유지: 소고기의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신체 질병 저항력 향상에 도움</p> <p>흡수 촉진: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 흡수가 쉬움</p> <p>위장 보호: 코코넛 오일에 풍부한 중쇄지방산이 소화 부담 완화</p>	<p>● 调节胆固醇: 鸭肉中含有其特有的脂肪, 可降低胆固醇。</p> <p>● 强身健体: 牛肉中含有丰富的蛋白质和氨基酸, 有助于提高爱宠机体抗病能力。</p> <p>● 促进吸收: 鸡肉中的蛋白质含量比例较高, 且更容易被消化吸收。</p> <p>● 保护肝脏: 椰子油中富含的中链脂肪酸, 有助于降低爱宠消化负担。</p> <p>强壮骨骼 亮丽毛发 低盐低油 提高免疫 呵护肠胃</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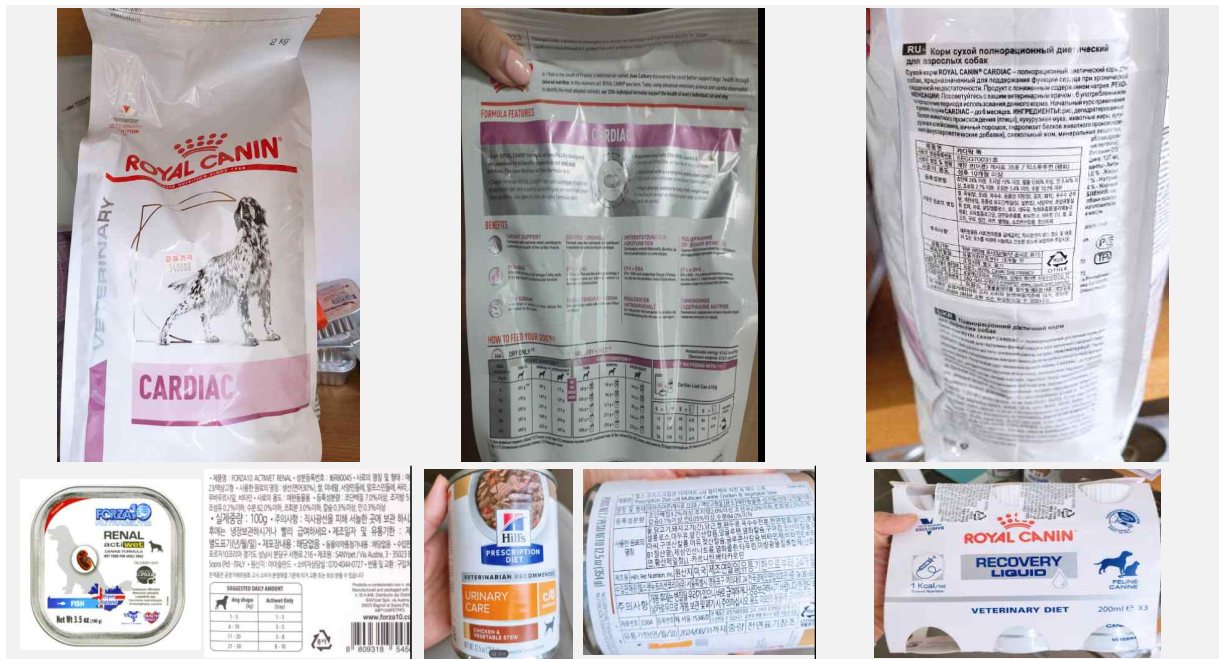
라. 특수한 질병 상태에서 급여하는 특수목적식

- 특수목적식은 만성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이 특수한 상황에서 섭취하는 제품으로, 일반 기능성 사료와는 <표 31>과 같은 차이가 있다.
- 국내의 특수목적식은 질병에 대한 수의사의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처방식이라고 통상적으로 불리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로얄캐닌, 힐스의 글로벌 회사가 견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회사도 이 부분에 진출하고 있다.
- 대표적인 제품의 사진은 <그림 2>과 같으며, 포장지에 질병에 대한 설명, 원료의 함량이나 기전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한글 설명은 없었다.

<표 31> 특수목적식과 기능성 사료의 차이점

구 분	특수목적식	기능성 사료 또는 보충제
급여 대상	만성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 예. 신부전, 간부전, 요로결석 등	건강한 상태이거나, 질병이 있더라도, 일반 사료를 먹어도 되는 반려동물
영양학적 특성	특정 영양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료 전체의 영양소가 컨트롤 되어야 함 예. 신부전에서 단백질, 인 등의 영양소를 제한해야함	사료 전체의 영양소는 거의 일반식과 동일하되, 특정 기능성 원료를 강화하는 방식 예. 오메가 3지방산과 비타민드를 강화하여 관절염에 도움을 줌
급여하지 않았을 때	일반식 급여 시 바로 구토나 설사 등의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크게 무리 없음
유사 사례	인체의 식이요법(만성 신부전 시, 식이요법)	건강기능식품, 식이 보조제

<그림 2> 국내 유통 중인 수입 특수목적식의 포장지 사진 (심장, 신장, 요로, 회복식)



○ AAFCO 반려동물 사료 특수목적식 표시 기준<sup>18)</sup>

수의사의 감독하에 사용되는 식이표시는 동물 메디컬 식품이나 수의 메디컬 식품의 법적 정의는 없다. 그러나, 동물에게 필수 일일 영양소를 제공하는 목적의 치료 제품(therapeutic products)들은 동물 신규 동물 의약품 승인의 신청 절차 없이 판매에 대한 집행 재량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 a. 수의사에 의해서만 판매되거나, 수의사의 지시하에 제품을 소매점,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하였을 경우
- b. 라벨에 표시된 대로 사용하였을 때, 알려진 안전상의 위험이 없는 제품
- c.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 비만, 신부전)
- d.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제품이라는 라벨 및 제조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수의학 전문가에게만 제공될 경우
- e. 온라인 자원을 통해 배포되는 제품의 사용용도 관련 라벨 및 제조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수의학 전문가에게만 제공될 경우
- f. 제품의 표시문구 및 라벨이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예. 근거 없이 반려견 사료가 암의 치료를 촉진한다는 주장)
- g. 승인된 동물 신약의 대체제로 시판되어서는 안 됨
- h. 제조업체는 FD&C법 섹션 415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함
- i. 동물 식품에 적용되는 CGMP(21 CFR 파트 507 서브파트 B 참조) 및 동물 식품 제조에 적용되는 기타 규정에 따라 제조된 제품
- j. 제품의 라벨이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식품 라벨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 (CFR 파트 501 참조)
- k. 제품에는 GRAS 성분, 승인된 식품 첨가물 또는 미국 사료 관리 협회의 2015 공식 간행물에 정의된 성분만 포함되어 있을 것

○ EU의 반려동물 사료 특수목적식(PARNUTs) 영양 및 표시 기준<sup>19)</sup>

특수목적식(PARNUTs)에 대한 언급은 FEDIAF 모범 라벨링 가이드 5.2.5.5에 간단한 언급만 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020년 3월 4일자 위원회 규정(EU) 2020/354의 Part A. Annex를 참조

- 급·만성 신부전, 결석, 간부전 등 대표적인 반려동물의 21가지의 질환에 대한 필수 영양학적 조건 명시
- 이에 따른 필수 표시 신고사항과 의무 표시 문구들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EU에서는 FEDIAF Code of Good Labelling Practice for Pet Food에 따르면, 기능성/건강 표시사항 관련 영양 기능 강조 표시, 기능의 향상 강조 표시, 건강 유지 및 질병 위험의 감소 표시를 할 수 있다. 그 예는 <표 32>와 같다.

18) AAFCO 펫푸드 라벨링 가이드, X. 펫푸드 라벨링 클레임, L. 수의사의 감독 하의 식이

19) 2020년 3월 4일자 위원회 규정(EU) 2020/354의 Part A. Annex



(표 32) PARNUTS의 만성신부전사료의 기준 예시

번호	목수목적	필수영양학적 특성(GP1)	급여대상	표시사항(GP2)	권장기간	기타사항
1	만성 신부전의 경우 신장 기 능 지원 (1)	수분 함량 12%(2), 조단백질 220g/kg 이 하(2)의 고품질 단백 질 및 인 5g/kg 이하 완전 사료	개	- 단백질 공급원 - 칼슘 - 인 - 칼륨 - 나트륨 - 필수 지방산(첨가된 경우)	처음에는 최대 6개월(3)	1. 사료는 완전한 사료로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2. 권장되는 단백질 소화성: 최소 85%. 3. 라벨에 '사용 전 및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 의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표시합니다 4.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침에 '물은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표시한다.
		탄산 라탄넘 옥타하 이드레이트 혼입에 의한 인 흡수 감소	성견	- 단백질 공급원 - 칼슘 - 인 - 칼륨 - 나트륨 - 필수 지방산(첨가된 경우) - 탄산탄산염 옥타하이드 레이트	처음에는 최대 6개월(3)	1. 라벨에 '사용 전 및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 의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표시합니다 2.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침에 '물은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표시합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6.5 g/kg 이하의 인은 수 분함량 12%(2), 조단 백질 320 g/kg 이하 는 수분함량 12%(2) 의 완전 사료	고양이	- 단백질 공급원 - 칼슘 - 인 - 칼륨 - 나트륨 - 필수 지방산(첨가된 경우)	처음에는 최대 6개월(3)	1. 사료는 완전한 사료로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2. 권장되는 단백질 소화성: 최소 85%. 3. 라벨에 '사용 전 및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 의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표시합니다 4.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침에 '물은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표시합니다
		탄산 라탄넘 옥타하 이드레이트 혼입에 의한 인 흡수 감소	다 자란 고 양이	- 단백질 공급원 - 칼슘 - 인 - 칼륨 - 나트륨	처음에는 최대 6개월(3)	1. 라벨에 '사용 전 및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 의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표시합니다 2.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침에 '물은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표시합니다

## 5. 연관 제도 조사 분석 및 담당 기관별 역할 검토

### 가. 미국 펫푸드 표시 기준에서 AAFCO의 기능과 역할

- AAFCO(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는 미국사료관리자협회로, 정부기관은 아  
니지만 FDA의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루지 않은 사료 관련 규정을 관장하고  
있다. FDA는 AAFCO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 주 정부는  
AAFCO의 모델 법안 및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 미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AAFCO(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 AAFCO는 펫푸드의 영양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영양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원료의 정의와 허용  
가능한 원료, 표시기준에 대한 라벨링 가이드 등을 제공한다.

### 나. 유럽 펫푸드 표시 기준에서 FEDIAF의 기능과 역할

- FEDIAF(The Europe Pet Food Industry)는 유럽펫푸드협회로 FEDIAF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EU의  
펫푸드 제조업체가 건강한 펫푸드 제조를 돕고 있다. EU는 FEDIAF의 영양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3가

지 자체 규정을 갖추고 있다.

- 유럽연합(EU)과 FEDIAF는 펫푸드, 표시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다.
- 개와 고양이의 영양 가이드라인은 펫푸드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 질환관리사료는 사료의 용도가 PARNUTs의 목록에 포함돼야 한다. 해당 목록에 설정된 영양학적 특성을 충족할 때에만 펫푸드를 판매할 수 있다.

## V. 학계, 산업계,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공청회 등 의견검토

### 1. 설문조사

#### 1) 개요

- 펫푸드 표시제도 개선에 관한 소비자와 산업계(제조업, 유통·판매업, 수입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고객의 수요 분석
- 제도 개정의 방향과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쟁점사항과 건의사항 검토

#### 2) 수행

##### 가.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년 9월 15~16일
  - 장소: 2023 서울 펫쇼(SETEC)
- 참가
  - 대상: 서울 펫쇼 참가자 중 펫 소유주
  - 인원: 313명
- 설문 문항

1. 귀하의 반려동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 ① 개
- ② 고양이
- ③ 개와 고양이 모두
- ④ 기타 :

2. 아래 분류를 참조하여 귀하가 지난 6개월 동안 구매한 반려동물사료의 상대적 지출 비중을 표시해주세요(합이 100%).

“반려동물 완전사료(주식사료)”란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펫푸드를 의미한다.

“반려동물 특수목적사료(차방식 또는 치료식 사료)”란 반려동물이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건강한 동물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동물에게 식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급여하는 펫푸드를 의미한다.

“간식사료(기능성사료 포함)”란 반려동물사료 중 위 두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을 의미한다.

- ① 반려동물완전사료(주식사료)( %)      ② 특수목적식사료(처방식사료)( %)  
 ③ 간식사료(기능성 간식사료 포함)( %)      ④ 기타사료( %)

3. 귀하는 반려동물사료 제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에 표기된 제품정보를 얼마나 자주 확인합니까?

- ① 항상 확인한다.  
 ② 자주 확인한다.  
 ③ 가끔 확인한다.  
 ④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

4. 포장지에 표기된 정보에서 귀하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도를 표시해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
① 브랜드	①-----②-----③-----④-----⑤-----⑥-----⑦		
② 제조회사	①-----②-----③-----④-----⑤-----⑥-----⑦		
③ 원산지	①-----②-----③-----④-----⑤-----⑥-----⑦		
④ 영양성분(단백질 함량 등)	①-----②-----③-----④-----⑤-----⑥-----⑦		
⑤ 사용원료 및 제품 특성 (천연, 신선, 유기농, 휴먼그레이드 등)	①-----②-----③-----④-----⑤-----⑥-----⑦		
⑥ 건강 효과.효능	①-----②-----③-----④-----⑤-----⑥-----⑦		
⑦ 인공 첨가물 사용 여부(인공 보존제, 인공 색소, 인공 향 등)	①-----②-----③-----④-----⑤-----⑥-----⑦		

5. 귀하가 반려동물사료를 구입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주는 순서대로 ( ) 표기해 주세요. 1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입니다.

- ① TV, 인터넷, 잡지, 온라인 광고( )  
 ② 포장지 표기된 원료, 제품특성, 효과 효능, 영양성분 정보( )  
 ③ 온라인 사용자 리뷰 또는 평판( )  
 ④ 전문가(수의사) 추천( )  
 ⑤ 기타( )

6. 구매하는 반려동물사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정보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표시해주세요.

①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정보

불충분함	보통	충분함
①-----②-----③-----④-----⑤-----⑥-----⑦		

② 효과 효능이 있다는 원료나 성분에 대한 정보

불충분함

보통

충분함

①-----②-----③-----④-----⑤-----⑥-----⑦

③ 사용하는 첨가물(인공 보존료, 인공 색소 등)에 대한 정보

불충분함

보통

충분함

①-----②-----③-----④-----⑤-----⑥-----⑦

7. 귀하는 제품명(브랜드명)에 “댕댕이 밥 닭고기”와 같이 원료명이 포함된 반려동물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귀하가 기대하는 제품은 어떤 것입니까?(택1)

- ① 닭고기가 가장 많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이라고 기대한다.(    )
- ② 닭고기가 50% 이상 들어간 제품이라고 기대한다.(    )
- ③ 닭고기가 25% 이상 들어간 제품이라고 기대한다.(    )
- ④ 닭고기가 고기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제품이라 기대한다.(    )
- ⑤ 향이 아닌 진짜 닭고기가 사용된 제품이라 기대한다.(    )
- ⑥ 별 기대가 없다.(    )

8. 귀하가 반려동물사료 제품에서 추가적인 필요한 표시나 보완이 필요한 정보가 표시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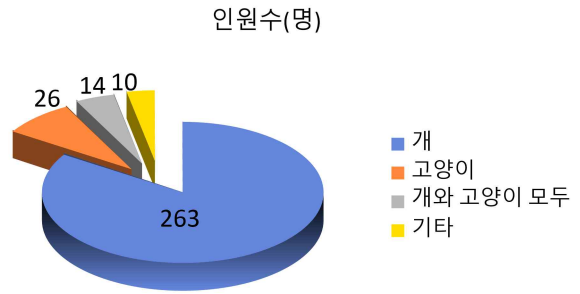
- 추가적인 표시나 보완이 필요한 정보 :
- 이유:

● 설문 결과

1) 귀하의 반려동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 ① 개
- ② 고양이
- ③ 개와 고양이 모두
-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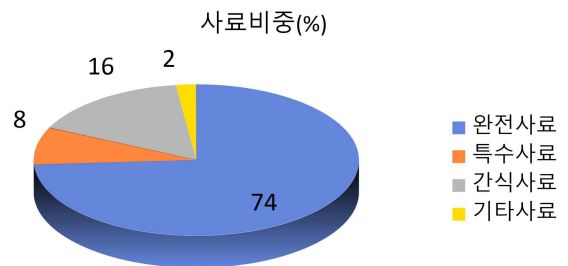
구분	인원수(명)	점유율(%)
개	263	84
고양이	26	8.3
개와 고양이 모두	14	4.5
기타	10	3.2



2) 아래 분류를 참조하여 귀하가 지난 6개월 동안 구매한 반려동물사료의 상대적 지출 비중을 표시해주세요(합 100%)

- ① 반려동물완전사료(주식사료)(   %)
- ② 특수목적식사료(처방식사료)(   %)
- ③ 간식사료(기능성 간식사료 포함)(   %)
- ④ 기타사료(   %) : 어떤사료인지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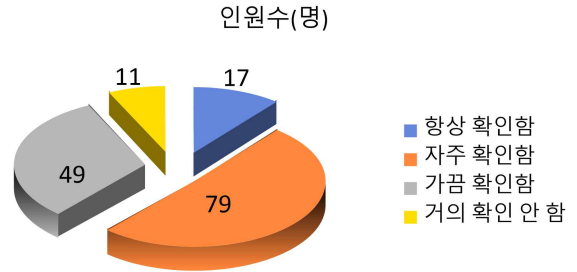
구분	평균(%)
완전사료	74.0
특수사료	8.0
간식사료	16.0
기타사료	2.0



\*기타사료 : 화식, 습식사료, 반건조, 껌, 다이어트식, 계란, 고구마, 목우촌 노령견용, 치킨, 오골계, 눈 관절용, 하림, 힐스 등

3) 귀하는 반려동물사료 제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에 표기된 제품정보를 얼마나 자주 확인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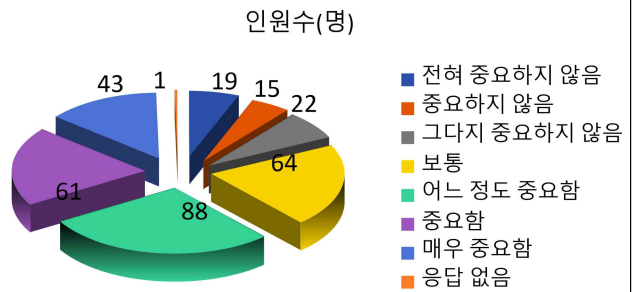
구 분	인원수(명)	점유율(%)
항상 확인함	17	55.6
자주 확인함	79	25.2
가끔 확인함	49	15.7
거의 확인 안 함	11	3.5



4) 포장지에 표기된 정보에서 귀하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도를 표시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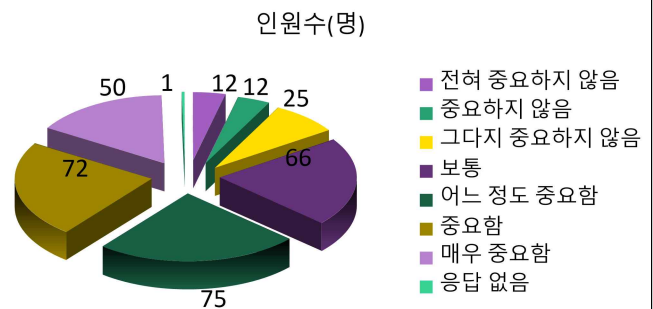
4)-①. 브랜드

구 분	인원수(명)	점유율(%)
전혀 중요하지 않음	19	6.1
중요하지 않음	15	4.8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22	7
보통	64	20.4
어느 정도 중요함	88	28.1
중요함	61	19.5
매우 중요함	43	13.7
응답 없음	1	0.3



4)-②. 제조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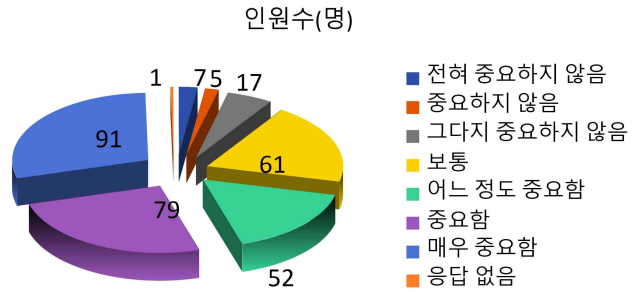
구 분	인원수(명)	점유율(%)
전혀 중요하지 않음	12	3.8
중요하지 않음	12	3.8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25	8.0
보통	66	21.1
어느 정도 중요함	75	24.0
중요함	72	23.0
매우 중요함	50	16.0
응답 없음	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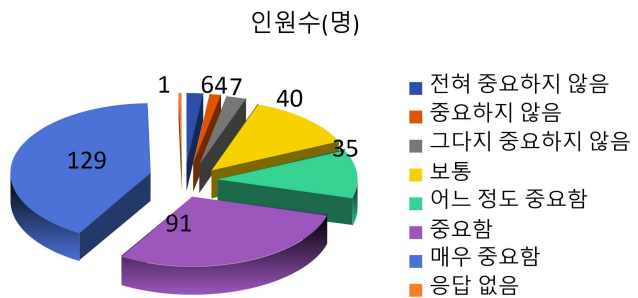
4)-③. 원산지

구분	인원수(명)	점유율(%)
전혀 중요하지 않음	7	2.2
중요하지 않음	5	1.6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17	5.4
보통	61	19.5
어느 정도 중요함	52	16.6
중요함	79	25.2
매우 중요함	91	29.1
응답 없음	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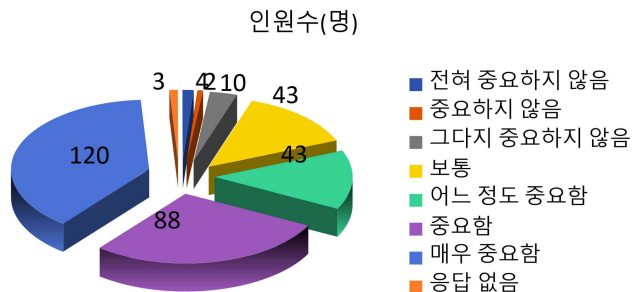
4)-④. 영양성분 (단백질 함량 등)

구분	인원수(명)	점유율(%)
전혀 중요하지 않음	6	1.9
중요하지 않음	4	1.3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7	2.2
보통	40	12.8
어느 정도 중요함	35	11.2
중요함	91	29.1
매우 중요함	129	41.2
응답 없음	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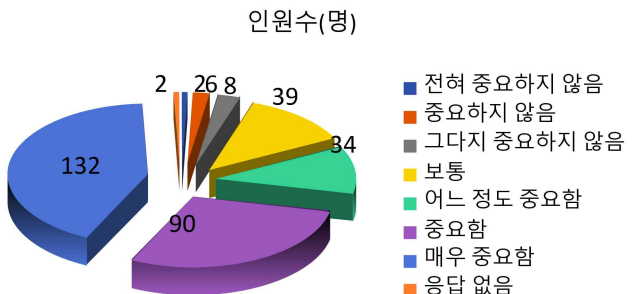
4)-⑤. 사용원료 및 제품 특성 (천연, 신선, 유기농, 휴먼그레이드 등)

구분	인원수(명)	점유율(%)
전혀 중요하지 않음	4	1.3
중요하지 않음	2	0.6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10	3.2
보통	43	13.7
어느 정도 중요함	43	13.7
중요함	88	28.1
매우 중요함	120	38.3
응답 없음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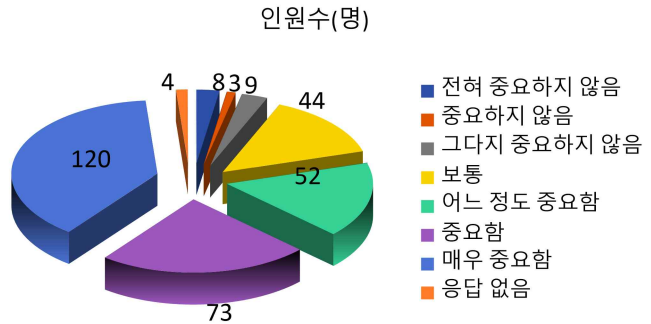
4)-⑥. 건강 효과.효능

구분	인원수(명)	점유율(%)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0.6
중요하지 않음	6	1.9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8	2.6
보통	39	12.5
어느 정도 중요함	34	10.9
중요함	90	28.8
매우 중요함	132	42.2
응답 없음	2	0.6



4)-⑦. 인공 첨가물 사용 여부(인공 보존제, 인공 색소, 인공 향 등)

구분	인원수(명)	점유율(%)
전혀 중요하지 않음	8	2.6
중요하지 않음	3	1.0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9	2.9
보통	44	14.1
어느 정도 중요함	52	16.6
중요함	73	23.3
매우 중요함	120	38.3
응답 없음	4	1.3



5) 귀하가 반려동물사료를 구입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순서대로 ( ) 표기해 주세요.

- ① TV, 인터넷, 잡지, 온라인 광고( )
- ② 포장지 표기된 원료, 제품특성, 효과 효능, 영양성분 정보( )
- ③ 온라인 사용자 리뷰 또는 평판( )
- ④ 전문가(수의사) 추천( )
- ⑤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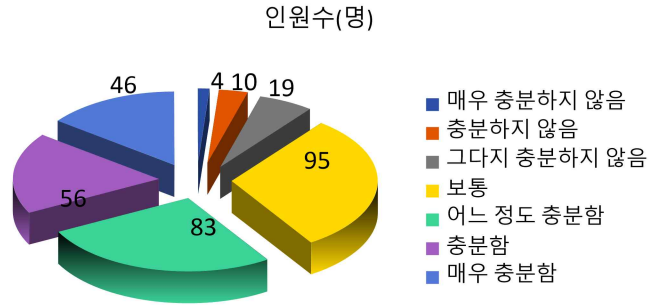
※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문항 순서대로 비율을 나타냄

※※ 기타 : 지인 추천, 인터넷 검색, 유기농 여부, 강아지 배변 상태, 텔레비전, 기호성, 펫카페

6) 구매하는 반려동물사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정보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표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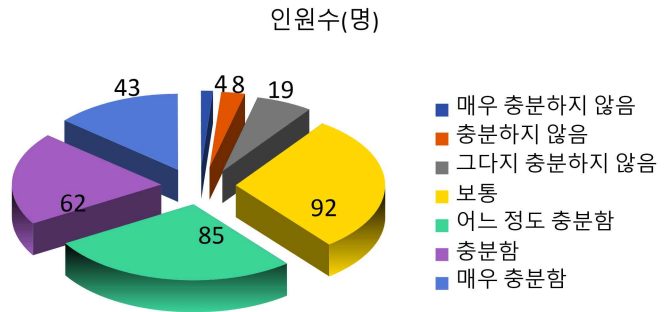
6)-①.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정보

구 분	인원수(명)	점유율(%)
매우 충분하지 않음	4	1.3
충분하지 않음	10	3.2
그다지 충분하지 않음	19	6.1
보통	95	30.4
어느 정도 충분함	83	26.5
충분함	56	17.9
매우 충분함	46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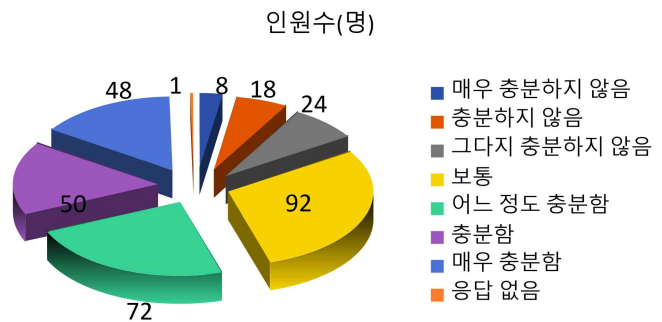
6)-②. 효과 효능이 있다는 원료나 성분에 대한 정보

구 분	인원수(명)	점유율(%)
매우 충분하지 않음	4	1.3
충분하지 않음	8	2.6
그다지 충분하지 않음	19	6.1
보통	92	29.4
어느 정도 충분함	85	27.2
충분함	62	19.8
매우 충분함	43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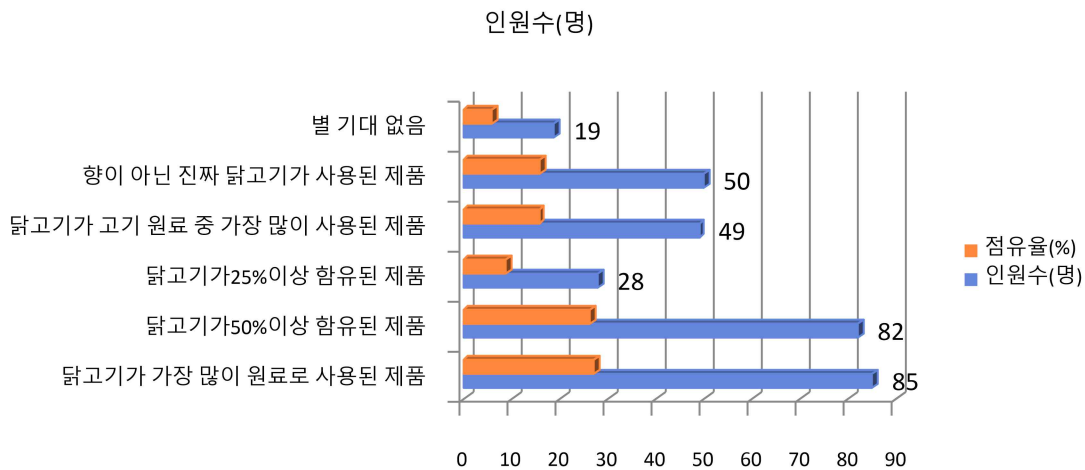
6)-③. 사용하는 첨가물(인공 보존료, 인공 색소 등)에 대한 정보

구 분	인원수(명)	점유율(%)
매우 충분하지 않음	8	2.6
충분하지 않음	18	5.8
그다지 충분하지 않음	24	7.7
보통	92	29.4
어느 정도 충분함	72	23
충분함	50	16
매우 충분함	48	15.3
응답 없음	1	0.3



7) 귀하는 제품명(브랜드명)에 “댕댕이 밥 닭고기”와 같이 원료명이 포함된 반려동물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귀하가 기대하는 제품은 어떤 것입니까?(택1)

구분	인원수(명)	점유율(%)
닭고기가 가장 많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	85	27.2
닭고기가 50% 이상 함유된 제품	82	26.2
닭고기가 25% 이상 함유된 제품	28	8.9
닭고기가 고기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제품	49	15.7
향이 아닌 진짜 닭고기가 사용된 제품	50	16.0
별 기대 없음	19	6.1



8) 귀하가 반려동물사료 제품에서 추가적인 필요한 표시나 보완이 필요한 정보가 표시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8)–①. 추가적인 표시나 보완이 필요한 정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분함량 정확한 기재</li> <li>▪ 조단백질에 대한 정보</li> <li>▪ 사료에 자세한 성분표기</li> <li>▪ 정확한 고기 생산지, 생고기를 사용한 것인지 향을 첨가한 것인지 더 자세한 기록을 표시해줬으면 좋겠음</li> <li>▪ 영양표시 크기를 더 키워서 잘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음</li> <li>▪ 더 정확한 효과 성분</li> <li>▪ 건강 기능 원료에 대한 함량/검증</li> <li>▪ 닭고기 종류</li> <li>▪ 냄새 정보</li> <li>▪ 영양 정보 구체적</li> <li>▪ 칼로리 또는 알레르기 성분 등</li> <li>▪ 비싸고 좋은 사료일수록 모든 정보포함</li> <li>▪ 곡물 표기</li> <li>▪ 기관지협착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 여부</li> <li>▪ 육분 표시 생육 함량 표시</li> <li>▪ 성분</li> <li>▪ 재료의 원산지 여부</li> <li>▪ 원산지정보</li> <li>▪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것</li> <li>▪ 상세 원산지 및 재료 비율</li> <li>▪ 중요한 내용을 크게 표시해주길</li> <li>▪ 유통기한</li> <li>▪ 알러지 예방 사료가 많았으면 좋겠음</li> <li>▪ 알러지에 대한 정보</li> <li>▪ 성분 원산지</li> <li>▪ 정직한 사료</li> <li>▪ 구매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됨</li> <li>▪ 비타민 등 몸에 좋은 것 표시</li> </ul> |
|-----------------------------------------------------------------------------------------------------------------------------------------------------------------------------------------------------------------------------------------------------------------------------------------------------------------------------------------------------------------------------------------------------------------------------------------|------------------------------------------------------------------------------------------------------------------------------------------------------------------------------------------------------------------------------------------------------------------------------------------------------------------------------------------------------------------------------------------|

- 헤어 건강 유지 정보
- 특수첨가물
- 어류 오일 등을 연어 오일이나 참치 오일 등으로 명확한 표기 필요함
- 가격
- 한글 표시
- 제품함량
- 성분에 정확한 성분 표기
- 제조시기
- 영양성분효과
- 고기 부위
- 사람 먹는 음식에 나온 것처럼 글자가 좀 더 크면 좋겠음
- 고단백/저단백 사료 구분
- 충분한 것 같아요.
- 기타 효능
- 알려지 표시
- 해외 사료엔 유통기한 확인이 어려워요.
- 원산지
- 더 다양한 설명
- GMO사용 여부
- 영양성분 알려지
- 재료 설명
- 노견을 위한 건강 안내(자료)

- 유기농 선호
- 활동성에 따른 급여량
- 원재료 눈에 띄게 표시해주는 것
-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 디테일한 재료 정보
- 품종별 적합도
- 특수사료 종류가 많았으면 좋겠음
- 제품 재료의 유효기한도 있으면 좋을 듯
- 견종 표기
- 사람 음식처럼 다 표기해주길
- 모든 재료의 모든 정보
- 실제 효능
- 애매한 표시보다 정확한 함유량%표시
- 종별 알려지 내역
- 자세한 육류 명칭
- 재료별 원산지표기
- 피부관리
- 가격
- 좀 더 자세한 정보
- 첨가물 정보
- 충분하다
-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함

8) - ②. 이유

- 비슷한 제품이나 포장지가 달라 소비자가 구분 어려움. 차이가 있다면 성분 함량도 기재가 필요하다고 봄
- 조단백질이 추상적임
- 눈에 잘 안 들어와서 필요한 정보가 안보이지 않아요
- 효능에 대한 설명을 만들 수 없어서
- 실제로 광고하는 효능이 있는지 알 수 없음
- 원재료 알기 어려움
- 식이조절 및 식단관리를 위해
- 알려지
- 기관지협착
- 원전 이슈 때문에
- 알려지 많은 강아지가 많기 때문에
- 반려동물 알려지 제품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포장지에 숫자로 빨리 확인할 수 있음 좋겠어요

- 가끔 모호한 원산지가 있어서
- 잘 기억하기 위해서
- 보관 목적
- 알려지가 있어서
- 정보가 부족할 때가 있음
- 아이들이 먹을 것이라서
- 구매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털이 윤기가 나는 효과도 있는데 정보 미비
-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급여를 해야 하는지 정보가 없음
- 원재료 중요하게 봐서
- 성분 분석하고 구매
- 품종별 적합도에 따른 여부가 중요
- 재료명은 표기되지만 함량은 표기되지 않고 원재료명도 미표기되어 있어서
- 우리 강아지가 특수사료만 먹기 때문에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들이 은근히 닭 알려지가 많음</li> <li>▪ 제조 시기를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li> <li>▪ 취급업 걸린 견은 단백질이 많은 사료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저 단백질 사료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어려움</li> <li>▪ 소비자는 함유 성분을 모르기 때문</li> <li>▪ 뼈나 내장이 많이 들어 있을까봐</li> <li>▪ 성분은 보여도 효과를 정확히 알기 힘들</li> <li>▪ 잘 설명한 것 같아요</li> <li>▪ 하얀 강아지들은 알레르기 위험 체크</li> <li>▪ 영어로 써져서 연월일 날짜 표기가 달라서 매번 확인이 어려 워요</li> <li>▪ 원산지가 중요</li> <li>▪ 공부해야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li> <li>▪ 사람 식품과 동일한 적용 필요</li> <li>▪ 하나만 먹기엔 부실해서</li> <li>▪ 좋은 성분 먹고 싶어서</li> <li>▪ 관철에 도움</li> <li>▪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궁금함</li> <li>▪ 신뢰의 문제</li> <li>▪ 중국산이 싫어서</li> <li>▪ 주원료의 함량이 안 적혀있어서</li> <li>▪ 주 원재료 원산지 정보</li> <li>▪ 피부병이 있는 아이 등 약&amp;질병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방식</li> <li>▪ 오래된 재료로 하면 먹이기 싫을 것 같음</li> <li>▪ 대략적인 정보만 나와 있고 자세한 정보는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li> <li>▪ 견종마다 필요한 성분</li> <li>▪ 하루 권장 섭취량 비율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li> <li>▪ QR코드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음 좋겠다</li> <li>▪ 견주가 잘 모르니까 대신 알려주길 바람</li> <li>▪ 만족</li> <li>▪ 표기명이 외국산이라고 나온 적이 많음. 좀더 세부적이었으면 좋 겠음</li> <li>▪ 확인이 필요함</li> <li>▪ 강아지 종별로 알려지가 달라서</li> <li>▪ 일정%이상 확인 후 구매하기 위해</li> <li>▪ 그냥 육분 하면 모르겠음</li> <li>▪ 실제 원료별 원산지 확인 원함</li> <li>▪ 질병 예방차</li> <li>▪ 질병 관련 효능 사료가 많아지면 선택의 폭이 많아져서</li> <li>▪ 유전자 변이 위험해서</li> <li>▪ 실제로 날짜가 안 지났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살아 있는 벌레가 발견된 적이 있음</li> <li>▪ 모발 건강 유지</li> <li>▪ 사료/배변 냄새 정보</li> </ul> |
|-----------------------------------------------------------------------------------------------------------------------------------------------------------------------------------------------------------------------------------------------------------------------------------------------------------------------------------------------------------------------------------------------------------------------------------------------------------------------------------------------------------------------------------------------------------------------------------------------------------------------------------------------------------------------------------------------------|-----------------------------------------------------------------------------------------------------------------------------------------------------------------------------------------------------------------------------------------------------------------------------------------------------------------------------------------------------------------------------------------------------------------------------------------------------------------------------------------------------------------------------------------------------------------------------------------------------------------------------------------------------------------|

## 나. 업체(펫푸드 제조, 유통·판매, 수입업) 대상 설문조사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년 9월 13일
- 장소: 삼성역 브이플렉스

### ● 참가

- 대상: 펫푸드 제조, 유통·판매, 수입업체
- 인원: 112명

### ● 설문 문항

1) 귀하(혹은 귀하의 소속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복수 표기 가능)?

- ① 반려동물사료 제조업(     )
- ② 반려동물사료 유통, 판매업(     )
- ③ 반려동물사료 수입업(     )

④ 기타( )

2) 현재 반려동물사료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은 소, 돼지와 같은 양축사료와 동일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5 사료의 기타표시사항)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귀하는 반려동물사료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은 양축사료와 분리하여 별도의 표시·광고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① 양축사료와 분리된 별도의 반려동물사료 표시·광고 규정이 필요하다.( )

- 이유:

② 현행과 같이 양축사료와 같은 표시·광고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

- 이유:

③ 기타 의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원료명을 사용하는 경우]**

3) 현재 반려동물사료 제품의 제품명에 대하여 사료관리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한 경우 실제 원료를 사용한 것인지, 원료를 얼마나 해당 제품이 포함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전혀 알 수가 없어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제품명에 “소고기와 황태”처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의 전부 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해당 원재료가 들어간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명에 원재료가 건물 기준 95% 이상일 때에만 온전한 원재료명을 쓸 수 있고, 25% 이상일 때는 00레시피, 3% 이상일 때는 00을 넣은 (with) 그 이하일 때는 00맛이라고 표기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제품명에 원료명을 포함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① 현재와 같이 제품명에 원료명을 포함하는 것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이유:

② 반려동물사료 제품명을 표기할 때 제품명에 원료의 명칭(예를 들어: 닭고기 00)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원료의 함량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원료(닭고기)의 함량 비율(%)을 원재료명에 괄호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

- 이유:

③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사료 제품명을 표기할 때 제품명에 원료의 명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 비율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이 표시방식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

- 이유:

④ 기타 의견:



[휴먼그레이드 용어 사용에 대하여]

4)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사료 제품 중에 표시 및 광고에 “휴먼 그레이드(Human-grade)”,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적인 규정이 전혀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AAFCO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먼 그레이드’, ‘사람이 먹는 음식’ 등의 문구를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사가 원료 공급사의 원료가 식품용 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종 제품의 생산이 식품을 생산하는 GM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 등 생산, 포장, 운송, 유통에 걸친 전 과정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휴먼 그레이드”와 관련된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재와 같이 별도의 표시규제가 없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 이유:

② 미국의 규정에 따라 “휴먼 그레이드(Human-grade)”,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의 표현의 사용은 사용하는 원료가 100% 식품 원료 또는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고 제품의 가공, 제조 과정이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여 식품으로서 유통이 가능한 제품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 이유:

③ “휴먼 그레이드(Human-grade)”,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의 표현의 사용은 제품의 가공, 제조 과정이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규 준수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원료가 100% 식품 원료 또는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이유:

④ 기타 의견:

5)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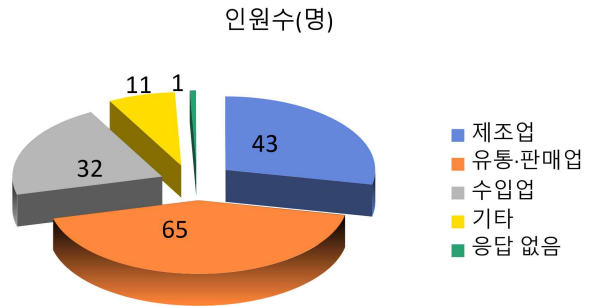
반려동물사료 표시·광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 설문결과(문항 내용 간략화함)

1) 귀하(혹은 귀하의 소속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복수 표기 가능)?

- ① 반려동물사료 제조업(    )
- ② 반려동물사료 유통, 판매업(    )
- ③ 반려동물사료 수입업(    )
- ④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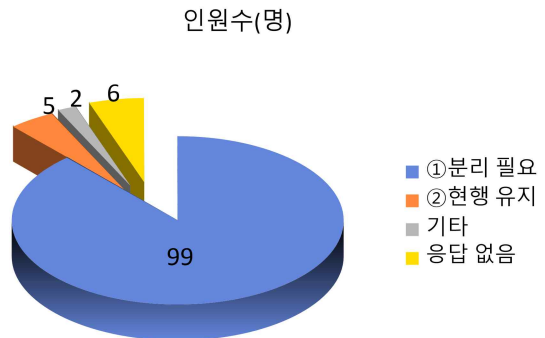
구 분	인원수(명)	점유율(%)
제조업	43	28.3
유통·판매업	65	42.8
수입업	32	21.1
기타	11	7.2
응답 없음	1	0.7



2) 귀하는 반려동물사료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은 양축사료와 분리하여 별도의 표시·광고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양축사료와 분리된 별도의 반려동물사료 표시·광고 규정이 필요하다.(    )
- ② 현행과 같이 양축사료와 같은 표시·광고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

구 분	인원수(명)	점유율(%)
① 분리 필요	99	88.4
② 현행 유지	5	4.5
기타	2	1.8
응답 없음	6	5.4



2)-① 선택 이유 및 기타 의견:

- 반려동물의 경우 양축사료와 다르게 처방식, 기능식 등의 사료를 구분·관리해야 합니다.
- 양축사료와는 반려동물 영양 요구량이 다르며, 수명도 다르기에 현행법과 실제 판매 사이의 괴리가 큼(증빙자료 유무에 관계 없이 표시사항 위반으로 분류)
- 반려동물 제품이 다양해지고 건강기능식품처럼 변하고 있다
- 양축용과 다르게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함
- 사용되는 원료 및 유통되는 과정이 다르기에 별도의 규정 필요. 반려동물 법령을 별도로 규정해야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됨

- 펫푸드 발전을 위해 별도 규정 필요
- 반려동물 사료가 양축사료와는 달리 특수 영양소가 있기 때문
- 처방식 등 아무 근거 없는 사료 남발됨
- 가축과 반려동물 분리
- 대상 동물의 특성과 구입하는 소비자 대상이 확연하게 다르므로 분리된 규정이 필요함
- 반려동물 사료와 양축사료는 그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만의 표시, 광고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축과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제품군부터 종류가 많이 차이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점차 까다로워지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기준, 인식에 대한 맞춤 규제 필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세에 맞춘 개별시장 형성
- 현재 반려동물 급여, 생산 가이드와 맞지 않다.
- 축산과 반려동물의 각 사료는 엄연히 목적이 다릅니다.
- 영양 정보 표시 필요/원료명을 반려동물 사료에 맞게 이원화 필요(원료명을 순화시켜 표기 필요)
- 양축 사료와 펫푸드는 시대의 요구사항이 다르다.
- 양축사료와는 다른 다소 엄격한 표시, 광고 필요 / 무분별한 광고가 마치 치료제인 것으로 오인 사례가 발생 및 소비자 혼동할 것 같음
- 식생활 위한 양축의 개념과 반려동물로서의 의의는 구분되어야 하며, 관리 또한 강화하여야 한다.
- 기르는 목적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
- 클레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각 동물을 키우는 목적에 맞게 법이 설정되어야 현실에서의 반영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함
- 성장하는 펫푸드 산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반려동물의 특성을 감안한 법령의 부재
-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소, 돼지의 양축보다 가족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
- 모호한 규정이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서 불편
- 소비 경로와 경향에 큰 차이
- 생산 목적의 가축류와 달리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한 영양성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먹일 수 있는 가이드 필요. 현재는 해외 규정 위주로 신뢰가 있어 관련된 해외 제품 위주 소비 형상 읽음일반 소비자가 최종 수요자이기에 보다 명확하고 쉬운 규정이 필요
- 축종 자체가 다르고 같은 품종이 아니므로
-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함, 양축사료와 반려동물 사료는 생산 목적이 다르다.
-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한 서술
- 지면 부족 (리벨)
- 반려동물용 일반사료 (단미/배합)의 기능성과 관련된 과장광고가 너무 많다.
- 소, 돼지 등은 대형동물
- 반려동물의 주류는 소형동물
- 수의사는 이를 분리하여 전공하고 있지 않나?
-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펫푸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식품에 준하는 표시/광고 규정을 갖추어 내수시장 보호/해외시장 개척에 적합한 수준에 도달 가능하기 때문
- 식품에 준하는 표시 광고 규정으로 반려동물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 반려동물의 지위 상승
- 별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 소비자가 명확히 다릅니다.
- 서로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반려동물 사료에 관한 표시 말고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 양축사료(Pellet)와 반려동물사료(DRY:EXTRUSION/WET)는 그 형태와 제조 과정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선상의 표시, 광고는 불가함
- 기능성 사료, 영양제 등 분류 필요
- 관리기준의 고도화 및 체계화 진행 중(HACCP 규정 포함)
- 반려동물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 소, 돼지 등의 사료와 강아지, 고양이의 원재료 또는 배합 방식, 제조 공정 등이 다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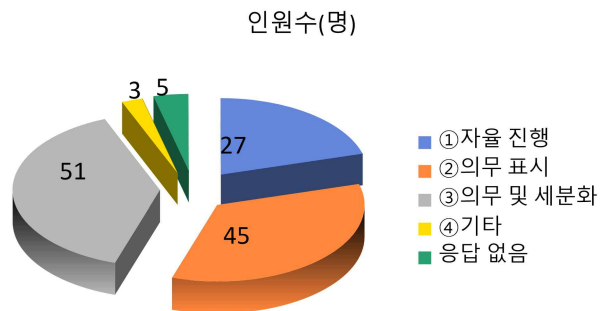
- 1), 2), 3) 모두 선택
- 1) 올바른 표기, 사용
- 2) 올바른 표기, 사용
- 3) 기타: 별도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직통번호 필요
- 급여 대상이 다르므로 당연히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일반적으로 양축사료는 소, 돼지 등이라 알고 있으므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함(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많이 다름)
- 가축용 사료의 소비자와 반려동물용 사료/간식 사용의 소비자 다르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표시사항 필요
-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짐
- 대동물의 경우 소비자가 아닌 축산업자에게 보여지는 것
-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함
-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다름
- 양축과 반려동물은 목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가축과 같이 대량 양육이 아닌 반려동물은 개개인의 양육이 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사료를 선택에 의해 구매하기 때문에 과대, 과장 광고를 관리할 표시광고의 규정이 식품처럼 자세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고사양화됨에 따라 원재료 스펙 등 사용 원료 등의 차별점이 확연해지고 있으며 반려동물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표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사료와 간식, 음용수 등 형태로 양축사료와는 다르기에 보다 디테일한 구분 표기가 필요
- 양축사료는 사람이 먹을 것을 고려한 규정이기도 하고, 소, 돼지와 같이 집안이 아닌 곳에서 키우는 가축과의 규정과 별도 표시/분리하여도 된다고 생각함
- 사료관리법에는 과장 광고를 제재하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이 부재
-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과대광고가 심하다
- 전반적으로 반려동물의 제품의 목적은 양축용과 다르기 때문에 표시, 광고에도 규정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봄.
- 기타 의견: '기능성 원료' -> 한국에 등록이 안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US&EU에서는 쓰이는 검증된 원료) 축과원 통해서 원료 등재 시 1~2년 정도 소요되어, 시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식품처럼 한시적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는 FAST TRACK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1)번 세모 표시
- 기타 의견: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EX) "부산물", "~박"은 너무 가축/양축용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CONSUMER FRIENDLY 한 표현도 아닌 것 같고, 좋은 원료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듯 합니다.
- 반려동물에게 쓰일 수 있는 기능성 원료들이 있는데, 한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과원 통해 원료 등재 시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FAST TRACK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 한시적 인정
- 양축 사료의 목적-생산물(원육, 달걀, 우유 등)의 품질과 증가(생산성 증대)를 위함이라면, 반려동물 사료의 목적은 단지 일상생활을 위한 '영양 보충'의 목적이다. 해당 목적에 더 좋은 사료를 찾는, 기능성을 찾는, 다른 물성의 제품을 찾는 1차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소비자의 인식이 다름
- 사료의 목적과 원료 및 제조 수준이 다름
- 판매 대상에 대한 명확한 차이가 있으나 축산동물 위주의 정보 고시와 규정으로 실무에 어려움이 있음
- 표시사항 중 축산업 위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의 구분 필요
- EX) 반려동물용 -> 세부적 용도 필요 / 주기별 분리 / 주식과 간식 분리
- 기타 의견: 광고 중 육함량 표시 기준 필요
- 현재 정제수를 제외하고 임의로 육함량을 높아 보이게 표시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음
- 약용 문제, 소비자 혼동
- 가축과 반려동물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
- 양축사료는 소비자가 양축농가로 제한되어 있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사료 전문 지식이 없는 양육자들이기 때문에 양육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필요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야 함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원료명을 사용하는 경우]**

3) 우리나라에서도 제품명에 원료명을 포함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① 현재와 같이 제품명에 원료명을 포함하는 것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② 반려동물사료 제품명을 표기할 때 제품명에 원료의 명칭(예를 들어: 닭고기 00)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원료의 함량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원료(닭고기)의 함량 비율(%)을 원재료명에 괄호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
- ③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사료 제품명을 표기할 때 제품명에 원료의 명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 비율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이 표시방식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

구분	인원수(명)	점유율(%)
① 자율 진행	27	20.6
② 의무 표시	45	34.4
③ 의무 및 세분화	51	38.9
④ 기타	3	2.3
응답 없음	5	3.8



3)-① 선택 이유

**①원료명 표시 자율진행 선택 이유**

- 과장 광고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에 구분이 필요
- 같은 제품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표현방식에 대한 규제가 없는 만큼 너무나도 다양한 텍스트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
- 고급 사료의 경우 생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수율 정도를 생각해보면 때70%이상 손실이 있습니다.이 법을 시행하면 업체들이 육분이나 육골분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더 이득을 볼 수 있어 사료의 품질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규제관리 미흡
- 다양성
-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규제사항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제품의 품질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줘서 품질인지 가격인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 벌써 일본 처리수 관련하여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생선/해산물/어유-바다생물 유래 원료에 대해 문의가 옵니다.
- 소비자 기만 가능성 때문
- 소비자가 혼동할 여지가 있고 일부 유통업체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 식품과 같이 원재료명의 일부를 제품명에 표기 시 함량을 같이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의 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실제 함유되어 있는 원료명은 건기식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오용/혼용

① 원료명 표시 자율진행 선택 이유

- 원료명 제품에 명시되도록 정착 시기까지는 일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임
- 함유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함유량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며 또한 배합비로 적용하는 게 아닌 성분등록증 상 등록성분량을 관리하므로 이 함유표시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은 어떤 것이며 충분히 검토 필요.
- 현행 유지 차원

3)–② 선택 이유

② 원료명과 함량 의무 표시 선택 이유

- %의 표시는 해당 함량이 높은 것이 더 좋은 품질이거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오인할 수 있다
- 수입 제품의 경우,포장에 표시하기 어려움(별도 생산/포장 필요)
- 표기해야 함량에 따라 소비자 제품 구매 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가장 높은 함량 원료만 표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 고기 함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의 고기를 쓰고 그것을 어떻게 가공했느냐가 더 사료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이 경우 저가 고기분말을 통한 경쟁만을 부추길 수 있어 업체가 표기할지 말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기업 대외비 노출
- 반려동물은 단순히'애완'이 아닌'반려'로 바뀌는 사람들의 인식 만큼 우리 아이가 먹는-과 같은 마음으로 신중하게 사료를 구매하는 소비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비자가 정확한 제품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 주원료에 대한 인식하기가 수월
- 소비자(반려동물)알권리 보호 차원
-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 알권리
- 원재료 함량 기재 시 이 부분은 양축용에 반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 정확하게 함유량을 표기하여 명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
- 표기까지는 필요 없을 듯.제조사 함량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

3)–③ 선택 이유

③ 원료함량 표시 세분화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분화된 표시 방식의 전문적인 표기 방식을 도입하는 게 맞다</li> <li>▪ 소비자에게 보다 자세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li> <li>▪ 영양성분 함량</li> </ul>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지적 수준이 고도화 되어 있지 않아 무의미,불필요</li> <li>▪ 규제관리 미흡</li> <li>▪ 일부 표기 내에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소비자가 판단하기에 불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니 과민 반응이 보일 수 있어 주성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면 될 것 같다.</li> </ul>
(그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기준과 소비자 신뢰를 위해 표시기준이 강화되어야 함</li> <li>▪ 현재 규제 중 가장 현실적</li> <li>▪ 잘 모름</li> </ul>

### 3)-④ 기타 의견

- 사료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들에 대해서 함량 비율이 명시되어야 소비자의 인식이 개선되며, 사료에 대해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임
- 기밀일 수 있음
- 건물/생육 기준으로 소비자 판단 기준에 혼란 발생
- 사람이 먹는 제품이 아니고 반려동물이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 시 단가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굳이 퍼센트가 필요할까 의문이 듦
- 세부 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원료 정도는 함량 표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사실적인 함량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가 필요함, 실제 대부분 제조사의 경우 첨가함량 순서로 표시하지 않고 동물성 단백질질을 1원료 또는 2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제품이 다양하여 범위 규정이 어렵다.
- 너무 혼란스러워 소비자들의 불만 야기
- 사람 식품만 봐도 딸기 우유에 딸기가 얼마나 함유되는가? 제품의 상징성이 더 중요
- 과장 광고 소지 및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줄이고 단순 비율 표시뿐만 아니라 별도의 표시기준을 통해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유도
- 소비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해당 원료가 얼마나 포함된 것인가 일 것입니다. %로 규정해서 표시하여 준다면 지금보다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소비자의 알 권리, 그리고 너무 까다로운 규정 신설은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미국과 같이 세분화하되 함량 표시는 제외(수출 시 불리)
- 기준 설정 필요, 무분별한 표기 확대 / 소비자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의 기준 설정 필요함
- 소비자의 알권리와 오인을 예방하여야 한다.
- 어느 정도 제품명에 자율성을 두어 다양한 네임이 나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비율을 표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케팅적인 스티커로 표시 가능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오인 방지
- 너무 세분화하게 되면 불필요한 포장재 비용이 증가할 것
- 일반적인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제품명에 쓰인 원료가 포함된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량 비율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오인 방지. 너무 세부적인 구분은 배합 함량 변경 등 제품의 원활한 개발에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포장재 비용 등)
- 세부화 시킴으로써 소비자와의 분쟁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 컨셉 원료 극미량과 정작하게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구분 --> 소비자 직관성 필요
- 소비자가 미국에서 제조된 사료를 먹이는 이유.
- 한국 펫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수
- 원료 투입량에 따라 원재료명 기입 순서별 작성으로 어느 정도 대체되고 있다고 보임.
- 고객들이 제품의 가격 대비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제품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품원료에 대한 기준을 분류별로 세분화해서 정리하고 그 사용함량을 적고 영양 근거를 기재할 필요
- 소비자의 업계 신뢰를 강화시키기 위해
- 특정 함량 이상일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사람 음식처럼)
- 함량 비율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아직 미국만큼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고 각 세분시장 규모가 작아 너무 과한 규제는 업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확실한 원료 표기로 이를 남용 혹은 소비자의 오해 요소는 확실히 차단하는 게 좋다
- 반려동물사료에 정착하게 들어가는 원료와 함량을 기재 표시해서 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다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 소비자들이 더 쉽게 알 수 있고, 기업도 홍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품의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원재료 기준을 약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 함량 비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100%라고 위장하여 파는 업체들이 많음. 이는 반려동물 식품시장에 혼란을 불러옴
-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업체들도 수준 높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 원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3>-④ 기타 의견. 이어서>

- 제품명은 별개로 원료는 표시 가능함
- 할 거면 정확하고, 기준 있게 시행
-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 (기존의 경우 확인 어려움)
- 제품명 표기는 자율적으로 하되 정보 표기하는 점은 동의하나 비율 등의 표기는 자율적으로 하되 분말, 생육, 냉동육 등의 구분을 표현하는 방식에 보다 집중하여 법안을 조정했으면 함
- 반려동물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간식을 먹이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바람이고 이를 투명하게 표기되는 것이 산업 투명성이 제고되고 발전할 것으로 생각됨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사료는 사료일 뿐
- 소비자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음
- 정보의 객관화는 앞으로의 산업 방향이기 때문
- 반려동물 사료에 들어가는 영양성분의 함량을 소비자가 파악하여 급여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 소비자의 정확한 사료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
- 반려동물 표시사항 재정 후, 추후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 표시사항 변경 시, 자체 등 다 변경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개정되면 오히려 혼선이 생길 것 같다
- 1차 재정 후, 계속/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정확한 정보전달 및 과대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 원재료 함량만 정확히 표현한다면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할 것임
- 먼저 해당 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제품명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제품출시에 대한 규제가 생겨 정정 어려운 제품명 또는 소비자가 기억할 수 없는 이름들이 남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품 출시 자율성이 사라짐
- 단가 측면 우려 (실제 미국처럼 25% 이상 음료 사용하기에 마땅한 원료가 없음 (특히 기능성 원료들)
- 육분말과 생육을 사용할 때와 함량 차이가 있어 숫자로 지정하면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제한됨.
- 식품과 비슷하게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 표시방식이 세분화되고 명확해져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자가 건강한 펫푸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준만 명확하다면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가능
- 유예기간 & 명확한 가이드라인
- '자율화'의 경우,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화시킬 수 있음
- '세분화' 역시 너무 복잡한 표기 기준에 실질적인 소비자의 '가독성'이 부족해 보임
- 뒷장에 휴먼그레이드 문구 관련해서 차라리 원료의 투명성을 고수한다면, 휴먼그레이드라는 문구 없이도,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더욱더 본인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성분표시사항에서 정확한 함량이 확인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
- 원료 함량 표기가 필요하며 가수량 제한 육함량으로 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과대광고 및 소비자의 오인
- 원재료 함유량에 따라서 제품명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도움이 됨

[휴먼그레이드 용어 사용에 대하여]

4) “휴먼 그레이드”와 관련된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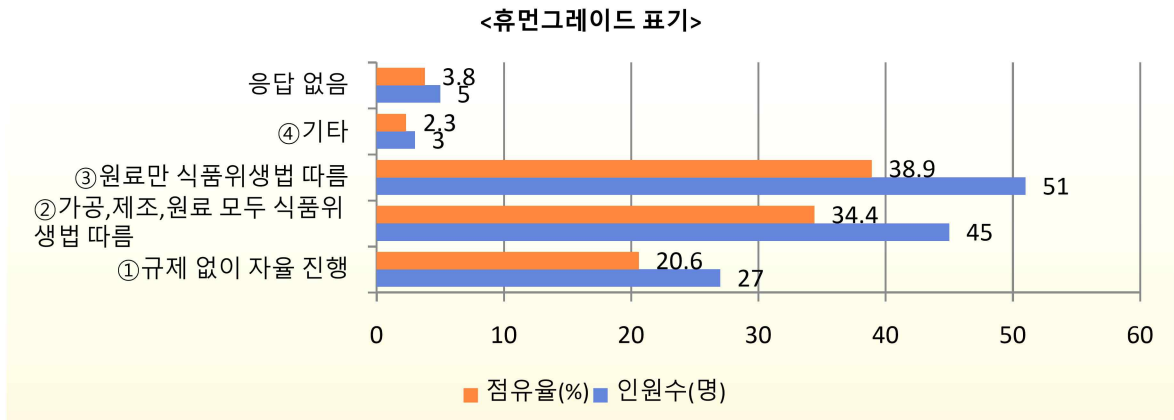
- ① 현재와 같이 별도의 표시규제가 없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② 미국의 규정에 따라 “휴먼 그레이트(Human-grade)”,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의 표현의 사용은 사용하는 원료가 100% 식품 원료 또는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고 제품의 가공, 제조 과정이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여 식품으로서 유통이 가능한 제품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휴먼 그레이트(Humangrade)”,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의 표현의 사용은 제품의 가공, 제조 과정이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규 준수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원료가 100% 식품 원료 또는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응답 -

구 분	인원수(명)	점유율(%)
① 규제 없이 자율 진행	27	20.6
② 가공, 제조, 원료 모두 식품위생법 따름	45	34.4
③ 원료만 식품위생법 따름	51	38.9
④ 기타	3	2.3
응답 없음	5	3.8



#### 4)-④ 기타의견

- 휴먼 그레이트의 용어 자체 뜻에 따라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원료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도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휴먼 그레이트를 쓰는 게 적합해 보인다.
- 너무 남발되어 사용 중임
- 사료인데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 규제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 휴먼그레이트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료는 사료일 뿐이다.
- 가수분해 단백질과 같은 단미사료로 허가된 원료는 식품 기준을 따르기 어려움
- 사료의 제조과정 상 식품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 1) (x 표시함)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 2) 휴먼그레이트를 마케팅 요소로 사용한다면 식품과 같은 법규 준수 필요
- 특수한 제품의 분류가 필요하다. 과잉규제가 되면 실효성이 없을 듯하다.
- 식품 원료 1~2개 사용했다고 휴먼그레이트라고 하면 너무 혼란스러움

<4)-④ 기타 의견 이어서>

- 현실적 이유
-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식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휴먼그레이드라는 표현에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첨가물이 없는 식품을 먹어야 하는 동물이므로 꼭 필요함
- 2) 소비자 오해로 인한 잘못된 인식
- 제품의 생산과정도 관리가 되어야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음. 현재는 국내 제조 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많이 부족한 편임
- 규정을 설정하여 깨끗한 시설에서 사람이 먹는 원료로 제조한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함.
- 휴먼과 animal은 분리하여야 한다.
- 사료는 이미 식품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엄연히 사람이 먹는 식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생산, 포장을 넘어 운송, 유통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게 '휴먼그레이드'라는 말에 부합된다는 생각.
- 사료 관리에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휴먼그레이드'라면 이 개념이 맞음
- 이렇게 관리가 어렵다면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라는 이미지를 쓰지 말아야 함. 이 경우 더 약한 개념의 문구 개발이 필요
- 통상적으로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위생/제조/유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식품관련 법령의 규제가 적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준 필요
- 종의 차이가 있고 육식, 잡식에 대한 분류가 다르므로 조리 과정이 달라 사람과는 다른 방식 적용
- 허위 과장 광고 방지, 고객 탈선 방지
- 사료와 음식의 기준은 명확히 구분하고 생산설비가 식품 제조 기계인 경우에 한정
- 세분화해서 기준을 관리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어야 하지 않음
- 사람 식품 제조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일부 보호자는 반려동물과 경험을 공유하기 원함. 이로 인해 사람에게 문제 발생 가능.
- 소비자 오인지 및 혼선 예방
- 휴먼 그레이드라면 사람의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이행한 업체만 사용 가능한한 것이 상식임
- 원료가 식품기준의 원료라면 (검증 가능) 추가 규정 없이 '휴먼 그레이드'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식품 기준의 GMP 적용 시 대부분의 제품에 제약이 되어 수출경쟁력 저하 우려
- 미국의 휴먼 그레이드 준하는 법적 규정을 준수한다.
- 1) 용어에 대한 안전, 원산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임
- 기존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 생산, 포장, 운송, 유통까지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1) 휴먼그레이드가 더 좋은 품질이라는 맹목적인 오해를 부추길 수 있다
- 3) 휴먼그레이드가 더 좋은 품질이라는 오해를 부추길 수 있다
- 1) 등급 기준 마련 필요
- 2) 기준 마련 후 논의 필요
- 휴먼 그레이드의 범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음
- 1) 별도의 규정 및 규제가 없으면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 사람과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므로 가공 및 제조과정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료는 필요하다 생각된다 (위생 및 안전성 보증 등)
- 미국의 규정대로 제품의 가공, 제조 과정까지 식품위생법 및 식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면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이 우려됨
- 2) 소비자 오인 가능
- 3) 소비자 오인 가능
- 휴먼그레이드의 소비자 관점에서 기준을 맞춰야 한다
- 도청에서 사료성분등록 신청 시 관련 서류 정확하게 검토
- 도청 사료 수거 시에도 관련 서류 정확하게 검토
- 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2번으로 시행 찬성

<4)-④ 기타 의견 이어서>

- 휴먼 그레이드라는 단어 자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게끔 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말 그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일 경우 식품 관련 법규가 준수되어야 한다 생각함
- 현행법상 사료를 제조, 생산하는 시설은 식품과 구분되어야 하므로 원재료 수준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경우 휴먼그레이드 표기가 가능한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 제조설비의 경우 변경이 매우 어렵고 많은 돈이 요구됨
- 국내산 사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타격. HACCP 정도면 찬성
- 식품과의 동등성
- 일부 원료만 사용하였으면서 휴먼그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봄
-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
- 기타 의견: 휴먼그레이드는 현재 미국에서도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인 규정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HUMAN-GRADE 표준이 필요함. 판단 근거가 필요.
- 글로벌 수준 준수 필요, 위생 안전 관리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급 표현 그대로 식품에 대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적합한 제품에 표기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휴먼그레이드 단어에 맞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
- 표시 금지
- 사료제조과정 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람이 먹으면 안 됨
- 식품위생법 사항임
- 즉 어떻게 해도 사료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 1) 애초에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사람 먹는 음식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애초에 동물 주식이며 소화기관이 상이한 데 왜 휴먼 그레이드인지2) 진짜 사람이 먹을 거면 사람처럼 원료부터 제조 보관 유통 검사까지 진행 요함
- 3) 2)와 상동
- 현실적으로 휴먼그레이드라고 표기 안 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이 되므로 규제는 필요함. 단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하다는 말이 사료 공정상 알맞지 않으므로 3번이 가장 명확하게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됨.
- 100%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특수 영양소나 특수 기능성물질을 제외하고 주요 원재료에서 사용되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100% 함량 조율 필요
- 그러나 반려동물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비타민, 미네랄) 등 보조사료는 5% 또는 10%의 허용치를 두어 그 안에서는 식품 원료가 아니어도 된다는 허용치가 필요함. EX) 유기농 인증기준 95%
- 휴먼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과 판매 및 생산자가 인식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 사람이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것과 갓 만들어져 포장에 담긴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르기에 제조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소비자 오인을 최소화
- 정부의 가이드에 맞춰진 설비에서 생산된 원료들에게 부여하여 고품질의 관리가 대한민국의 제품에 대한 전체 소비자 인식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
- 해당 문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했다'가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뜻이기에, 해당 표기 그대로 사용하려면, 모든 원료, 공정,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맞아야 한다.
- 정확한 기준으로 식품으로 사용하는 원료를 펫푸드 원료로 사용한다면 표기해도 좋을 듯.
- 1) 육류의 경우, 식육 부위를 썼을지 휴먼그레이드라고 칭하는 것 같은데, 규제/기준이 없을 시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고 악용 사례도 많을 것.
- 기타 의견: 꼭 사람이 먹는 (식육) 가식 부위만이 동물에게도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닌데 EX) 동물 내장 <-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HUMAN GRADE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 사실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표현에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함. 본인은 식품공학 전공자로서, 반려동물용 사료와 식품의 구분은 필요하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라는 문구 자체가 더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4)-④ 기타 의견 이어서>

- 원료가 식품원료인지 서류로 증명 가능함
- 식품제조시설에서 사료(PET FOOD)를 생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현재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 수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
- 식품 원료로 등록된 원료 사용은 맞으나 가공, 제조법은 각 공장의 현황에 따라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절대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적용 가능성이 높다
- 2)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
- 3) 말 그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함
- 휴먼 그레이드를 사용할 경우 정확하게 %를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함

5) 기타 의견

반려동물사료 표시·광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 1. 사료관리법상 현재 용기, 포장에서만 과대 허위광고 처벌이 가능하며, SNS와 상세 페이지 등의 온라인 광고는 처벌이 안 됨. 반려 쪽은 바뀌어야 함
- 2. 영양제 기능성 오인에 대한 정확한 규정 확보 필요
- 3. SCI 등 논문에 대해 사료학적으로 인정 자료만 광고 가능한지? 사람에게 대한 자료도 가능한지 명시 필요
- 특허에 대한 광고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명시 필요
- 차츰 규제 변화가 되었으면, 급격히는 어려움
- 표시사항 관련: 과학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표기가 가능하도록
- 예) 특허원료의 특허내용 표시
-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은 제조사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게 하고 광고도 심의 기관에서 심의를 거쳐서 상세페이지나 광고 등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건강기능 식품은 식약처에서 관할하듯이 표시, 광고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관할 지자체에서도 담당 주무관마다 법령해석이 다르다보니 매번 변경되는 담당자에 따라 변동이 생김
-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표기에 대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표기법에 대한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점더 명확하고 확실한 표기사항 필요. 특히 유기농, 휴먼그레이드, 무방부제 등등
- 닭을 키울 때 방부제 들어 있는 사료를 먹는데 사료 만들 때 넣지 않았다고 무방부제라고 하면 혼란스러움
- 처방식 사료라고 표기하는 데 반드시 규제가 필요함. Recovery(회복식)도 마찬가지로
- 기능성 사료(또는 특수목적 영양사료)의 기준 설정과 함께 기존의 처방식으로 인식되어 온 제품들을 기준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의 처방 및 동물병원 원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함께 정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세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소비자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 양축사료의 원료 표시명과는 차별된 원료명 통일 필요
- 국가 인증이 아닌 마케팅용 등급의 표시 금지( ex. 유먼그레이드, 홀리스틱 등)
- 소비자 수준 향상에 따른 기준 가축 사료 제조(사료법), 관련 기준법 보다는 조금더 체계화된 기준설정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신뢰도 상승으로 내수제품 판매 확대 및 해외 시장에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 명확한 법제도 하에 전반적인 산업이 운영되어야 한다.
- 표시 제도 관련 설명회를 자주 갖고, 관계자들이 익숙해 지도록 함. 제도의 방향, 관심사 등을 많이 공유.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p.s.) 사료도 식물성 단백질, 곤충 단백질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 있어 다양한 산업체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설명회 개최로 해외, 타산업 등의 우수한 사례와 제도 등을 교류하고 상호 평준화될 수 있게 교육, 설명회 등이 자주 개최되었으면 합니다. 개선 후에도 많은 문의가 오는 내용이나 세부 설명/안내가 필요한 경우 관련 가이드라인/안내서를 배포하고 식품분야의 '식품안전나라'처럼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기타 의견 이어서>

반려동물사료 표시·광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 1. 사료관리법상 현재 용기, 포장에서만 과대 허위광고 처벌이 가능하며, SNS와 상세 페이지 등의 온라인 광고는 처벌이 안 됨. 반려 쪽은 바뀌어야 함
- 2. 영양제 기능성 오인에 대한 정확한 규정 확보 필요
- 3. SCI 등 논문에 대해 사료학적으로 인정 자료만 광고 가능한지? 사람에 대한 자료도 가능한지 명시 필요
- 특허에 대한 광고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명시 필요
- 차츰 규제 변화가 되었으면, 급격히는 어려움
- 표시사항 관련: 과학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표기가 가능하도록
- 예) 특허원료의 특허내용 표시
- 사료관리법 표시사항 기준이 애매한 점
- 치료, 예방, 기능성 등의 기준이 애매한 점
- 법과 처분 권한이 파편화 되어 있어 유명무실함.
- 인터넷광고-공정거래위원회
- 패키지 표시 - 각 지자체
- 관련 제도 제, 개정 - 농축산부
- 식품의 식약처와 같이 일관화되고 효과적인 감시기관 필요, 현행제도는 지키는 사람이 바보임
- 사료임에도 질병치료 효과 있는 듯함 암시. 과대광고
- 주단백질 원료와 top 5 주재료의 경우 % 표시 필요
- 육류의 경우 보다 세밀하게 생육의 정의와 부산물 포함 여부 및 부산물의 범위 명시 필요
- 중간 유통/판매자의 정보 표시 의무화
- 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기준이 세분화되고 이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 되었으면 함
- 1. 반려동물의 수제 제품/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조 시설, 방법, 포장 등 어느정도 규제와 감시가 필요함
- 2. 호박, 고구마, 황태, 멸치 등 개나 고양이와 같은 육식동물에 적합하지 않은 간식이 '집에서 먹여보니 잘 먹더라'는 식으로 인식되어 주요 간식이 되고 있어서 일부 반려동물 산업관계자 및 교육자들도 개나 고양이가 잡식성 동물인 줄로 오해를 하고 있음. 산업 관계자들 에게 특히 개나 고양이에 대한 식습관 등 올바른 교육과 이들이 사용하는 교제 등에 오류가 없는지 감시 및 감찰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간식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연구로 필요할 듯
- 현재 반려동물사료의 명확
-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표시, 광고가 보완되어야 함 (법, 제도 측면)
- 간식 수입에 관한 필요 서류나 절차에 대해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제품명에 영문만 사용할 수 있는 파는 식품과 같이 영어는 한글보다 작게 표현되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법령 사항이 필요하다.
- 영문으로만 표현되면 수입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콘드로이친, 셀레늄 등 기능성이 이미 인정된 원료이나 현행 사료기준 및 규격,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새로운 원료가 나올 때마다 제조업자가 그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하나, 관련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원료를 발견하여 등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래된 용어 개선
- 표기 사항의 양식(도식화), 어느 제품이든 동일한 규격(디자인) 사용
- 업체의 포장 재료 재고 처리 유예 기간을 1년 이상 주어야 함
- 기존 포장 재료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하도록 유예해주어야 함
- 수입제품을 위해 해외 표시, 광고 기준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만들어야 함
- 신규업체들의 온라인 상품 상세페이지를 과하게 과대광고, 홍보중임 - 기존 업체들은 최대한 광고 범위 내에서 법을 지키려 노력 중이지 만 신생업체들의 과대 광고로, 기존 업체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
-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좀 더 정확하고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한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현재 기능성분 원료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기준 강화 필요



<5) 기타 의견 이어서>

- 영양성분, 급여량, 급여 대상 분류 세분화 필요
- 영양제 같은 제품도 간식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분 필요
- 온라인, SNS에서 질병명을 언급하고 불안감을 유발하여 마치 '약처럼 판매하는 업체를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시스템 구축 필요
-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 마련. 현재는 법적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의존 중
- 영양제의 무분별한 과대광고 금지
- 신고시 처리부서의 모호함
-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각 도청별로 차이가 너무 크다
- 확실하게 제도를 마련해서 배포를 했으면 합니다
- 원료 함유 순서대로 표기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일본 펫 푸드 안전구조) 준거
- 명확한 예시와 함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계육분 -> '닭고기분말'로만 표시할 수 있는 것인지? '가열처리한 닭분말'도 가능한 것인지?
-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더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반려동물이라는 인식과 문화의 변화에 맞게 소, 닭, 돼지, 개 등 반려동물로 키우는 동물군에 사용하는 사료나 간식 등은 사람의 식품에 비슷하던가 동일한 법적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 기존 양축 사료는 그 기준에 맞는 동물군에 사용하면 될 듯 하다.
- 구체적인 표시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하여 표시 가이드라인이 준비된 후 시행이 바람직함
- POSITIVE LIST ->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 판단이 많음
- 허위, 과대, 오인 광고에 대하여 강화하였으면 함
- 또한 의약품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지침서로 인하여 그게 의무법률로 생각하고 진행하려는 경우가 다반사임. 지침서도 개정 필요
- 또한 현재 제외 필요한 부분은 외국(미국, 영국 등) 법령과 현행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고시된 법을 우리나라에 맞게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신체명 표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 감각계(피부 등), 내분비계) 사용 관련 단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능성 원료 사용할 경우 보통 단가적인 측면 때문에 미량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패키지 홍보 문구(소수점)를 명확히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현행- ○○ 원료를 사용하여 ○○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현행 외 규정이 필요합니다.
- 제조사 입장으로는 판매사와 협업시 이러한 부분들로 규제할 때마다 의견이 상반될 경우 지자체에 문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자체마다 주무관님 의견에 따라 허용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어 난감합니다.
- 사료의 기타 표시 사항 (제10조 제9조 관련)
- 2. 표시 방법 중 사료 표시 방법 사료 미량의 표시 사항 중 라벨처리 가능한 조항 중에 등록성분량도 스티커 처리가 가능하게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 이유는 자가 품질 검사를 할 경우 특히 단미사료의 경우 육류의 도축 시거나 생산상황에 따라 단백질 지방량이 차이가 있어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라벨이나 스티커로 수정 불가피합니다.
- 만약 차이가 있을 때마다 포장재를 폐기한다면 업체의 손실과 환경에도 많은 피해를 줍니다.
- 제도 개선 방향이 제품의 재료에 대한 제약으로만 역할을 하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 유예기간을 길게 하여 공급자의 피해와 소비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유예기간만 넉넉히 주세요 (2년쯤? ㅠㅠ)
- 지대 낭비, 환경 파괴입니다.
- 상세페이지 가이드라인도 있으면 좋겠어요.
- 현재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제품 품질의 경쟁력 보다는 가격을 싸게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개발 시에도 효과 부분을 적용하려고 하면 임상 데이터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 최대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EX) 닭간, 사슴 폐, 오리 심장 등의 FRESH/FROZEN 원료가 쓰였을 시, 필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 사료법 기준으로 내에서는 적합한 표현을 찾을 수 없어 보입니다.
- 성분 등록에 기능성 성분이 포함되어 표시하도록 개정 필요함
- 기능성 원료의 순수 함량
- EX) 비타민C 중 순수 비타민C % 병행 표기 등
- 등급, 기준 등 소비자들이 혼동을 느끼지 않게 정확한 기준 설립
- 처방식과 일반 사료의 정확한 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 2. 전문가 자문회의

### 1) 개요

펫푸드 표시제도 개선에 관해 업계 및 각 부처에 소속된 축산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정의 방향과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쟁점사항과 건의사항 검토

### 2) 수행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년 9월 13일 6시-9시
- 장소: 서울 삼성역인근 토즈

#### ● 참석자

- 연구진: 조성호, 박태균, 최보연
- 참석자: 정연찬(ATbio), 윤성은(로알캐닌), 문홍식(펫사료협회), 이태건(네츄럴코어), 이운택(아크), 홍성수(사료협회)

#### ● 논의사항

##### 정연찬(ATbio)

- 현재 사료의 유통기한 설정 시험 분석기관 없는 상태임. 이 상태에서 소비기한까지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실행단계에서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음. 국내업체 차별 발생 우려됨
- 원료명 제품명 사용시 함량비율을 25%로 고정할 경우 업체 현실상 이 비율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워서 다량의 위법 업체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 제8조 제5항 “오일” 용어 대신에 “기름”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선에 “fresh”도 넣어 기준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만 현재 기준이 매우 높고 수입업체의 경우 이를 스티커로 가려야 되는데 안가리면 국내업체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음. 삭제권고함

- 13조 8항 “공인되지 않은 방법이 무엇인지 모름. 이를 분명히 해주었으면 함
- 제14조 8항 나항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반려동물사료 등의 효능 또는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규정은 문제가 있음. 실제 국내업체를 데이터 보유나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산제품은 경쟁력이 전혀 없음. 시기적으로 도입이 너무 빠름. 연구소 등이 없는 현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태건(네츄럴코어)

- 원료를 제품명 사용 시 함량비율을 25%로 할 경우 함량비율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저질의 고기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제14조 8항 나항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반려동물사료 등의 효능 또는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문제가 있다. 업계에서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이 아님. 업계 현실과 격차가 너무 큼

□ 이운택(아크)

- 소비기한이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이를 규정에 정해놓으면 업체들은 심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넣는 것 자체에 반대함
- 원료명 제품명 사용 시 함량비율을 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정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음
- g당 균주를 넣는 것에 대해 반대함. 기준시점이 애매함. 유통과정 중에 다 죽는 경우가 많음.
- 제8조 2항 단서 다만 이후의 것에 대해 복합원료에 포함된 경우라고 신설된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 업계 현실에 비해 높은 기준임
- 제10조 제4항 “신선” 표시에 대해 기준이 매우 까다로움
- 휴면그레이드는 시장에서 쓰지 않는 것이 맞음
- 제13조 6항 전자레인지 관련 규정은 실제 의미가 없는데 꼭 규정으로 넣어야 하는지 의문임

□ 문홍식(펫사료협회)

- 현재 단계에서 원료명 제품명 사용시 함량비율을 정확히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소비기한 넣은 것에 대해 반대함
- 제10조 제4항 “신선” 표시에 대해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스티커로 모두 가리고 들어오게 할 것인지는. 실제 식품에 신선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신선을 반려동물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제14조 4항에 다만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는 제외한다는 표현을 바꾸고 “해당하지 않는다” 등의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함

- 윤성은(로얄캐닌)  
 소비기한 넣는 것에 대해 반대함  
 제시한 고시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료의 용어통일이 필요함  
 8조 2항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에 대해 성분량 순으로 적으라고 표시를 해야 함
  
- 홍성수(사료협회)  
 해당 규정들이 상위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살균부분 삭제는 부당하니 재검토가 필요함

### 3. 펫푸드 표시제도 정비방안 공청회

● 공청회

일시: 2023년 10월 24일

장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

● 참석자 명단

번호	성함	직책	소속	번호	성함	직책	소속
1	김현우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17	김종민	팀장	로얄캐닌
2	박찬우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18	공득우	대리	로얄캐닌
3	노금성	주무관	농림축산식품부	19	오세은	팀장	로얄캐닌
4	신준호	주무관	농림축산식품부	20	윤성창	부사장	내추럴발란스코리아
5	송혜진	박사	한국소비자원	21	권혁찬	상무	네이처스버라이어티
6	김기현	박사	농촌진흥청	22	조중호	부장	대주산업
7	조현정	연구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3	박현규	대리	대주산업
8	김병주	주무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4	이운택	상무	아크
9	남병섭	주무관	경기도 축산정책과	25	유성민	대리	아크
10	고경민	주무관	인천시 농축산과	26	장보정	주임	아크
11	김찬	주무관	인천시 농축산과	27	심은규	주임	롯데네슬레코리아
12	문홍식	소장	펫사료연구소	28	조우재	소장	제일사료
13	채일택	팀장	동물자유연대	29	정연찬	소장	(주)에이티바이오
14	김동완	부장	대한수의사회	30	이제한	팀장	(주)에이티바이오
15	제형진	사무국장	한국펫사료협회	31	노수덕	이사	카길애그퓨리나
16	이동규	과장	한국펫사료협회	32	박다혜	대리	동원F&B

● 논의 결과

참가자	의견
<p>남병섭 주무관 (경기도 축산정책과)</p>	<p>반려동물 사료 명칭에서 제품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분 등록증 하나에 제품명이 50개가 넘는 걸 한 건으로 등록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저기에 제품명을 성분 등록을 하나를 해놓고 제품을 50개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시 사항에 제품명을 강조하기 보다는 제품명을 아예 빼고 제품명은 업체가 임의로 정하고 사료의 명칭을 표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업체의 홍보를 위해서라면 제품명을 강조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현행으로는 사료 성분 등록은 사료의 명칭을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명을 저렇게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p> <p>(조성호 변호사) 그 부분은 지난번 자문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제품명을 표기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등록성분을 하면서 제품명을 몇십 개씩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p>
<p>문홍식 소장 (펫사료연구소)</p>	<p>지금 말씀하신 제품 관련해서는 실제로 우리 자료 표시에서는 제품명을 다 표시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제품명을 표기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실 제품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p> <p>제조업체에서는 자기들 제품의 어떤 브랜드명, 상품명, 상품명을 반드시 표기하기를 원하고 근데 우리 표시 사항에서는 정작 제품명을 표시하는 거는 포함이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분 등록 하나로 해서 제품명을 여러 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사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종류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료에 따라서 좀 차등으로 이렇게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p> <p>그다음에 발표 내용 중에서 사료 분류라고 돼 있는데 3조의 의무 사항에 보면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 지금 우리 사료관리법에서 좀 혼동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료의 종류 그다음에 명칭 용도 이런 용어들이 좀 혼재돼 있기도 하고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 고시안에 담을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 6조에서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 및 급여 대상 표시 방법’은 제목이 길긴 한데 제가 볼 때는 6조를 좀 간단한 명칭으로 좀 해서 이게 결국 반려동물 사료의 종류를 말하는 거잖아요 종류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 및 급여 대상 표시 방법 어차피 이건 표시 방법에 대한 표시 사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목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p> <p>(조성호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품명 관련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가장 혼란이 안 생기게 바람직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p>

참가자	의견
남병섭 주무관 (경기도 축산정책과)	<p>혼란보다, 성분등록은 시도에서 할 민원의 성격은 아니지만, 법 체계상 시도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업무량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행정력도 공공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우리 시간을 활용해주어야 하는데, 성분등록 하나 내놓고 제품명을 계속 바꿔서 업무 처리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p>
송혜진 박사 (한국소비자원)	<p>공청회 참석 제안을 받고 자료를 살펴봤는데, 법학 전공자로 법학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다. 첫 번째로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별표 4에 2 개정 관련이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안을 보면 2항 표시방법 가에 표시사항을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오타로 보이지만 1번 표시사항으로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p> <p>두 번째로, 표시방법이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표시 기준 고시 개정안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고시랑 시행 규칙은 법적 성격이 너무 다르고 법적 강제성이 시행규칙이 훨씬 있는 건데 지금 이미 시행규칙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해 의무 표시사항까지 다 하위 규정에서 넣겠다고 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최소한도의 의무 표시사항이나 표시 방법에 대한 것은 그대로 시행 규칙에 남겨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p> <p>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원에서도 21년도에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이런 의무 표시 사항 이외에 어떤 것들이 추가로 표시되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원료 함량이라든지 원료 원산지, 반려동물 급여 방법 이런 것들이 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개정안에서는 원료 함량 표시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원료 함량 원산지라든지 또는 급여 방법에 대한 표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p> <p>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료 기준 규격에 있는 것들을 많은 부분을 빼와가지고 표시 기준 개정안에 넣으시려고 하는데 두 고시가 이 목적이 상이한데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과연 이제 법적 정합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는 것인지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들어오시면 됩니다.</p> <p>(조성호 변호사) 이 표시제도는 생산자의 입장도 있지만, 소비자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농림부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주로 소비자의 민원이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 의견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 있습니다.</p>
김찬 주무관 (인천시 농축산과)	<p>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표시사항 중에 제조업자랑 수입업자 상호명이 들어가는데 제조국가랑 수입국가가 추가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나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하는데 상호명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참가자	의견
<p>김찬 주무관 (인천시 농축산과)</p>	<p>그리고 혹시 별표 1에서 별표 3에 대한 내용이 좀 어느정도 많이 나온 게 있나요?  (조성호 변호사) 표시사항이 달라질 때마다 내용이 변경되서 별표부터 만들겠다고 계속 고치다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안 이 확정되면 이 별표까지 다 배포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p>
<p>남병섭 주무관 (경기도 축산정책과)</p>	<p>두 번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두 번째에서 제일 하단에 단순 가공 처리마져 하는 제품은 원료 제품의 포장 시점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개봉을 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처분하는 건데 그 표현은 그냥 '사료를 단순 소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의 품질 보장은 좀 불명확한 용어인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하나는 소비 기한이 나오는 거 5번 다섯 번째 보면 소비 기한 관련해서요.  (조성호 변호사) 소비기한 내용은 다 삭제했습니다. 자문회의할 때 업체분들이 소비 기한은 올해 식품에서 시작된 건데 과연 반려동물 사료에 있어서 소비 기한이 필요한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측 입장은 그래서 소비 기한 표시를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인 형태로 열어두려고 했는데 그 열어둔 것 자체가 반려동물 사료나 제조하시는 분이랑 판매하시는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자꾸 소비자 분들이 요구하면 누군가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러면 소비 기한을 써놨을 때 그럼 소비 기한이 적절한 것으로 표시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심사나 법적 불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소비 기한은 이번에 삭제를 다 했습니다.</p>
<p>채일택 팀장 (동물자유연대)</p>	<p>사료 쪽은 문외한이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일반인들이 이 법안을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완전 사료라고 돼 있는데, 용어를 제 생각에는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들이 완전 사료라고 하면 되게 완벽한 사료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오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면 좋겠다. 내용적으로 보면 '균형이 잘 잡힌 사료'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 표시들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식품 등에도 알레르기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동물들도 알레르기 문제가 있는데 알레르기 관련된 정보는 여기 넣을 수 없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소한 것들이고 한 가지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굉장히 마이너하긴 한데 '별표 4의 2에 반려동물 표시 사항'에서 아 항목에 실제중량에 보면(g, kg, 톤, ml, l)라고 되어 있는데 ml, l는 부피 단위라서 중량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수정하시거나 삭제하거나 그렇게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p>

참가자	의견
채일택 팀장 (동물자유연대)	<p>(박태균 대표) 지금 말씀하신 그 알레르기 문제는 일반 식품 표시에서는 되게 강조되고 있지만, 동물에서는 특히 반려동물에서 어떤 식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지 밝혀진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문제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p> <p>아까 말씀하신 완전사료 문제는 동감하는 부분이며, 소비자에게 완전 식품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니까 용어 교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p>
김기현 박사 (농촌진흥청)	<p>지금 이렇게 표시사항이 별도로 고시가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업체에서는 지자체에 제품 등록을 할 때는 결국엔 현재 분류 체계를 유지할 거란 말이죠. 단미 보조 배합사료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이 표시 사항에서만 제품에다가는 완전배합사료 특수목적식으로 표시하는데 결국에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아직 단미 보조 배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구분해서 갈 것인지 표시 사항만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스탠스가 중요합니다.</p> <p>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완전주식사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합 사료의 범주에 있겠지만 기타 사료의 경우에는 혼합성 단미 사료 내지는 배합사료가 혼재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이 다 별도로 적용을 받을 텐데 ‘나는 그냥 여기서는 이거 주식 사료처럼 만들어서 했어, 배합사료의 적용을 받을 거야’ 이게 불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자체나 정부나 업자들 사이에서는 명확한데 소비자들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표시 사항의 개정이 소비자에게 그보다 나은 정보를 알 권리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분류 체계에 있는 사항도 표시가 돼야 된다. 단미 혼합 보조를 병행해서 쓰지 않으면 그 혼선은 결국엔 소비자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고요.</p> <p>지금 이거는 또 심도 깊게 만약에 진짜로 고시가 만들어진다면 조금 디테일하게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특수목적영양 사료에 보면 지금 여기서 내리는 정의가 동물과 생물적으로 특별한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질병 여기는 유럽의 PARNUTs을 지금 벤치마킹해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인데, 용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절 질환이 있는 동물에게 글루코스를 먹어야 돼. 예를 들어서 칼슘결핍성 골다골증이 있으면 칼슘을 먹어야 돼. 그런 것들이 특수목적사료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지금의 안이 혹시나 적용된다면 현재 EU Regulation에서 제공하고 있는 PARNUTs 이외에는 어떤 사료도 여기 포함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본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심도 깊게 고민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p> <p>(조성호 변호사) 단미사료 배합사료 표시를 같이 사용할지는 생각이 더 필요한 문제이고, 특수목적사료에 대해서 현재 EU 규정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따르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료를 전부 배제할지는 시장조사가</p>



참가자	의견
(조성호 변호사)	<p>더 필요합니다. 특수목적영양사료라고 불리는 처방식 사료의 경우에 모든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가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고 시장이 명확히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업체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이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 PARNTUTs 기준 외에 다른 분류 체계로 들어올 업체가 있다거나 그 외에 따로 실질적으로 쓰이는 처방식사료 등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사료라고 쓰이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포함할지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남병섭 주무관 (경기도 축산정책과)	<p>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국민신문고에 따른 민원 처리가 또 업무의 한 3분의 1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인터넷 홍보는 통신판매업으로 할 수 있지만, 제품에 대한 과대 광고는 저희가 직접 처분을 해야 되요. 그런데 거기에서조차도 제품 포장지에 과대 광고하는 업체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특수목적사료를 놓고 보면 사실 제일 우려스러운 게 과대 광고의 끝판왕은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업체들이 경구 투여, 경관 투여까지 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된 사료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처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약인 것처럼 이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그냥 100%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드실 때 플러스 알파로 이 정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과대 광고 보고 이 정도 이하는 과대 광고가 아니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같이 만들어주시는 게 현장에서 이런 법을 운영했을 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고경민 주무관 (인천시 농축산과)	<p>저번 줌 회의 때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p> <p>(조성호 변호사) 작년에 제가 연구용역했던 부분이 사료관리법과 별개로 반려동물 사료관리법이라는 법을 새로 만들어보려고 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료 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조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하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너무 반려동물 사료 표시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법에 맞는지 혼자 판단하기도 어렵고 객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희 연구용역이 끝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표시 부분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반려동물 사료나 반려동물 전체에 대한 TF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료관리법에서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한번도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각자 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기에는 혼란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차츰 형태를 갖추어서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활용하시도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p>



참가자	의견
고경민 주무관 (인천시 농축산과)	(고경민 주무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원 사항의 절반 이상이 표시 사항이고 표시 사항 중에 대다수가 과대 과장 광고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요. 이런 농식품부 단위나 광역 지자체, 전체 지자체 단위로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저희 지자체 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좀 부담이 덜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균 대표 (푸드앤메드) • 남병섭 주무관 (경기도 축산정책과)	<p>지금 광고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실제로 이제 소비자가 직접 보는 거는 광고 쪽 많이 보시니까 과대 광고 또 허위 광고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 이번 우리 제도는 표시입니다. 표시 광고법이 같이 있기 때문에 표시하고 광고는 일반적으로 같이 가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두 개가 같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표시를 이번에 다루고 나중에 또 광고 문제는 또 따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p> <p>(남병섭 주무관) 근데 표시가 먼저 정해져야 그걸 근거로 삼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정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p> <p>(박태균 대표) 사실은 이제 기준 규격이 먼저 정해져야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는데 그런 기준 규격 등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준비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먼저 표시 관련 사항을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좀 선후가 좀 바뀐 그런 측면도 약간은 있어 보입니다.</p> <p>(남병섭 주무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8조에 보면 수정하신 부분에 ‘반려동물의 건강 기능 등 효과가 있다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명칭, 해당 원료의 함량,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능성이 있는 물질을 첨가했을 때는 그 효능을 이 업체에서는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아니면 어필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죠.</p> <p>근데 사실인 내용과 진실인 내용은 늘 달라요. 아까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25%를 넣지도 않았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첨가되긴 했지만 그 효과가 발현 되려면 최소 25% 이상 정도는 되는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늘 이렇게 광고하시는 표시하는 분들의 속내를 보면 사실만 얘기를 하시지 진실은 얘기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유추를 해보자면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를 원료 함량만 표시하면은 거기서 끝인 거예요. 이게 되게 이 사람들을 고해야할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좀 첨부해라. 표시할 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아까 뒤에 보니까 ‘사료 영양학적 측면에서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된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표시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단, 근거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p>

참가자	의견
<p>박태균 대표 (푸드앤메드)</p> <p>•</p> <p>남병섭 주무관 (경기도 축산정책과)</p>	<p>(박태균 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이제 극소량을 넣어놓고 마치 글루코사민 가지고 굉장히 관절에 좋다 하는 기능성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이제 소량은 실제 양은 굉장히 작은데 그냥 일단 표시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맨 mg 들어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그 mg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10mg이 썼다고 하더라도 10mg이 정말 자기 펫에 대한 어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용량인지 아니면 안 되는 용량인지 그게 어려운데요.</p> <p>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기능성 문제를 표시하는 데 가장 큰 애로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 근거 자료라는 게 사람도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근거 자료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하물며 펫에게 먹여보고 실험해보고 실제로 관절에 이상이 있는 펫들만 모아 가지고 글루코사민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입증하는 실험이 불가능해서 실험 자체의 건수 모수 자체가 적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내라고 규정해도 굉장히 그게 제한적으로밖에 제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은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되게 고민일 거고 허위 과대 광고라 표시에 상당 부분이 기능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p> <p>(남병섭 주무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어차피 개정을 하실 때 이거를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실무로 업무 보는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힘들 것입니다. 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들은 여기 자리에 안 계신 소비자들 피해는 또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관계되는 민원 발생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p> <p>(박태균 대표) 소비자는 기능성 표시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구매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이냐 하는 거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펫 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본다면 아예 기능성을 전부 못하게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p> <p>(남병섭 주무관) 관련 논문까지 첨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이 왜 건강기능식품인지 출처만이라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뉘를 근거로 해서 이게 기능이 있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사료가 지금 건강 기능 효과가 있다는 원료로 사용을 했다. 이런 거는 이 제품 밑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면 소비자들이 좀 보고 이 원료를 넣었는데 이 정도 효과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원료만 첨가하고 표시만 이렇게 해놓으면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또 포장지 앞면과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이제 그거는 암 치료제가 되어 있어요. 암 치료제가 돼 있어요. 그런 제품들 제가 국민신문고가 들어와서 본 것 중에 7개의 암을 치료하는 사료를 봤어요.</p>

참가자	의견
<p>최영순 박사 (울산대학 산학협력단)</p>	<p>울산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반려동물 R&amp;D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경기도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했는데요. 그 기능성 문제는 당연히 효과가 검증이 돼야죠. 우리가 등록 당시에는 미국이나 EU 같은 데는 미국은 AAFCO고 이후에는 식품안전처에서 레퍼런스를 다 시험해요. 등록할 때 레퍼런스의 과학적인 실험 결과를 다 같이 제출해야 그 용어와 기능성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료의 등록보다는 제품 명칭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EU에서도 당연히 제품 명칭부터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좀 더 발전된 제도를 운영하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품 등록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p> <p>그런데 EU나 미국에서는 전문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전부 다 심사해서 등록합니다. 특히 펫푸드는 전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표시 제도만 하니까 현 제도에서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개선되고 이게 완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p> <p>그래서 좀 더 이 문제를 사료관리법에 둘 것이냐 반려동물 관련 특별법을 다시 제정해서 할 것이냐 그것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용어도 반려동물을 어느 범위로 포함할 것이냐, 용어도 사료로 쓸 것이냐, 먹이로 쓸 것이냐 이런 복잡한 토론 과제가 남아 있거든요.</p> <p>그래서 특히 저는 우려하는 게 유해물질 관계가 있거든요. 소위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셋업이 안 된 상태에서 표시제만 먼저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식품 표시제를 글로벌 식품 공시제는 캐나다에서 운영합니다.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지금 제도가 제일 파이널로 가는 게 표시제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법적 정리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해물질 범위 이런 것이 아직 효력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p>
<p>정연찬 소장 (주)에이티바이오</p>	<p>저는 자문회의 때와 연관된 얘기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14조 허위 과장 광고 8항에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임상시험은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는 반려동물 대상으로 전문 연구센터가 돕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미국이나 유럽에는 전문 연구센터가 있어도 자체적으로 연구가 가능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라든가 입증 자료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제안을 하나 드렸었습니다.</p> <p>지금 현재 식품이나 이런 쪽도 아까 휴먼 그레이트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식품 원료 등을 사용했을 때 SCI 논문을 사용해서 국내 제품이 이에 대해 홍보를 하든지 특수목적사료 등으로 기능성 표시를 사용하든지 하도록 만들어주면 국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입해서 이런 정보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들이 들어왔을 때 국내에서는 대응을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CI 같은 논문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p>

참가자	의견
정연찬 소장 (주)에이티브이오	<p>(조성호 변호사)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 기능이나 어느 효과가 있는지가 지금 반려동물 사료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기능성 자료에 대한 검증이나 책임, 입증 방법에 대한 기준 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식품에는 실증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검토하면서 식품 관련된 규정을 봤는데 반려동물의 실증 규정 식품을 갖다가 따올 수가 없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식품부와 논의를 해서 지금 계속 조율 중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디까지 넣을 것이냐 근데 저희가 욕심을 많이 내기 시작하면 해보니까 너무 이상적인 법이 돼버리면 못 지키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입장이 극도로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p> <p>이 표시 제도 관련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미 문제가 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약 카드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시 제도 갖다 놓고 하나씩 따지고 들면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우리가 욕심 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이나 실증 검증과 같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어떨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조현정 연구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p>완전사료, 특수목적영양사료 관련해서 연구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살펴보니 조금 많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완전사료라고 하면 완전히 퍼펙트한 사료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표시 제도와 마련되서 고시가 되면 기존에 있는 법 체계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p> <p>우선 어떤 부분이냐면 유해물질 범위 및 허용 기준에 보면 여기서 지금 반려동물 사료를 그렇게 3개로 분류 체계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유해물질 범위를 허용 기준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느 사료를 적용할 건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이 안전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서는 용어가 배합 사료의 애완동물용 사료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기타 배합사료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유해물질에 있는 기준은 배합 사료에 애완동물사료로 다 표시되는데 지금 사료 관련 사료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 업무를 바탕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그 부분도 조금 명확해져야 이 표시 제도를 고시했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요.</p> <p>그리고 이제 저희 부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사료 산업을 이렇게 육성하려고 하면 해외에 있는 안전 기준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표시 제도가 바뀌면 기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돼야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p>

참가자	의견
(조성호 변호사)	<p>(조성호 변호사) 저희 연구용역 처음 할 때부터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분류 체계를 갖고 갈 것인지를 고민했는데, 이 안에서 움직이면 지금 별표 15보다 더 복잡해집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주식, 간식, 특수목적사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배합, 단미, 보조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너무 세분화되면 표시 제도가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시제도는 포장지의 표시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것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혼란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p>
문홍식 소장 (팻사료연구소)	<p>위 질문과 연계하자면, 지금 배합사료나 단미사료는 원료 개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단미사료 등 최종 분류 체계에서 유해물질 범위가 적용되는데, EU같은 경우에는 잔류 농약 관계가 3천 800조 개가 있어요. 그래서 완제품에서 만일 유해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따지면 원료 사용 단계부터 그 기준을 지켜야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EU하고 위법상 법률 적용하는 데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원료 단계부터 지켜야 완전 제품에서 유해물질 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p>
김기현 박사 (농촌진흥청)	<p>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성 관련된 것들이 전혀 논의되고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고시 표시 기준부터 해서 분법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예를 들어서 휴먼 그레이트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휴먼 그레이트면 식품에 준하는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식품 원료를 쓸 거고 지금 식품은 농약 같은 경우에 PLS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료 관리법은 지금 네거티브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PLS는 지금 사료관리법에서 이렇게 목록화돼 있는 117종의 농약 이외의 농약 검출들도 사실 관계없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식품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떤 농약이라도 검출되면 0.01ppm 이상 검출되면 전부 다 아웃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휴먼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다. 그러면 같은 사료임에도 실제 동물한테 문제가 되느냐 동물한테 유해하냐 안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주 속된 말로 공무원들끼리 그냥 앞뒤 맞춰서 짱구 맞춘 수치로만 그냥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p> <p>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농약의 기준이 설정된 것도 사실은 사람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그 농약은 실질적으로 양축용이 먹는 가축이 먹는 사료에 농약이 얼마만큼 있을 때 축산물, 소고기, 우유 알에 얼마만큼 잔류되고 그 잔류된 사료 식품을 사람이 먹었을 때 안전하지 않나라는 기준을 설정된 근거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건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치들이에요.</p> <p>그리고 다시 얘기가 일로 가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특수목적역량사료 부분에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를 지금 준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맹점은 미국 AAFCO나 유럽 FEDIAF는 실질적으로 민간 기관입니다. 협회고 물론 정부에서 그 협회의 신뢰도나 정확도나</p>



참가자	의견
<p>김기현 박사 (농촌진흥청)</p>	<p>어떤 그런 학술적인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시에다가 반려동물 특수목적사료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업체에서는 여기 우리가 고시에서 정한 대로 PARNUTs가 됐든 뭐가 됐든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소비자가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업체의 성분 검사 원료 검사 다 했더니 고시 기준에 적합하다. 그 책임 전부 다 정부로 넘어올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p> <p>근데 그거에 대한 그런 별도의 명시 예를 들어서 이걸 치료 목적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써놨지만 질병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고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면 좋은데 고시에 그런 말을 쓰는 건 굉장히 또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좀 나중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p>
<p>이운택 소장 (주)아크</p>	<p>저희 지금 현실적인 문제부터 조금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품명을 보면, 지금 의무 표시사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제품명의 정의를 보면 고유의 브랜드 고유의 명칭이라고 돼 있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명이라는 게 대약비가 공적인 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료관리법상 보면 10% 이내에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현재 사료 등록 신청을 받고 있는 관계 관청에서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워낙 양이 일의 양이 많아서. 어떤 제품명별로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료관리법상에서는 사례 명칭이 공식적인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제품명별로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p> <p>그다음에 두 번째로 레토르트 사료라는 부분을 삭제하시더라고요. 근데 레토르트 사료는 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습식으로 나온 캔이나 추르 같은 형식도 다 레토르트 용이예요. 레토르트 형태는 14일 동안 세균 발육 시험을 하게 되는 특수 형태예요. 근데 그게 빠지고 냉동 사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레토르트는 다른 부분이라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p> <p>그다음에 이제 허위 과장 광고 부분인데 ‘효능 및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증상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또 건강기능성 식품은 허용될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목적으로 봤을 때 상충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려동물의 특수목적식 사례에는 질환명을 표기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식품이나 아무 데도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법인의 다른 단체 약사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항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이상입니다.</p>
<p>김동완 부장 (대한수의사회)</p>	<p>아까 저기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사료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AAFCO나 유럽에서 특수목적식 사료 지금 흔히들은 처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분류한 이유부터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질환이 있어서 심</p>

참가자	의견
<p>김동완 부장 (대한수의사회)</p>	<p>장이나 간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어서 이러한 동물들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처방식인데 그 처방식을 주려면 수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사의 진단을 받고서 먹여라라고 해서 그러려면 이제 표시를 해야 되고 이걸 처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수의사의 진단 후에 처방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특수목적식 사료를 구분하는 이유가 질환에 따른 관리 목적이라든가 치료 목적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더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적절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판매 장소라든가 아니면 약사법에 의해서 어떠한 약들이 유통되는 것처럼 이러한 특수 목적 같은 경우는 진단 후에 유통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별도의 유권 해석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 약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는 써 있는데 저게 사료는 아니지만 특수목적식에 대한 법률적 지위가 어디 정도에 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p> <p>한 사례를 들어보면은 비슷한 동물성 단백질인데 거기에 약사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약을 넣은 게 심장 사상충약인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예전에 없었을 때 그냥 이렇게 유통이 됐었거든요. 근데 약사법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 심장 사상충 약이 동물 약으로 이렇게 되면서 유통이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제안하실 때 좀 넣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p> <p>(조성호 변호사) 이 부분은 지금 의사의 권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이제 현재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FEDIAF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처방을 요구하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한수의사회 측하고 또 논의를 해서 조금 더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p> <p>(김동완 부장) 미국과 유럽에서 클레임을 넣을 때 ‘Veterinarian Only/Exclusive (수의사만 처방 가능)’라는 문구를 넣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문구를 넣었을 때 이러한 영양학적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박태균 대표 (푸드앤메드)</p>	<p>제가 식품 표시도 연구를 좀 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펫사료를 이후로 살펴보면 표시 사항이 식품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참 어렵고 굉장히 식품은 오히려 더 단순하고 식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펫은 완전히 다르고 모범 자체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 지금 모범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사료관리법을 중심으로 해서 사료 표시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준 규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걸 규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표시 규정이라는 건</p>

참가자	의견
박태균 대표 (푸드앤메드)	<p>굉장히 아주 엄격한 하나의 규제거든요. 굉장히 큰 규제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 아마 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또 너무 규제가 느슨하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요즘 또 특히 췌오너들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을 왜 만들었냐는 식으로 분명히 반발할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 중간점을 늘 생각하고 변호사님하고 저희하고는 아직 기준 규격도 없고 개별 법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업계도 수궁하고 소비자도 이 정도면 됐다는 수준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의견도 여기 지금 조금 이따가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업계분들도 의견을 활발하게 내주시면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p>그리고 또 우리 실제로 지자체에서 직접 검사하고 그래서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의 입장도 같이 얼마든지 이렇게 같이 녹여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까 보니까 위생 부분, 안전 부분 이런 것까지 전부 아주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딱 포커스를 맞춰서 표시 부분 관련 내용을 위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p>
제형진 국장 (한국췌사료협회)	<p>아까 조 변호사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표시사항별 표시 사항 및 활자 크기 관련해서 췌사료협회 의견을 구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테이블에 있는 백산수 생수를 보시면요, 잘 안 보이는 글자 크기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를 제정할 때 포장 그러니까 조그만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리가 있었고, 이슈도 있었습니다. 표시하기 어려운 사이즈의 제품은 QR 코드나 이런 걸로 세부정보를 알 수 있도록 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p> <p>(조성호 변호사) QR의 유무는 다른 문제고, 결국 인쇄하고 제작할 때 활자크기가 큰 영향을 미칠텐데 얼마로 해야 하는지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제형진 국장) 예를 들어 꺾을 얘기하면, 꺾은 글씨 자체가 붙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볼 수 없을 정도의 표시사항을 적어놨어요. 그것도 당시에 이슈가 됐었지만,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p> <p>(조성호 변호사) 그리고 또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된 내용에 관련된 것이고, 이제 저희가 이 연구 용역을 하면서 많은 업체들 만나 분들과 이게 한 번 바뀌면 동판이 바뀌고 기존의 포장지 찍어놓은 게 이제 문제가 된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엔 한 고시제 한 1년 정도 유예를 주면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데 1년으로는 턱 없다 얘기도 있으셔가지고, 2년 정도 말씀하시는데 고시 유예 기간으로는 너무 길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p>



참가자	의견
<p>제형진 국장 (한국펫사료협회)</p>	<p>그다음에 동판 비용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농식품부가 최종으로 할 때 이제 고지라는 게 지금도 사료 기준 및 규격이 10월 달에 바뀌었다라고요. 근데 우리 별표 15쪽은 안 바뀌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게 되면 다른 검사할 때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동판 찍는 부분은 글자 하나만 바뀌어도 넣어야 될 게 생기고 동판 비용이 새로 드니까 이 부분은 업체분들이 이제 불편하시거나 나중에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은 어려울 것 같지만, 조금 더 많은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p> <p>(이은택 소장) 기존 동판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적응 기간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예기간을 길게 두지 못할 것 같으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신고한 포장재에 대해서는 표준화 때까지 옛날 동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치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남병섭 주무관 (경기도 축산정책과)</p>	<p>또 하나 아까 수의사회에서 나오신 분들 말씀하신 거에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특수목적식 영양 사료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처방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용어상 보면 이견 약품이 아니고 사료입니다. 의약품은 만드는 게 아니고 수술을 했다가 회복하는 애들이 일시적으로 먹는 사료인데 그럼 그 사료를 처방받으려고 마트가 아니라 동물병원에 가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뒷면에 보면 표시 사항에 특수목적식 사료에 대해서는 한해서는 ‘이 사료는 ○○○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조되었다’라고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목적식 사료가 A 사료, B 사료, C 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수술 후에 회복하는 데 좋은 사료를 배합하고 만들 때 그 관련된 그 전문가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수의사가 이 사료는 이 질환이 있는 그 반려동물에 회복할 때 먹이면 좋다더라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면 살 때 꼭 동물병원에서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p> <p>(조성호 변호사) 특수목적식 사료가 원래 동물병원에서 의사의 처방받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 수준으로 할 계획이고, 제도가 정해지면 수의사회와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p>
<p>윤성창 부사장 (내추럴밸런스 코리아)</p>	<p>저는 현재 미국 브랜드를 수입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 표시사항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들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외국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좀 표시하게끔 돼 있는데 한국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좀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간략하게 선진국의 그런 상황을 좀 보고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p>

참가자	의견
윤성창 부사장 (내추럴밸런스 코리아)	한국이 아직 그런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좀 바뀌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부분이거든요. 100%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표시 사항과 그다음에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차 후에 잘 보완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홍식 소장 (팻사료연구소)	<p>표시 제도가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건데 수출도 지금 수입만 얘기하는 게 수출이 더 이상이 수출에도 영향을 가니까 수출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p> <p>팻사료에 관해서 지금 동물 사료관리법을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특별법 또는 개별법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법을 사례관리법에서 분리해서 갈 것이냐 하는 방향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p> <p>그리고 특히 수출을 고려한다면 GMP 표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아까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했는데 사실 이게 들어오는 검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전문성 문제예요. 그러면 수입 사료 검증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뒤편에 뒀어 야 되거나 이런 사례처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 부탁드립니다.</p>
심은규 대리 (롯데네슬레코리아)	<p>표시 사항 활자 크기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대부분 사료들이 다 배합 사료가 사용하고 있는 원료 개수가 좀 많습니다. 적게는 10개 미만에서 많게는 340개까지도 되는데 그러니까 12포인트는 좀 많이 큰 감이 있어서 저희처럼 소비 대상을 하는 식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일괄 적용이 되는 활자 크기가 많아서 이것도 10포인트 수준이나 아니면 다른 것처럼 8 정도 수준으로 조금 낮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p> <p>그리고 문의 사항이 하나 또 있어서 드리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기준에 별표 15번에 사료의 기타 표시 사항에 있어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 반려동물 사료 표시 고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랑 공통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부분은 식품의 표시 기준을 더 이상 준용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p> <p>(조성호 변호사)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별표 15가 더 이상 반려동물 사료에 표시로서 적용되지 않고 제가 만든 혹은 나중에 나온 고시에 따라서 변형된다는 의미지 식품법에 있는 내용이 모두 다 제외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있는 별표 15안에서 식품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표시된 부분 저희가 따올 수 있는 건 다 따왔어요.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은 제외했습니다.</p>

## ※ 업체 의견

### 1. 동원 F&B

고시 내용	의견
<p>제2조 (용어의 정의)</p> <p>2.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가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사료는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소분 판매하는 사료는 소분용 원 사료의 제조연월일로, 원 사료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사료는 원 사료의 포장시점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사료는 포장시점 표기와 원제품의 제조일자 병행 표기 제안</li> </ul>
<p>제3조 (의무 표시사항)</p> <p>1. 제품명 : 제5조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인 사료의 명칭 대신 제품명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품명을 사료성분등록 시 명칭 대신 진행해야 되는지 의문임</li> <li>- 사료 성분등록증 제품명으로 발급받을 경우 제품 1개당 성분등록 1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인식</li> <li>- 따라서 사료성분등록증 내 제품명이 기입되는지, 표시사항에만 제품명이 들어가는지 확인이 필요함</li> </ul>
<p>제3조(의무 표시사항)</p> <p>4. 급여대상 : 반려동물사료를 급여하는 동물의 종류+생애 단계로 표시한다. 단 생애 단계는 불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표시 예: 개와 고양이용, 반려견, 반려묘용, 3개월 이상 자견용, 3개월 이상 자묘용, 1세 이상 성견용, 1세 이상 성묘용, 반려동물용, 전연령견용, 전연령묘용, 7세 이상 반려견용, 7세 이상 반려묘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과 마찬가지로 사료성분등록증에 표기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정의 및 기준 필요</li> <li>- 급여 대상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면 용어 및 연령 통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li> <li>- 현재 표시 예 중 성묘용, 반려묘용 용어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반려동물용은 너무 광범위해짐</li> </ul>
<p>제3조 (의무 표시사항)</p> <p>9.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 : 제조된 날짜를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유통기한 표시 및 제조일은 그로부터 0년 전 제조로 표기 중</li> <li>(기존 제조연월일 표기에서 유통기한으로 변경되었던 내용이며 왜 다시 바꾸는지 의문)</li> <li>-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 선택 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안</li> </ul>

고시 내용	의견
<p>제5조 (제품명 표시방법)</p> <p>1. 제품명(또는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 일부에 성분명 또는 원료명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p> <p>2. 위 원료의 함량 비율(%)의 표시는 배합기준, 건물기준 또는 수분 환원 함량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함께 표시 해야 한다. 수분환원 함량 계산법은 <u>(검토중)</u>과 같다. [예시: 연어 (배합기준 22%, 황태분말(건물기준 1.5%)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 중 원료 포함 시 해당 원료의 % 함량 표시 기준 중 정제수 포함한 배합비 기준으로 통일하는 게 소비자의 혼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li> <li>- 추가적으로 건물(DM) 기준을 작성하고 싶은 경우에 겸용 기입으로 가는 것이 혼동이 덜 할 것 같음</li> <li>- 해외의 수입사료 기준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함</li> </ul>
<p>제6조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및 급여대상 표시방법)</p> <p>1. 반려동물완전사료</p> <p>가. “반려동물완전사료”란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반려동물사료를 의미한다.</p> <p>나. “반려동물완전사료”라고 표시한다.</p> <p>다. 반려동물완전사료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사료영양학적으로 검증되거나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예시 : 미국사료관리자협회(AAFCO; Association of America Feeding Control Officials) 또는 유럽반려동물사료협회(FEDIAF; European Pet Food Industry)의 영양가이드라인] 해당 기준을 표시하여야 한다.</p> <p>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1]과 같다.</p> <p>3. 기타 반려동물사료</p> <p>가. “기타 반려동물사료”란 반려동물사료중 1호와 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료를 의미한다.</p> <p>나. “기타 반려동물사료”라고 표시한다.</p> <p>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건사료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AAFCO 및 FEDIAF 기준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며 그 설계치를 어떻게 확인 또는 검증이 가능할지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li> <li>- 사료 성분등록증 미표기 사항으로 유형 구분에 따른 표기 시 증빙 및 검증 방법이 필요</li> <li>- 간식 및 영양제 등에 해당하는 사료인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며 세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음</li> </ul>
<p>제8조 (원료의 표시방법)</p> <p>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한 원료의 명칭에 들어갈 내용이 많으며 주 표시면 면적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음</li> <li>- 사용원료의 표기방법/식품에서도 표시하지 않는 첨가물에 대한 명칭과 원소 및 화합물의 화학 명칭 표기 삭제 제안</li> </ul>

고시 내용	의견
<p>제10조 (강조표시 기준)</p> <p>4. “휴먼그레이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또는 이와 유사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관련법상 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관련법상 식품 판매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li> <li>- 식품관련법상 식품 판매 기준이라면 설비 또한 식품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함</li> </ul>
<p>제10조 (강조표시 기준)</p> <p>5. 열량 관련하여 “덜”, “light”, “lite” 또는 “저칼로리” 용어 사용</p> <p>6. 지방관련 “저지방”, “지방 함량을 줄인”, “less”, “reduced” 용어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성분 강조 표시의 세부기준이 지방/열량에 대한 기준만 있어, 단백질 등 강조표시에 제한이 생겨</li> <li>기존 법령 또는 등록성분량에 한하여 영양성분 강조 표시 세부 기준 필요함.</li> </ul>

## 2. 하림펫푸드

반려동물 표시사항 개정에 대한 의견
<div data-bbox="225 1182 1109 1435"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제10조(강조표시 기준)</p> <p style="color: red;">4. “휴먼그레이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또는 이와 유사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관련법상 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p> </div> <p>사료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충돌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료 제조와 관련하여, 사료관리법이 식품위생법보다 더 엄격하게 명시된 부분이 있어 식품위생법을 따를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치명적인 균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살모넬라균           <p>사료는 살모넬라균이 절대 검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료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살모넬라균은 불검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은 사료관리법 보다 살모넬라 균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어 있습니다.</p> </li> </ol> </li> </ol>

반려동물 표시사항 개정에 대한 의견

아래 식품공전 제2조 3항에 따르면, 가열조리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25g까지 음성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식품위생법 식품공전 제2조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2) 식중독균>

가. 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염비브리오 등 식육 제조, 가공용원료는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의 경우 음성( 25 g).

3. 관리대상 주요 기타 성분

유해물질명	사료의 종류		허용기준
플레고시톡	단백사료	연철박, 혼합성 단백질사료	1,200 (µg/kg)
황산	단백사료	피코오바, 혼합성 단백질사료	50 ppm
살모넬라	배양사료	난, 오리, 계수레, 칠면조 농분, 앵무새 농분, 사육과는 농분	음성

<사료관리법 제 1111조 11항 관련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살모넬라 [별표 16]>

2. 사료는 현재 사료관리법에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사료공장으로 허가된 곳에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이 생기게 되면 식품위생법의 기준만을 충족한 식품공장에서 사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반려동물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재료 양파, 마늘 등에 그대로 노출되고, 재료를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교차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반려동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참고]

- 사료관리법 제8조 1, 2항에 따르면 사료는 사료관리법 의거 사료로 제조 허가 난 곳에서만 제조되어야 합니다. 제8조 1, 2항

-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식품 위생법의 식품공전 제5조 17-9조에 따르면, 포장육을 어떠한 공정 없이 그대로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관리법 제55조에 따르면 생고기 나 원재료는 사료 공정을 거친 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사료 공정 없이 원재료 생고기 과일 등 들이 그대로 사료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이 때문에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표시사항 개정에 대한 의견

[참고]

<사료관리법 제 55조 바>

바. 식품 등은 배합사료 및 혼합성단미사료, 혼합성보조사료, 각종 합제류 등의 사료를 제조하는데 성분등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9조 제3항 참고). 다만, 개별 단미·보조사료로 제조 또는 수입 후 판매 및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료공정 설정 후 성분등록을 하여야 함

\* (예시 1) 사과를 배합사료 등을 제조하는데 성분 등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과 자체를 사료로 판매·공급하기 위해서는 사료 공정을 설정 후 성분 등록하여야 함

\* (예시 2) 까나리로 어분을 제조하는데 성분 등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까나리 자체를 사료로 판매·공급하기 위해서는 사료 공정 설정 후 성분 등록하여야 함

<식품 공전 제 5조 17-9>

1) 정의

**17-9 포장육(육산물)**

1) 정의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100%).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색상 :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터·이취가 없어야 한다.

(2)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 휘발성염기질소(mg%) : 20 이하

(4) 보존료(g/kg)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5) 장출혈성 대장균 :  $n=5, c=0, m=0/25$  g(다만, 분쇄에 한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 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100%).

위의 기준은 펫 선진국의 관리 기준과 역행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변경된다면 국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내 펫푸드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 제8조(원료의 표시방법)

5. 어분, 육분, 육골분, 가공부산물건조분 등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 명칭에 "OO고기"라고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사용한 원료 중 사료공정서의 명칭으로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는 다음 원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이외 원료의 경우 알요만에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원료명으로 명기할 수 있다.

가금(단일) 또는 육분(가금) 또는 육골분(가금) 또는 육분(가금) 또는 육골분(가금)	가금(단일) 또는 육분(가금) 또는 육골분(가금) 표시 가능. 예: 닭, 오리, 양지
육분	고기(단일) 등을 원료로 할 경우 동물명 표시 가능. 예: 소, 돼지(돼지) 분말
육골분	고기(단일) 등을 원료로 할 경우 동물명 표시 가능. 예: 소, 돼지(돼지) 분말
어분	생선(단일) 생선일 경우 어종명 표시 가능. 예: 참치(참치) 분말
계도	달걀
유지(돼지기름)	돼지기름
유지(소기름)	소기름
달걀(달걀)	달걀
어유(어유기름)	생선기름

사료공정서의 명칭	표기명칭
가금(단일) 또는 육분(가금) 또는 육골분(가금) 또는 육분(가금) 또는 육골분(가금)	가금(단일 또는 육분) 또는 육골분(가금) 또는 육분(가금) 또는 육골분(가금)
수지(단일) 또는 육분(가금) 또는 육골분(가금) 또는 육분(가금) 또는 육골분(가금)	고기(단일 또는 육분) 또는 육골분(가금) 또는 육분(가금) 또는 육골분(가금)
어분(어유) 또는 육분(가금) 또는 육골분(가금) 또는 육분(가금) 또는 육골분(가금)	생선(단일 또는 육분) 또는 육골분(가금) 또는 육분(가금) 또는 육골분(가금)

- 9 -

1. 펫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료와 기준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려가족들은 이미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펫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향상된 수준에 맞추어 원재료명을 더 세분화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인지 수준을 무시하는 위의 조항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각 원료의 표기 방법의 기준 및 정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미국사료협회(AAFCO)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육분은 meat meal, 고기 분말은 meat powder로 명시합니다.

[참고] 미국사료협회 AAFCO 생고기 와 육분의 정의

2. 위와 같은 표시방법으로 선진국 펫 시장에 진입 불가하며 국내산 펫푸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 한국에서 육분을 고기 파우더로 명시하게 되면 펫 선진국인 미국 등으로는 수출이 불가합니다. 원재료명에 혼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육분 은 meat meal meal이기 때문입니다.

Meat power power는 고기 분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그들의 세분화된 기준법에 따라 다시 육분으로 정확히 명시하는 수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일 제품인 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파는 제품은 '고기 파우더', 미국 시장에서 파는 제품은 육분이라고 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국내산 펫푸드의 신뢰성을 잃게 만들고 또한 이를 알게되는 한국 소비자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표시방법으로 하급의 수입사료가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사료로 둔갑될 수 있고 국내 반려동물의 안전과 소비자를 우롱하게 되어 국내 펫푸드 시장에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 반려동물 표시사항 개정에 대한 의견

- 하급의 육분으로 다량 제조된 수입제품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고기분말”이라고 표기된다면 소비자들은 이를 좋은 사료로 오인하게 되고 동시에 반려동물의 영양을 보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하급의 수입 사료가 소비자를 쉽게 속일 수 있고, 정직한 국내 펫푸드는 점점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은 하급의 수입사료가 소비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A사 수입사료의 경우 일본에서는 합성보존료를 명시하고 한국에서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해당 이슈로 과거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사료관리법이 더욱 선진국에 따라 간소한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미국사료협회 AAFCO AAFCO 생고기와 육분의 정의

<https://www.aafco.org/consumers/understanding--petpet--food/whatsfood/whats--inin--thethe--ingredient-singredients--list/list/>



# 반려동물 표시사항 개정에 대한 의견

## (랜더링(육분) 원료의 정의)

The screenshot shows the AAFCO website with a search bar and navigation menu.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랜더링 원료" (Rendering Ingredients). It explains that rendering is the process of separating fat from meat and bone. The text is divided into sections: "랜더링 원료" (Rendering Ingredients), "동물부산물" (Animal By-products), "가공부산물" (Processed By-products), and "가공물" (Processed Materials). Each section lists specific ingredients and their requirements for inclusion in pet food formulas.

**랜더링 원료**  
 동물용 사료 제조 공정상 고기 부산물(지방, 뼈, 피, 털, 깃털, 분, 가죽 다듬기, 거름, 피 및 반추위 내용물)을 제거하여 고기 부산물을 소각하여 만들어낸 것을 가열하여 규정되지 않은 지방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 함량은 건의 무게 함량보다 2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 건조함량 선택물이 12% 이상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세를 내 소단백질의 9% 이하가 평균 건조함량이어야 합니다. 지방에는 최소 조단백질, 최소 소지분, 최대 조지방, 최소 인(P), 최소 및 최대 칼슘(Ca)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에 중금속, 구상 또는 원산지를 설명하는 이름이 있는 경우 해당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육류 및 '고기 부산물'과 달리 성분은 추가 설명 없이도, 돼지, 양 또는 염소 이외의 동물에서 유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는 적절한 경우 동물 기원할 수 있습니다(예: 소, 돼지, 양 또는 염소 등 '고기 부산물').

**고기 및 동물(Ante and Post Mortem)** 제품 포함하여 동물용 소각에서 항이탈된 제품으로, 추가된 지방, 피, 털, 깃털, 분, 가죽 다듬기, 거름, 피 및 반추위 내용물을 제외합니다. 단, 우수 가공 관행에서 분기되려서 발생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합니다. 이 성분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분 정의는 이 섹션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개별 항이탈된 동물 조직을 포함하지 위한 것입니다. 이 성분은 동물 조직 제품의 균질성을 타당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전체 조지방 규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육종과 육공장에서 발견되는 양을 초과하는 부산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동물부산물**  
 (Ante and Post Mortem) 추가된 지방, 피, 털, 깃털, 분, 가죽 다듬기, 거름, 피 및 반추위 내용물을 제외하는 동물 조직에서 항이탈된 제품. 단, 우수 가공 관행에서 분기되려서 발생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합니다. 이 성분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분 정의는 이 섹션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개별 항이탈된 동물 조직을 포함하지 위한 것입니다. 이 성분은 동물 조직 제품의 균질성을 타당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전체 조지방 규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육종과 육공장에서 발견되는 양을 초과하는 부산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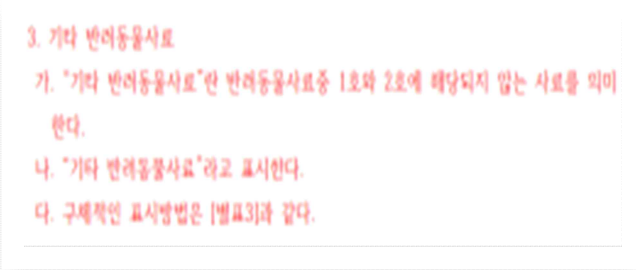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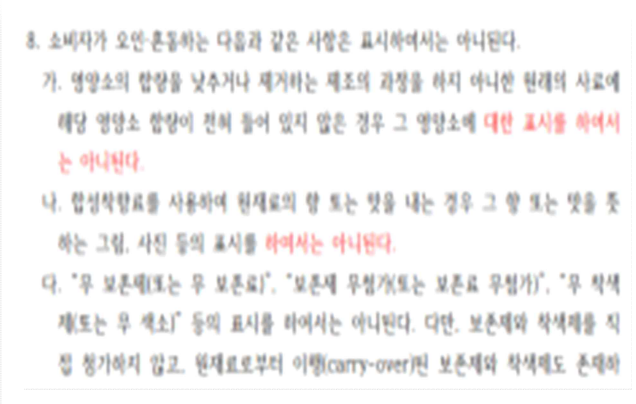
**가공부산물**  
 (Cooked Meat) 지방, 피, 털, 깃털, 분, 피 및 내용물 제거한 가공된 도축된 동물의 살에서 항이탈하고 깨끗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단, 우수 가공 관행에서 분기되려서 발생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하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는 최소 조단백질, 최소 소지분, 최대 조지방, 최소 인(P), 최소 및 최대 칼슘(Ca)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방(%) 함량은 살의 건의 무게 함량보다 2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품에 해당 중금속 설명하는 이름이 있는 경우 해당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이 성분은 동축형 안락사나 피내할 성분용 만들기 위해 대부분의 수분과 지방이 제거되도록 항이탈된 것을 제외하면 가공된 부산물과 동일합니다.

**가공물**  
 (Rendered Meat) 지방, 피, 털, 분 및 내용물 제거한 가공된 동물 또는 전체 조지방 또는 이름이 포함되어서 유용한 경우가 없거나 없는 깨끗한 살과 피부의 조합으로 건조한 항이탈된 제품. 동물 살 식용에 사용되기에 적합해야 한다. 해당 중금속 설명하는 이름이 있는 경우 해당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이는 기본적으로 가공된 재료인 것으로 대부분의 수분과 지방을 제거하여 동축형 안락사/피내할 성분용 범용 것입니다.

### 3. ㈜아크

연번	조항	현행 및 문제 소지	개선안																							
1	제4조 (의무표시 사항방법)	<p>제조용역의 명칭 이 표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p> <table border="1"> <thead> <tr> <th>표시장소</th> <th>표시사항</th> <th>활자크기 (포인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td> <td>① 제품명</td> <td>8 이상</td> </tr> <tr> <td>② 판리등록사료의 성분등록번호</td> <td>8 이상</td> </tr> <tr> <td>③ 판리등록사료의 분류</td> <td>8 이상</td> </tr> <tr> <td>④ 급여대상</td> <td>8 이상</td> </tr> <tr> <td>⑤ 등록성분량</td> <td>7 이상</td> </tr> <tr> <td>⑥ 사용한 원료의 명칭</td> <td>12 이상</td> </tr> <tr> <td>⑦ 실제 중량</td> <td>10 이상</td> </tr> <tr> <td>⑧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td> <td>8 이상</td> </tr> <tr> <td>정보표시면 또는</td> <td>①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상호(공통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수입제품의 경우 포함)</td> <td>8 이상</td> </tr> </tbody> </table> <p>1)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의 폰트 크기가 커야하며, 제한적 공간에서 표기가 가능해야 하나 사용한 원료의 명칭이 12이상이면, 대부분의 간식(100g~250g)에서는 표기가 불가능함. 식품의 경우 원료의 명칭은 8 이상임</p>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포인트)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① 제품명	8 이상	② 판리등록사료의 성분등록번호	8 이상	③ 판리등록사료의 분류	8 이상	④ 급여대상	8 이상	⑤ 등록성분량	7 이상	⑥ 사용한 원료의 명칭	12 이상	⑦ 실제 중량	10 이상	⑧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8 이상	정보표시면 또는	①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상호(공통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수입제품의 경우 포함)	8 이상	<p>1) 사용한 원료의 명칭 : 8 이상</p> <p>2) 제품명,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분류, 급여대상, 등록성분량, 제조판매업자 상호 및 주소 : 6 이상</p>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포인트)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① 제품명	8 이상																								
	② 판리등록사료의 성분등록번호	8 이상																								
	③ 판리등록사료의 분류	8 이상																								
	④ 급여대상	8 이상																								
	⑤ 등록성분량	7 이상																								
	⑥ 사용한 원료의 명칭	12 이상																								
	⑦ 실제 중량	10 이상																								
⑧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8 이상																									
정보표시면 또는	①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상호(공통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수입제품의 경우 포함)	8 이상																								
2	제5조 (제품명 표시방법)	<p>13. 판매업자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 판매업자의 경우 제3자에게 판매업자 본인이 주문·생산하여 주문자인 판매업자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제5조 (제품명 표시방법) 1. 제품명(또는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 일부에 성분명 또는 원료명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위 원료의 함량비율(%)의 표시는 배합기준, 건물기준 또는 수분환원 함량계산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함께 표시 해야한다. 수분환원 함량 계산법은 「건조 중량」과 같다. [예시: 연어(배합기준 22%, 함량분할(건물기준 1.5%)]</p> <p>1) 제품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 또는 성분명으로 표시할 경우, 개정안과 같이 3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제조자의 혼란과 소비자의 인식 혼동을 초래가 가능성이 큼</p>	<p>제품명에 사용된 성분 또는 원료의 함량을 실제 투입량으로 계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또한 이 경우 함량표시는 주표시면에 활자 14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p>																							

연번	조항	현행 및 문제 소지	개선안
3	제6조	<p style="color: red;">제6조(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및 급여대상 표시방법)</p> <p style="color: red;">1. 반려동물완전사료</p> <p style="color: red;">가. "반려동물완전사료"란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반려동물사료를 의미한다.</p> <p>1) 공청회 내용 중 용어의 불명확함(반려동물완전사료) 2) 사료영양학적으로 검증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p>	<p>1) 완전사료의 용어를 수정하고, 명확하게 어떤 사료인지 대표적인 사례 또는 예시를 세부적으로 고시하면 좋을 것으로 사려됨</p> <p>2) 사료영양학적 검증은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증빙되었을때 허용할 것인지를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p>
4	제6조 (반려동물 유형 및 급여대상 표시방법)	<p style="color: red;">2.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p> <p style="color: red;">가.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란 반려동물이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건강한 동물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재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동물에게 식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정맥 급여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및 가공된 사료를 의미한다.</p> <p style="color: red;">나.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라고 표시한다.</p> <p style="color: red;">다. 질환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 style="color: red;">라. 급여한 수의사와 상담을 권고하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p> <p style="color: red;">마. 동물복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표시하여야 한다.</p> <p style="color: red;">바. 질환별 구분의 경우 해당 질환에 적절한 것인지 여부가 수의학적으로 검증되거나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에 부합한다는 표시와 그 기준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유럽반려동물사료협회(FEDIAF)의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에서 발표한 PARNUT(특정 영양 목적을 위한 사료)의 목록관장영양소 함유기준]</p> <p style="color: red;">사.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2]와 같다.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별표2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1) (다)항목에서 질환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것 자체가 과장광고표기 내용과 상충되며,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과 혼동될 가능성이 농후함 2) 수의학적 검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p>	<p>1) 다항 : " 0 0 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2) 바항에 추가- 단, 상기 수의학적 검증이란 수의, 축산 교과서 또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SCI급 논문에 게재/공표된 것을 말한다.</p>

연번	조항	현행 및 문제 소지	개선안
5	제6조 (반려동물 유형 및 급여대상 표시방법)	 <p>1) 국내 반려동물 간식 시장이 5000억 이상이며, 대부분의 동물용 간식 제품이 이 부분에 해당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제품 수로는 반려동물사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기타라는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음</p> <p>2) 기타 반려동물 사료의 세부내용이 부족함</p>	<p>1) 3.펫푸드</p> <p>2) 가."펫푸드"란 반려동물 사료 중 1호와 2호에 해당되지않는 사료를 의미한다.</p> <p>3)"펫푸드"라고 표시한다</p>
6	제10조 (강조표시 기준)	 <p>1) 해당 문장 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등급의 원료를 사용했으므로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의 과장표현이 아닌것으로 보임</p> <p>2) 4항은 식품으로 허가된 것만 휴먼그레이드라는 뜻으로 사료에서는 휴먼그레이드라는 말 사용이 불가하다고 해석됨</p>	<p>1) 4항의 "휴먼그레이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또는</p> <p>2)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 허가된 원료만을 사용한 제품에는 "휴먼그레이드"라고 표시할 수 있다. 단, 사람이 먹게 될까봐 우려될 경우에는 주의사항 칸에 "반려동물용이므로 사람이 먹지 마십시오" 표시를 해야 한다.</p>



연번	조항	현행 및 문제 소지	개선안
7	제14조 (허위 및 과장 광고 범위)	<p>5. 누구든지 <b>반려동물사료</b>에는 <b>의약품(동물용의약품을 포함)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b>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6.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학·사료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실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축산학·사료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는 제외한다.</p> <p>1) 현재 대다수의 제품들 중에서는 SCI 급 논문을 통하여 확인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표기를 패키지에 공간상 제약으로 다 표시하기 불가함</p>	1)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된 사실에 대한 축산학·사료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맥락이 일치하도록 표시하고, 참고문헌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제14조 (허위 및 과장광고 범위)	<p>8.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p> <p>가. 사료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사료영양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p> <p>나.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용도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반려동물사료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p> <p>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특수재배", "주공재배", "단제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p> <p>라. 수의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가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참·공인·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수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p> <p>1) 나항목은 '건강기능성식품의 성분과 함량표시는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항과 배치됨</p>	1) 나항목 -삭제
9	부칙	<p>기존 표시사항으로 제작된 잔존 포장지 사용 경과 규정 신설</p> <p>- 반려동물사료의 표기사항이 시행되면 아무리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반려동물사료의 특성(특히 간식) 소량 다품종이 판매되므로 기존 포장재가 사용되지 못할 경우가 예상됨</p>	1) 본 고시 시행일까지 사용되지 않는 기존 잔존 포장재(부자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연번	조항	현행 및 문제 소지	개선안
10	기타 표시 사항(삭제 항목표시)	2) 레토르트(retort) 사료는 “레토르트사료”로 표시하여야 한다. - 습식캔, 츄르 등 습식사료의 대부분은 레토르트이며, 레토르트는 멸균이 되지 않으면 쉽게 변질되고 위해 소지가 높아, 세균증식실험(14일 소요)을 통과한 제품만 출시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1) 좌항 원상복구
11	제7조 (의무표시 사항외 표시)	<p><b>제7조(의무 표시사항 외 표시방법)</b></p> <p>1. 실근제품 또는 열근제품 표시: 실근제품 또는 열근제품은 “실근제품”, “열근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9 사료의 열근 및 실근처리 기준 참고)</p> <p>2.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틱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p> <p>3. 견본품이나 비매물 등 표시: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역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견본품이나 비매물 등)는 제품명,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유통기한, 주의사항등을 표시할 수 있다.</p> <p>1) 3항의 내용 중 제품명보다는 사료의 명칭, 형태의 기입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지 사려됨</p> <p>2) 견본품 또는 비매품용어 표기의 부재</p>	1) 3항에 "견본" 또는 "비매품" 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2	제7조 (의무표시 사항외 표시)	<p>6.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사료의 표시: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 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p> <p>1) 실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혼입이 우려될 경우, 당사에서는 가능성 있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타 업계에서는 유전자변형 포함되지 않음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 실제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 어느 표기까지 허용할 것인지?</p> <p>2) 해당 표기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규제방안은 별도로 없는지?</p> <p>3) 현실적으로 사료의 유전자변형 여부를 검사해주는 분석기관이 부재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유전자변형 00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음</p>	1) 다만, 이하의 내용 삭제



## VI.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정비방안 마련

### 1. 개요

- 현행 사료관리법의 체계하에서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의 기준 및 규격」 별표15 사료의 기타표시사항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양축사료표시제도와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사료관리법상 사료는 모두 배합사료,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고 사료의 표시 역시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해외 및 국내의 다수의 요구는 반려동물사료 표시에 있어서 배합사료,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에 따른 분류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사료의 목적에 맞게 주식, 처방식, 간식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를 위해 현행 사료관리법상에서 최소한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요구에 맞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음
- 이 과정에서 기존의 모든 제도는 그대로 두고 표시제도만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혼동 및 불편함을 지적하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는 현행 사료관리법의 체계하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이므로 이는 본 연구용역의 한계임
- 분류체계외에도 휴먼그레이드, 기타 기존 규정 중 반려동물사료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개정안) 및 별표[4의2]신설(안)

#### 입법안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4와 같다. 단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상의 반려동물중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사료의 경우에는 별표4의2에 따른다.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반려동물사료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

##### 1.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사항

- 가. 제품명
- 나.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다. 사료의 명칭
- 라.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마. 급여대상

바. 등록성분량

사. 사용한 원료의 명칭

아. 주의사항

자. 내용량 (g, kg, 톤)

차.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

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단 판매업자의 경우 제3자에게 주문·생산하여 주문자인 판매업자 상표를 부착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만 해당

타. 재포장 내용, 재포장 업체명 및 주소

파.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 표시방법

가. 위 사항의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사료관리법하에서는 사료의 표시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4조에서 별표4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현행 시행규칙제도하에서는 별도의 표시에 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 수 없음

- 이에 부득이하게 시행규칙 제14조에서 반려동물사료에 한하여서는 별도의 별표[4의2]를 따르도록 하여 별도의 분류체계에 따른 표시가 가능하도록 함

현재 반려동물사료의 유형을 반려동물완전사료,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 및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하고 있고 반려동물완전사료 및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는 개와 고양이에 특화되어 있는 바 다른 반려동물에는 해당되지 않음. 기타 내용도 다른 반려동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제품명, 급여대상(고양이, 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판매업자의 경우 모든 판매업자가 아니라 주문자 판매방식 즉 OEM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표시나 포장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판매업자의 책임을 부과함

- 대상을 개와 고양이로 한정함. 이유는 개·고양이 이외의 동물과 다른 반려동물 및 동물(햄스터, 토끼, 기니피그)과는 반려동물사료의 차이가 매우 심하여 반려동물완전사료 및 반려동물특수목적사료의 정의를 포섭하기 어려움. 일본은 개와 고양이만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AAFCO는 pet을 반려동물(pet)과 특수 반려동물(specialty pet)로 구분하고 반려동물(pet)은 개(Canis familiaris)와 고양이(Felis catus)만 포함하고 특수반려동물사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향후 연구를 통해 추가로 반려동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이라는 이유는 사료관리법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개념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음-“표시방법”의 내용을 하위 고시개념으로 내린 것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그대로 고시로 내린 것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지만 현재 표시방법에 관한 내용은 반려동물사료에 해당되는 사항이 거의 없고 대부분 가변적인 사항이라 고시제도로 운영하기는 것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고시로 전부 이전함

## 기존 규정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4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4와 같다.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

#### 1.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 가. 표시사항

-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 3) 등록성분량
-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 6) 주의사항
- 7) 사료의 용도
-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11) 재포장 내용
-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나. 표시방법

- 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한다.
- 2) 사료의 형태는 사료 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다.

##### 가) 종류

- (1) 가루: 곱게 가루로 만든 것
- (2) 펠릿: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
- (3) 크럼블: 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목적에 맞게 분쇄·선별한 것

- (4) 후레이크: 사료를 그대로 또는 증기로 찌서 납작하게 압편(壓片)한 것
- (5) 익스투루전(팽화):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을 호화(糊化)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
- (6) 액상: 용액으로 된 것
- (7) 그 밖의 형태: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

나) 표시 예

사료의 형태: 펠릿사료

- 3) 등록 성분량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한다.
- 4)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서대로 적는다. 다만, 식물성의 곡류, 강피류 및 박류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쓰지 아니하고 곡류·강피류·박류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며, 첨가한 단미사료 중 광물성과 보조사료는 명칭을 적고, 다음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  
"위 사용 원료는 공장 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은 첨가한 동물용의약품의 명칭(상품명은 괄호 안에 적을 수 있음)과 사용된 함량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로 표시하며, 휴약기간(休藥期間)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일 경우에는 그 휴약기간을 명시한다.
- 6)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증성분표 하단에 **(주의):** 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가 포함된 배합사료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를 표시하여야 한다.
- 7) 사료의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자가 혼란을 줄 정도로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제품의 상품을 과대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실제 중량은 제품의 실제 중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단위는 포장 크기에 따라 "kg" 또는 "톤"으로 표시한다.
- 9)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은 제조(수입)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하게 표시한다.
- 10) 재포장 내용은 재포장 사유·날짜·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고, 그 외에 등록성분량 등은 재포장 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다.

2.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 3) 등록성분량
-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 5) 사료의 용도
- 6) 주의사항

- 7) 실제 중량 (kg 또는 톤)
- 8)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 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10) 재포장 내용
- 11)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표시방법

- 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괄호 안에 표시할 수 있다.
- 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사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품명을 적는다.
- 3) 삭제 <2015.1.2.>
- 4)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증성분표 하단에 그 내용을 **(주의):** 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는 "반추가축 사료로 사용금지 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돼지전용 남은음식물사료(80℃에서 30분이상 가열)는 "돼지 외에는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각각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5) 사료의 형태, 등록성분량, 사료의 용도, 실제 중량, 제조(수입) 연월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및 재포장 내용은 배합사료의 표시방법과 같다.
- 6) 삭제 <2015.1.2.>

### 3. 반려동물사료의 표시기준 고시(안)

가. 고시제목

-가칭 「반려동물사료의 표시기준」 (안)으로 잠정 결정

나. 고시(안)의 구성 및 개관

「반려동물사료의 표시기준」 (안)

- 제1조(목적)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의무 표시사항)
- 제4조(의무표시사항의 표시방법)
- 제5조(제품명 표시방법)
- 제6조(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및 급여대상 표시방법)

- 제7조(의무 표시사항 외 표시방법)
- 제8조(원료의 표시방법)
- 제9조(원료표시방법의 예외)
- 제10조(강조표시의 기준)
- 제11조(등록성분의 실제 측정값의 허용 오차 범위)
- 제12조(냉동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사항)
- 제13조(주의사항 표시)
- 제14조(허위 및 과장 광고의 범위)
- [별표1] 반려동물완전사료의 표시방법
- [별표2]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의 표시방법
- [별표3] 기타 반려동물사료의 표시방법

## 다. 조문별 해설

### □ 제1조(목적)

#### 입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사료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법지침】

-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에게로의 정확한 정보전달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일반적인 입법기술 원칙에 따라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서 제1조 목적조항을 구성함. 즉, 반려동물사료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사료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참고 입법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료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日本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반려동물의 건강보호와 동물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 입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명(브랜드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2.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가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사료는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소분판매하는 사료는 소분용 원 사료의 제조연월일로, 원 사료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사료는 원 사료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3. "유통기한"이라 함은 사료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4.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사료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사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5.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사료를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6. "정보표시면"이라 함은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품명(브랜드명)을 의무사항으로 삽입



-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으로 되어 있던 문구를 동어반복을 피하기 위해“유통기한”으로 정리
- 주표시면외에 다른 표시면에 대한 정의가 없이 현행 ‘기타 표시면’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식품 규정등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기존 규정 - 용어의 정의

### 1. 용어의 정의

- 가.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가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사료는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소분판매하는 사료는 소분용 원 사료의 제조연월일로, 원 사료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사료는 원 사료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 나.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이라 함은 사료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예시 : 제조일로부터 3월까지) 및 기한(예시 : 2016.12.31까지)을 말한다.
- 다.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사료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사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 라.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사료를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 참고 입법례

### 제품명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 정보표시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14. "정보표시면"이란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 □ 제3조(의무 표시사항)

### 입법안

제3조(의무 표시사항) 규칙 제14조 별표4의2 의무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제품명 : 제5조 참조
2.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관할 시·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사료의 성분등록번호
3. 사료의 명칭 : 법 제2호제2호 단미사료(혼합성단미사료 포함) 및 제3호 배합사료
4.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제6조 참조
5. 급여대상 : 반려동물사료를 급여하는 동물의 종류+생애단계로 표시한다. 단 생애단계는 불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표시 예: 개와 고양이용, 반려견, 반려묘용, 3개월 이상 자견용, 3개월 이상 자묘용, 1세 이상 성견용, 1세 이상 성묘용, 반려동물용, 전연령견용, 전연령묘용, 7세 이상 반려견용, 7세 이상 반려묘용 등]
6. 등록성분량 : 시·도에 성분등록 한 반려동물사료의 등록성분합량
7.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배합비율이 큰 순으로 표시한다. (사용한 원료 중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상의 명칭으로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는 원료의 경우는 괄호안에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원료명을 병기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 사료의 사용과 보관 등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붉은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
9. 내용량 : g, kg, 톤을 원칙으로 하되 액체인 경우 ml, l로 표시
10.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 : 제조된 날짜를 표시
11.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OEM사료의 경우 판매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표시 )
12. 재포장 내용 : 사료를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표시사항을 그대로 표시하고,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도 표시.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기존 규정에는 의무표시사항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의 표시에 대한 혼란이 존재하여 의무표시사항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규정함
- 현행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중 반려동물사료에 해당되는 사항을 반영함
- 판매업자의 경우 모든 판매업자가 아니라 실제 포장 표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판매업자중 주문자부착생산방식(OEM)의 경우에만 판매업자를 기재하도록 하여 표시에 책임이 없는 단순판매자(단순 유통)등은 제외함

## □ 제4조(의무표시사항의 표시방법)

### 입법안

제4조(의무표시사항의 표시방법) 제3조의 의무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항에 따라 표시한다.

1.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입되는 사료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제품명 등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cm<sup>2</sup>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개별포장(내포장)에 제품명 등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외포장 내용으로 정보제공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내용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사유: 소단량 제품에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할 경우, 표시면적이 적어 문구 표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표시면적의 확대 및 표시방법의 다양한 대체 방법이 필요함).
3.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사료의 경우에는 내포장별로 반려동물사료의 분류 및 급여대상, 등록성분량, 중량,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4. 표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각인(刻印) 또는 소인(消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벌크사료 운반차량 및 탱크로리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가. 제품포장의 특성상 인쇄,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톤백포장, 드럼통, 컨테이너, 합성수지제 용기 등)
  - 나. 통·병조립 및 병제품 등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
  - 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사료 제조업자의 제품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
  - 라. 아무런 표시가 없는 포장재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
  - 마. 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 한 내용이 변경되어 사·도지사에 변경등록이 수리된 경우와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및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표시내용의 오·탈자, 등록성분의 단위, 주의사항 및 재포장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등록성분량, , 중량,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변경처리 할 수 없다.
  - 바. 소량 생산하는 제품 등 특성상 공통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다만, 제조연월일은 제외한다.

5.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인 또는 압인(壓印) 등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포인트)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① 제품명	8 이상
	②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8 이상
	③ 사료의 명칭	8 이상
	④ 반려동물사료의 분류	8 이상
	⑤ 급여대상	8 이상
	⑥ 등록성분량	7 이상
	⑦ 사용한 원료의 명칭	12 이상
	⑧ 실제 중량	10 이상
	⑨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8 이상
정보표시면 또는 기타 표시면	①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수입제품의 경우 포함)	8 이상
	② 재포장 내용 표시(해당 사항이 없으면 생략가능)	10 이상
	③ 주의사항	10 이상
	④ 기타사항	6 이상

나. 주 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면적이 200cm<sup>2</sup>이하인 제품의 경우 가목의 표시사항에서 규정한 활자크기보다 2포인트 작게 표시할 수 있다.

다.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가.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6. 사료의 분류 및 급여대상 : 제6조 참조

7. 등록성분량 : 등록 성분량은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한다.

8.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및 함량 : 제8조 참조

9. 내용량

가. 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톤, kg, g등)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kl, L, ml 등)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으로 표시하고,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속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나. 급여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 제외)와 함께 포장되는 사료는 액체를 뺀 사료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정제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한 용기·포장내의 정제수와 총중량을, 캡슐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캡슐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포제의 중량은 내용물을 포함한 캡슐 전체 중량의 50%미만이어야 한다.

10.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제조일은 “〇〇년〇〇월〇〇일”,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년〇〇월〇〇일”, “〇〇〇〇.〇〇.〇〇” 또는 “유통기한으로부터 〇〇월 전 제조”로 표시하여야 하고,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수입되는 사료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가목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제조일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빠른 제조일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11.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표시

가. 유통기한은 제조일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유통기한의 표시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이면 “제조일로부터 〇〇일까지”, 유통기한이 12개월 미만이면 “제조일로부터 〇〇개월까지”, 유통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조일로부터 〇〇개월까지 또는 〇〇년까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의 표시는 “〇〇년〇〇월〇〇일까지” 또는 “〇〇.〇〇.〇〇까지”, “〇〇〇〇년〇〇월〇〇일까지” 또는 “〇〇〇〇.〇〇.〇〇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입되는 사료인 경우 수출국의 유통기한 표시순서가 위의 2) 표시순서와 다를 때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해당 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12. 제조업자의 상호(공장 명칭) 및 주소 표시 :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수입제품의 경우에도 수입업자 표시와 별도로 실제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3. 판매업자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 판매업자의 경우 제3자에게 판매업자 본인이 주문·생산하여 주문자인 판매업자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재포장내용 표시 : 사료를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표시 사항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도 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재포장한 자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 15. 수입사료에 대한 표시방법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료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에는 위 제4호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으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는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수입신고한 해당 사료의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한글표시 스티커 등에 당해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수입되는 사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1) 용기·포장에 넣여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사료 및 사료원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외국의 인증마크 중 국내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HACCP 사료공장, 유기농, 친환경 등)은 표시할 수 없다. 수입된 제품에 표기된 경우에는 스티커등으로 가려야 한다.

마. 수출국의 등록성분 표시사항이 사료성분등록증의 성분량과 비교하여 「사료검사기준」 별표 4의 허용 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가려야 한다.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은 “2. 표시방법”이라는 규정으로 의무표시사항 및 기타표시사항 등 여러 표시사항에 대하여 한꺼번에 구분없이 방만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 정확한 표시방법을 찾기 어려움
- 기존 “2. 표시방법”의 내용중 의무표시사항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의무표시사항(제품명 등)을 추가하고 이를 정리 보완함
- 등록성분량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함
- 판매업자의 경우 주문판매생산업자들에 대해 표시의무사항을 부과함
- 표시사항의 활자크기 등은 현행 생산, 판매, 수입업자들과 논의하여 적절한 크기로 조정할 필요성이 존재함

## □ 제5조(제품명 표시방법)

### 입법안

#### 제5조 (제품명 표시방법)

1. 제품명(또는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 일부에 원료명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위 원료의 함량비율(%)의 표시는 배합기준, 건물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시: 연어(배합기준 22%, 황태분말(건물기준 1.5%)]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제품명에 원료명을 기재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원료가 제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히 원료의 함량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함
- 미국의 경우 원료명을 제품명에 넣는 경우 매우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고, 원료의 함량비율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을 위해 그 함량비율만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도록 함
- 또한 함량비율을 표시할 때 표시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배합기준, 건물기준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예시를 표시함

### 참고 입법례 - 미국 AAFCO 라벨링 규정

규정 PF3. 브랜드 및 제품 이름제품명 규정에 대한 추가 설명은 본 가이드의 섹션 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 "100%", "모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단어는 애완동물 식품 또는 특수 애완동물 식품의 브랜드 또는 제품명에 제품이 둘 이상의 성분을 포함하고, 가공에 충분한 물, 탈염제 또는 미량의 보존료 및 조미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

'ABC 브랜드 100% 순수 비프도그 식품'처럼 브랜드나 제품명에 '100%' 또는 '모두'라는 단어나 성분을 지칭하는 유사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는 가공을 위해 첨가된 물, 탈염제, 방부제 또는 조미료를 제외하고 미량으로 존재하는 다른 성분을 포함할 수 없다.

- (b) 성분 또는 성분의 조합은 애완동물 식품 또는 특수 애완동물 식품의 제품명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다음 규정은 제품 이름에 성분에 대한 언급이 사용되는 방법을 제한합니다:

- (1) 성분이 제품 전체 중량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경우, 처리에 충분한 물은 백분율을 계산할 때 제외될 수 있지만, 성분은 전체 제품 중량의 최소 700/0을 구성해야 한다.

'쇠고기 개밥', '냉동고구마 개밥', '참치 고양이밥' 등 다른 설명이 없는 제품 이름에 성분이 이름을 붙였을 경우, 제품 공식에는 이름을 붙인 성분이 95%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95% 규칙"이라고 합니다. "



"치킨 & 망고 캣 트리트"와 같이 다른 설명자가 없는 제품 이름에 둘 이상의 성분이 명명된 경우, 두 가지 명명된 성분의 양은 제품 공식에서 95% 이상이어야 하며, 두 가지 명명된 성분이 동일한 순위여야 하며, 개별 명명된 성분이 제품 공식의 3% 미만일 수 없습니다.

처리를 위해 물이 첨가된 경우, 명명된 성분의 백분율을 계산할 때 이 첨가된 물(성분 목록에 명시되어야 함)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제외는 첨가된 물에만 적용됩니다. 배제는 성분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분 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물을 첨가했는지에 관계없이, 첨가된 물을 포함한 총 제품 제제는 명명된 성분의 70%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계산은 부피가 아니라 무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성분이 제품 중량의 25% 이상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25% 규칙"이라고 불리는 다음 요구 사항은 제품 공식이 명명된 성분의 최소 25%를 포함하는 경우 제품 이름에 성분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품 제제는 명명된 성분의 25% 이상을 포함할 수 있지만, 25% 미만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중간생략>>

(3) 규정 PF3(b)에 따라 제품명에 포함된 성분의 조합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성분의 합이 "95% 규칙" 또는 "25% 규칙"을 충족할 경우, 둘 이상의 성분이 제품명에 포함될 수 있다.  
" 명명된 여러 성분의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각 성분은 제품 중량의 3% 이상을 구성하며, 가공에 충분한 물을 제외하고는 이름이 붙은 성분의 총 중량은 95% 이상 또는 25% 이상이어야 하지만, 각 성분은 제품 공식의 3%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3%를 계산할 때 재료의 정상 수분 함량이 아닌 가공을 위해 첨가된 물(성분 목록에 명시되어야 함)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B. 제품 내에서 성분의 이름이 중량별로 각각 우세한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제품 이름에 여러 성분이 포함된 경우, 첫 번째로 명명된 성분은 다른 명명된 성분보다 배합물의 중량에 따라 더 우세한 성분이어야 합니다. 이름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성분이 세 번째로 명명된 성분보다 더 우세해야 합니다. 명명된 성분의 순서는 항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분 설명에 나타나는 순서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ABC 물고기와 닭 고양이 음식"이 제품 이름이라면, 당신은 생선이 먼저 재료 명세서에 나열되고 그 다음에 재료 닭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제품에 흰 생선, 송어, 연어와 같은 여러 가지 생선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럴 때는 생선 재료를 모두 합쳐야 한다.

## □ 제6조(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및 급여대상 표시방법)

### 입법안

#### 제6조(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및 급여대상 표시방법)

##### 1. 반려동물완전사료

가. “반려동물완전사료”란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반려동물사료를 의미한다.

나. “반려동물완전사료”라고 표시한다.

다. 반려동물완전사료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사료영양학적으로 검증되거나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예시 : 미국사료관리자협회(AAFCO; Association of America Feeding Control Officials) 또는 유럽반려동물사료협회(FEDIAF; European Pet Food Industry)의 영양가이드라인] 해당 기준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1]과 같다.

##### 2.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

가.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란 반려동물이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건강한 동물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동물에게 식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 급여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및 가공된 사료를 의미한다.

나.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라고 표시한다.

다. [별표2]의 “목적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 급여전 수의사와 상담을 권고하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동물의약품에 해당되지 않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수의학적으로 검증되거나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에 부합한다는 표시와 그 기준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유럽반려동물사료협회(FEDIAF)의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에서 발표한 PARNUTs(특정한 영양 목적을 위한 사료)의 목록권장영양소 함량기준]

사.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2]와 같다.

##### 3. 기타 반려동물사료

가. “기타 반려동물사료”란 반려동물사료중 1호와 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료를 의미한다.

나. “기타 반려동물사료”라고 표시한다.

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다.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에 있어서 유형을 미국과 같이 반려동물완전사료, 반려동물영양보충사료, 기타사료

로 세분함.

-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예시표시를 제시함
- 반려동물완전사료의 경우 공인된 인증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아직 우리나라에 구체적인 인증규정이 없는 바 미국 AAFCO나 유럽의 FEDIAF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규정을 따랐음을 표시하도록 함
-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의 경우 우리나라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유럽 FEDIAF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이의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표시함
- 이와 같이 반려동물완전사료나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반려동물사료가 공신력을 얻어 수입제품을 대체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
- 기타반려동물사료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와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외에 다양한 영양기능식 사료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세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하여서는 국제적으로 영양기능식의 분류 및 규정이 미비하고 국내연구도 부족한 바 현재 단계에서 별도의 분류 체계를 수립하기 어려운 바 추후 연구에서 이의 세분화를 검토할 필요성은 존재함

#### 참고 입법례 - 미국 AAFCO 라벨링 규정

- 미국은 대상 축종에 따라 pet food(개, 고양이)와 specialty pet food(그 밖의 반려동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완전배합사료(complete feed), 간식류(snacks, treats, chew)로 구분
- EU는 한국과 동일하게 양축용 사료와 반려동물용 사료의 구분이 없음
  - 그러나 EU는 펫푸드 모범 라벨링 관행 강령 3.2.1.1에 따라, 영양학적 적합성 문구 대신, '사료의 유형(type of feed)'이라는 항목에 사료 물질(Feed material), 완전 사료(Complete feed), 보충 사료(Complementary feed), 복합 사료(Compound feed) 중 하나를 표시하도록 한다. 특수목적식에 해당하는 PARNUTs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특수목적식(PARNUTs)의 경우 세부 영양가이드라인은 EU별도 규정 EU 2020/354의 Part A. Annex에서 다룬다.
- 일본은 반려동물용 사료의 분류가 존재
  - 배합사료에 해당하는 사료를 종합영양식이라고 분류하며 간식, 요법식 및 기타목적식으로 분류
- 중국은 애완동물 사료를 양축용 사료와 분리하여 정의
  - 애완동물 배합사료: 애완동물의 성장 과정 또는 특정한 생리나 병리 현상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사료원료와 사료 첨가물을 일정한 비율로 배합해서 제조한 사료를 말하며, 단독 사용으로 애완동물의 전반적인 영양을 충족할 수 있음
  - 애완동물 첨가물 예비 혼합사료: 아미노산, 비타민, 미량 광물성 물질, 효소 등과 같은 영양공급용 첨가물이 일정한 비율로 영양공급용 사료 첨가물 또는 희석제를 배합한 사료
  - 기타 애완동물사료: 애완동물에게 보상을 주거나 애완동물과의 상호작용 또는 애완동물이 씹고 무는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사료원료와 사료 첨가물로 제조한 사료

## □ 제7조(의무 표시사항 외 표시방법)

### 입법안

#### 제7조(의무 표시사항 외 표시방법)

1.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 표시: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9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 참고)
2.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 표시: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견본품이나 비매품 등)는 제품명,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유통기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수출사료에 대한 표시: 수출사료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5.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대한 포장재질 표시 가. 합성수지제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재질표시 생략 가능
6.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사료의 표시: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 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7. 품질유지기한  
가. 소비자의 올바른 사료사용을 위하여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통조림 형태로 되어 있는 사료는 품질유지기한을 가급적 표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유지기한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제3조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사료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8.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사료명칭,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9. 기타 표시사항  
가. 레토르트(retort)사료는 “레토르트사료”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희석·용해하여 급여하는 제품은 그 희석배수 또는 희석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1부터 별표 13의 비고란에서 표시하도록 기준이 설정된 사항은 표시하여야 하며, 미생물제를 이용해서 발효한 사료 중 그 명칭 앞에 “발효”를 표시한 경우(예: 발효대두박)에는 g당 균주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의3 참조).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 현행 표시제도에서 “2. 표시방법”으로 의무표시사항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모든 표시사항이 한꺼번에 표시되어 있어 방만하고 이의 구별이 어려운 바 의무표시사항에 관한 사항과 구분하여 의무사항의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정을 구분하여 정리함
- 기존 규정에 양축사료 등에 관한 내용도 같이 표시되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바 반려동물사료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함
-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의 경우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g당 균주’를 표시하도록 신설함

**□ 제8조(원료의 표시방법)**

**입법안**

제8조(원료의 표시방법)

1. 사료의 제조시 사용한 모든 원료의 명칭(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관계없이 표시할 수 있다.
2. 프리믹스원료 및 각종 합제류 등의 복합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과 함께 괄호안에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료에 포함된 원료가 제품명에 사용되는 경우 또는 반려동물의 건강·기능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명칭 및 해당 원료의 함량 또는 함량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식육의 특정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식육의 원료육 명칭 뒤에 괄호로 그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식육의 함량을 해당 표시와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어분, 육분, 육골분, 가금부산물건조분 등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 명칭에 “OO고기”라고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사용한 원료 중 사료공정서의 명칭으로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는 다음 원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이외 원료의 경우 괄호안에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원료명으로 병기할 수 있다.

사료공정서의 명칭	표기명칭
가금부산물건조분(도축 및 가금도축부산물, 계육분 포함)	가금(단일 조류 원료구성일 경우 조류명 표시 가능 (예: 닭, 오리)분말)
수지박(우지박, 돈지박을 포함)	고기(단일 동물 원료구성일 경우 조류명 표시 가능 (예: 소, 돼지)분말)
어분(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포함)	생선(단일 생선일 경우 어종표시 가능, 예: 참치)분말
유도단백질(가수분해 효소처리 등을 한 것을 포함)	가수분해(단일 동물 원료일 경우 동물명 표시 가능 (예: 닭, 연어) 단백질)
육분	고기(단일 동물 원료일 경우 동물명 표시 가능 (예: 소, 돼지)분말)
육골분	고기(단일 동물 원료일 경우 동물명 표시 가능 (예: 소, 돼지)뼈 혼합분말)
어골분	생선(단일 생선일 경우 어종명 표시 가능 (예: 참치)뼈 분말)
계유	닭기름
돈지(돼지기름)	돼지기름
우지(소기름)	소기름
양지(양기름)	양기름
어유(어류기름)	생선기름

6.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제6조제호 규정에 의한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또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및 별표 6에 기재된 단미·보조사료를 원료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 및 별표 6, 별표 13 제2호 참조)

가. 원료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쓰고, 필요시 원소 및 화합물의 화학 명칭을 공정에 기재된 영문명을 병기.

예) 비타민B12 (Cyanocobalamin), 비타민C (Ascorbic acid)

나. 유효 성분명 및 함량, 부형물질 등의 명칭 및 함량

다. 첨가할 수 있는 배합사료의 종류 및 양

라. 보존상의 주의사항은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여진 보존방법을 기재한다.

7. 단미사료(광물성사료에 한한다)·보조사료·식품첨가물(이하 “보조사료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료를 제조 시에 직접 사용·첨가하는 보조사료등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당 규정에 따라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식용색소 청색5호(착색료), 안식향산(보존료)]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5에 해당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당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6에 해당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주용도(중복된 사용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주요 목적을 주용도로 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6에서 규정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한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2. 표시방법”에 표시되어 있던 내용중 원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류하여 내용확인이 용이하도록 함
- 프리믹스 원료의 경우 기존에 2~3가지 원료를 자발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3가지를 함량이 높은 비율대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 프리믹스 원료의 경우 제품명과 같이 실제로 해당 원료가 반려동물의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는 경우 함량 순위와 무관하게 해당 원료의 명칭과 함량 또는 함량비율을 표시하도록 함
- 어분, 육분 등 현재 사료공정서의 명칭에 따라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원료들에 대하여서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당 원료와 표시할 수 있는 명칭을 적시하여 소비자들이 원료가 어떤 것인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원료에 대하여 예시로 실제 반려동물사료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를 적시하여 제조, 수입업자 등이 쉽게 표시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함



## □ 제9조(원료표시방법의 예외)

### 입법안

제9조(원료표시방법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전분은 “전분명(00전분” 또는 “전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당해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료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보조사료(식품첨가물포함) 등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보조사료(식품첨가물포함)등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료의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 제품에 제거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주표시면의 면적이 30cm<sup>2</sup> 이하인 것은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2. 표시방법”에 표시되어 있던 내용중 원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류하여 제10조에서 표시하였고 원료의 표시사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내용확인이 용이하도록 함
- 현행 내용과 동일하나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나 원료에서 이행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에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게 규정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논란규정을 명확히 함
-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만을 표시할 수 있는 주표시면의 면적을 현행 그대로 30cm<sup>2</sup>으로 규정하였지만 표시내용이 증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50cm<sup>2</sup>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 제10조(강조표시 기준)

### 입법안

제10조(강조표시 기준)

1. ‘유기’등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반려동물 유기사료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2. “천연”의 표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며, 합성결착제·인공(조합)향·합성착색제·합성보존제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다.
3.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휴먼그레이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또는 이와 유사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관련법상 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5. 열량 관련하여 “덜”, “light”, “lite” 또는 “저칼로리”용어사용
  - 가. 반려견사료의 경우(단, 건물기준이 아니라 급여기준임)
    - 1) 수분 20%이하 사료에서는 3100kcal/kg미만인 경우
    - 2) 수분 20%–65% 이하 사료에서는 2500kcal/kg미만인 경우
    - 3) 수분 65%이상 사료에서는 900kcal/kg미만인 경우
  - 나. 반려묘사료의 경우(단 건물기준이 아니라 급여기준임)
    - 1) 수분 20%이하 사료에서는 3250kcal/kg미만인 경우
    - 2) 수분 20%–65% 이하 사료에서는 2650kcal/kg미만인 경우
    - 3) 수분 65%이상 사료에서는 950kcal/kg미만인 경우
6. 지방관련 “저지방”, “지방함량을 줄인”, “less”, “reduced”용어사용
  - 가. 개사료의 경우(단, 건물기준이 아니라 급여기준임)
    - 1) 수분 20%이하 사료에서는 지방 9%이하일 경우
    - 2) 수분 20%–65% 이하 사료에서는 지방 7%이하인 경우
    - 3) 수분 65%이상 사료에서는 지방 4%이하인 경우
  - 나. 반려묘사료의 경우(단 건물기준이 아니라 급여기준임)
    - 1) 수분 20%이하 사료에서는 지방 10%이하일 경우
    - 2) 수분 20%–65% 이하 사료에서는 지방 8%이하인 경우
    - 3) 수분 65%이상 사료에서는 지방 5%이하인 경우
7. 특정균 등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 등의 g당 함유균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사료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합성착향료를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무 보존제(또는 무 보존료)”, “보존제 무첨가(또는 보존료 무첨가)”, “무 착색제(또는 무 색소)”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존제와 착색제를 직접 첨가하지 않고, 원재료로부터 이행(carry-over)된 보존제와 착색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표시가 가능하다.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2. 표시방법 서. 강조표시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규정을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하여 가독성을 높임

- 기존의 규정 중 새로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함
- “유기반려동물사료”의 경우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반려동물 유기사료인증을 획득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휴먼그레이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또는 이와 유사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미국의 예와 같이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관련법상 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오해가 오인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를 신설함
- 현행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강화”, “첨가”용어에 관한 규정이 실제 반려동물사료와 맞지 않는 내용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전체 삭제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열량”과 “지방”에 대해서만 미국 AAFCO규정을 참조하여 이를 따르도록 함

**참고 입법례 - 휴먼그레이드: 미국 AAFCO 라벨링 규정 / 열량 및 지방 : 미국 AAFCO 라벨링 규정**

**휴먼그레이드: 미국 AAFCO 라벨링 규정 AAFCO라벨링가이드 85쪽**

**F. 인간 등급 주장**

AAFCO는 "인간 등급"을 정의하기 위한 사료 용어와 애완동물 식품에 대한 인간 등급 주장을 위한 지침을 개발했다. 제품 자체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미국 농무부(USDA)와 FDA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제품이 "인간의 품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또는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인간 등급 주장이 진실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조자 또는 유통자는 제조자에게 공급된 개별 성분이 인간 소비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각 개별 성분 공급자의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제조자나 유통자는 또한 완제품이 인간 식품을 생산하도록 허가받은 시설에서 인간 식품에 대한 현행 GMP에 따라 제조되었다는 증거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에는 식용 식품 제조 시설의 운영을 위한 시설 허가 또는 허가 또는 지역 또는 주 공중 보건 당국이 발행한 가장 최근의 검사 결과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제조자나 유통자는 인간 식품 라벨이 제품에 부착된 경우, 인간 식품 당국이 인간 소비를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다른 재료와 그 먹을 수 있는 재료가 섞이거나, 그 재료를 먹을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공, 보관, 저장 또는 배송될 때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재료가 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을 가지고 애완동물 사료 시설로 운반한다면, 닭가슴살은 더 이상 사람이 먹을 수 없다. 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을 닭고기 가루(인간이 먹을 수 없는 재료)와 혼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은 제품 자체가 실제로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설정된 표준(21 CFR 117)을 준수하고 통과하는 조건에서 제조, 포장, 배송 및 보관 되지 않는 한 제품에 잘못된 상표를 붙인 것이다. 제조업체, 배송업체, 유통업체/도매업체 및 소매업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 배송, 취급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해당 연방, 주 및 지역 허가, 인증서 또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 열량 및 지방 : 미국 AAFCO 라벨링 규정

##### Regulation PF10. Descriptive Terms 및 체크리스트 참조

1. 열량 관련하여 “덜”, “light”, “lite” 또는 “저칼로리”용어사용
  - 가. 반려견 사료의 경우(단, 건물기준이 아니라 급여기준임)
    - 1) 수분 20%이하 사료에서는 3100kcal/kg미만인 경우
    - 2) 수분 20%–65% 이하 사료에서는 2500kcal/kg미만인 경우
    - 3) 수분 65%이상 사료에서는 900kcal/kg미만인 경우
  - 나. 반려묘사료의 경우(단 건물기준이 아니라 급여기준임)
    - 1) 수분 20%이하 사료에서는 3250kcal/kg미만인 경우
    - 2) 수분 20%–65% 이하 사료에서는 2650kcal/kg미만인 경우
    - 3) 수분 65%이상 사료에서는 950kcal/kg미만인 경우
2. 지방관련 “저지방”, “지방함량을 줄인”, “less”, “reduced”용어사용
  - 가. 개사료의 경우(단, 건물기준이 아니라 급여기준임)
    - 1) 수분 20%이하 사료에서는 지방 9%이하일 경우
    - 2) 수분 20%–65% 이하 사료에서는 지방 7%이하인 경우
    - 3) 수분 65%이상 사료에서는 지방 4%이하인 경우
  - 나. 반려묘사료의 경우(단 건물기준이 아니라 급여기준임)
    - 1) 수분 20%이하 사료에서는 지방 10%이하일 경우
    - 2) 수분 20%–65% 이하 사료에서는 지방 8%이하인 경우
    - 3) 수분 65%이상 사료에서는 지방 5%이하인 경우

□ 제11조(등록성분의 실제 측정값의 허용 오차범위)

**입법안**

제11조(등록성분의 실제 측정값의 허용 오차범위)(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3의2 제3호 참조, 권고기준)

1. 최저량(이상)에 해당하는 등록성분의 실제측정 값은 가급적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2. 최고량(이하)에 해당하는 등록성분의 실제측정 값은 가급적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위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7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성분량이 “최저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측정 값은 표시 값 이상이어야 하고, 성분규격이 “최대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 값 이하이어야 한다.
4. 실제 측정값이 위 1항 내지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사료검사기준 별표 4의 허용오차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내인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2. 표시방법 며. 등록성분의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으로 분류되어 있는 규정을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하여 가독성을 높임
- 현행 규정에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식품과 같이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장비의 부재 및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의 부재로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 실제 벗어났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바 현실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현행과 같이 권고규정으로 남겨두기로 함

**참고 입법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6. 영양정보

나.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영양성분의 실제측정값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1)에서 정하지 않는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나트륨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120퍼센트(%)미만이어야 하고, 탄수화물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8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 □ 제12조(냉동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사항)

### 입법안

제12조(냉동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사항)1. 냉동 반려동물사료는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반려동물은“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는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첨가 제품은 효모 또는 유산균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3. 냉동 반려동물사료는 해당 사료의 냉동보관방법 및 조리시의 해동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조리 또는 가열처리가 필요한 냉동 반려동물사료는 그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제조업체가 냉동 사료를 해동하여 출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 사료로서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주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2. 표시방법 처. 냉동 사료의 표시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규정을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하여 가독성을 높임
- 규정 내용은 이전 규정과 동일

## □ 제13조(주의사항 표시)

### 입법안

제13조(주의사항 표시)1.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냉동 유통되는 사료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다만, 제조업체가 냉동된 사료를 해동하여 출고할 때에는 "이 사료는 냉동된 사료를 해동한 사료이니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하여야 한다.
3. 수분함량이 14%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개봉 후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누구든지 반려동물사료에는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을 포함)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폴리스티렌,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용기·포장재는 가열·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5. 주의사항 표시”으로 분류되어 있는 규정을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하여 가독성을 높임
- 규정 내용은 이전 규정과 동일하고 문구를 수정함

### □ 제14조(허위 및 과장 광고의 범위)

#### 입법안

제14조(허위 및 과장 광고의 범위)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외국어로 표시·광고한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등록과 법 제12조에 따른 성분등록에 따라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법 제16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표시한 명칭 및 표시·광고
3.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가. “사료”는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 할 수 없다. 다만,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는 제6조2호에 따른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Ⅱ.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기준 참고

다. 「약사법」 제2조제4호에서 의약품을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기계·장치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어 빈혈예방, 고혈압예방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약사법」 제61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다.

5. 제조방법,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6.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학·사료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축산학·사료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는 제외한다.
7.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8.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사료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사료영양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예시: SCI급 논문인용은 허용된다)

나.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반려동물사료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라. 수의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수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사.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사료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제품만 금지된 사료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아. 해당 제품이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 식품 관련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법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9.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원료·등록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소비자가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을 포함)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13. 허위 및 과장 표시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광고의 범위

가. 동물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나. 동물의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다. 동물의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사료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사료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특수용도사료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령동물의 영양보급, 아픈 동물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동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바. 반려동물사료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해당 사료가 어린동물, 아픈동물 등으로 급여하는 특수용도사료라는 표현

2) 해당 사료가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노령기 등 동물의 특정 성장단계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사료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사. 해당 제품의 사료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급여방법 또는 급여량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행 “6.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로 분류되어 있는 규정을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하여 가독성을 높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지만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함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의 내용으로 “사료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사료영양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라고 신설함

-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표시중 문헌인용의 범위에 대한 질의와 기준 제시 요구가 높아 예시로 ‘SCI급 논문인용은 허용된다’는 표시를 하였음

- 이에 대하여 공인된 방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식품표시광고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 발생시에는 충분히 이에 대하여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반려동물사료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 규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현재 반려동물사료의 현실에 무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이외에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수의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수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사료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사료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해당 제품이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 식품 관련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법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등을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 적시함,

### 참고 입법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일부 변형

####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식품학·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나.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 또는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광고
-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광고

차.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카.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 □ 부칙

### 입법안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반려동물사료(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반려동물사료를 포함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반려동물사료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현재 반려동물사료 제조, 판매 및 수입업체들이 변화되는 표기사항에 대한 적응기간이 요구되고 새로이 포장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함
- 업체들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고시의 사례를 볼 때 최장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참고 입법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부 칙 <제2013-224호, 2013.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건강기능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 별표1 반려동물완전사료의 표시

입법안

[별표1] 반려동물완전사료의 표시

<예시1>

- 제품명 : 에이비씨 닭고기와 쌀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3
- 사료의 명칭 : 배합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반려동물완전사료
- 급여대상 : 3개월령 이상 전연령견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25.0% 이상	12.0% 이상	0.9% 이상	0.8% 이상	4.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닭고기(배합기준 24%), 쌀(배합기준 15%), 대두박, 비트펄프, 닭기름, 맥주효모, 염화칼륨, 치커리, DL-메티오닌, L-라이신, 탄산칼슘, 미네랄합제(철, 구리, 아연 등), 비타민합제(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B1 외),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항산화제)
- 실제 중량 : 2kg
- 제조 연월일 : 제품 뒷면 표시(년.월.일)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00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빨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2>

- 제품명 : 에이비씨 소고기와 참치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4
- 사료의 명칭 : 배합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반려동물완전사료
- 급여대상 : 1세 이상 고양이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11.0% 이상	6.0% 이상	0.2% 이상	0.2% 이상	1.0% 이하	3.0% 이하	80.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소고기(배합기준 30%), 참치(배합기준 15%), 타피오카, 카놀라유, 미네랄합제(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합제(비타민A, 비타민D3, 비타민E)
- 실제 중량 : 160g
- 제조 연월일 : 제품 측면 표시(년.월.일)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 채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00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급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반려동물사료 제조, 판매 및 수입업자들이 반려동물완전사료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시를 제시함

**현행 예시**

<예시3>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3
- 사료의 명칭 : 애완육성개사료1호
- 사료의 형태 : 액상고형물사료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6.5% 이상	2.0% 이상	0.2% 이상	0.5% 이상	0.4% 이하	3.0% 이하	20.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양고기, 대두유, 미량광물질류 합제(대표 원료 2~3가지 정도 표시), 비타민합제(대표 원료 2~3가지 정도 표시)
- 사료의 용도 : 생후 9개월 이상의 성견용
- 실제 중량 : 100g
- 제조 연월일 : 제품측면 표시
- 유통기간 : 제품측면 표시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
- 기타 : 유전자변형콩 포함 가능성 있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후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 □ 별표2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의 표시

### 입법안

[별표2]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의 표시

#### 1.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사료의 분류 표시(예시)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만성 신부전증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스트루바이트 결석 용해에 도움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스트루바이트 결석 형성 감소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요산 결석 형성 감소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옥살산 결석 형성 감소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시스틴 결석 형성 감소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급성 장 흡수 장애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장 흡수 장애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원료 및 영양 불내증 감소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소화 불량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만성 심장 기능 부전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포도당 공급 조절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만성 간 기능 부전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고지혈증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갑상선 기능 항진증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간에서 구리 함량 감소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과체중 개선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회복기 영양공급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피부염과 과도한 탈모 개선

## 2. 표시문구 및 기준

번호	목적의 분류	급여대상 표시문구	성분 표시사항	권장 급여기간	기타 사항
1	만성 신부전증 1)	이 제품은 만성 신부전증이 있는 '급여대상'에게 적합합니다. 제품의 인과 단백질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단백질 공급원 - 칼슘 - 인 - 칼륨 - 나트륨 - 필수 지방산(첨가된 경우)	초기에는 최대 6개월(2)	1. 권장되는 단백질 소화율: 최소 85%. 2.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및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2	스트루바이트 결석 용해에 도움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스트루바이트의 용해를 촉진하는데 사용되며, 제품의 마그네슘과 단백질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인 - 칼슘 - 나트륨 - 마그네슘 - 칼륨 - 염화물 - 황	5~12주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및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2. 식품의 과소포화 및/또는 산성화 특성을 뒷받침하는 실증 자료를 관련 관할 당국이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3	스트루바이트 결석 형성 감소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스트루바이트의 형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제품의 마그네슘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인 - 칼슘 - 나트륨 - 마그네슘 - 칼륨 - 염화물 - 황	초기에는 최대 6개월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및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4	요산 결석 형성 감소	이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요산염 결석의 형성을 줄이는데 사용되며 제품의 아연과 단백질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단백질 공급원	6개월까지 사용하나, 요산 대사에 비가역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평생 사용	1.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할 때, 단백질 품질 및 퓨린의 수준이 고려함 (예, 퓨린 함량이 낮은 단백질 공급원: 계란, 카제인, 콩 단백질 및 옥수수 글루텐 등) 2.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및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3. '낮은 수준의 단백질' 또는 '제한된 수준의 단백질 및 선택된 단백질 공급원 사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음



번호	사료의 분류	급여대상 표시문구	성분 표시사항	권장 급여기간	기타 사항
5	옥살산 결석 형성 감소	이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옥살산 염 결석의 형성을 줄이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칼슘과 비타민 D는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li> <li>- 칼슘</li> <li>- 나트륨</li> <li>- 마그네슘</li> <li>- 칼륨</li> <li>- 염화물</li> <li>- 유황</li> <li>- 비타민D(총계)</li> <li>- 하이드록시프로린</li> <li>- 소변 알칼리성 물질</li> </ul>	최대 6개월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및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6	시스틴 결석 형성 감소	이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시스틴 결석의 형성을 줄이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단백질과 유황 함유 아미노산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아미노산(총)</li> <li>- 단백질 공급원</li> <li>- 나트륨</li> <li>- 칼륨</li> <li>- 염화물</li> <li>- 소변 알칼리화 물질 (첨가된 경우)</li> </ul>	초기에는 최대 6개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및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li> <li>2. '노중 알칼리화 특성 및 낮은 수준의 단백질 또는 '선택된 단백질의 낮은 수준'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음</li> <li>3. 알칼리화 특성은 요중 pH <math>\geq 7</math>을 목표로 식단을 구성해야 함</li> </ol>
7	급성 장 흡수 장애	이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급성 장 흡수 장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제품의 전해질과 소화율이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트륨</li> <li>- 칼륨</li> <li>- 탄수화물 공급원(s)</li> </ul>	1-7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및 '급성 설사 기간과 회복기 동안 사용'이라는 문구 표시</li> <li>2. 고체 공급의 경우, 권장되는 전해질 범위는 일반적인 일일 자발적 물 섭취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li> </ol>
8	장 흡수 장애	이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장 흡수 장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제품의 전해질과 소화율이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율이 높은 원료 공급원(필요 시 원료 처리방법 포함)</li> <li>- 나트륨</li> <li>- 칼륨</li> </ul>	최대 12주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수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표시2. 나트륨과 칼륨 증가로 소화가 잘 되는 사료'

번호	사료의 분류	급여대상 표시문구	성분 표시사항	권장 급여기간	기타 사항
9	원료 및 영양 불내증 감소(3)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원료 및 영양소에 대한 불내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제품의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백질 공급원(추가된 경우, 필요 시 원료처리방법 포함)</li> <li>- 적절한 경우 처리를 포함한 탄수화물 공급원(추가된 경우)</li> <li>- 필수 지방산(추가된 경우)</li> </ul>	3주에서 8주: 과민증의 징후가 사라지면 이 사료는 1년까지 초기에 사용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 단백질 공급원의 수를 3개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됨</li> <li>2.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문구 표시</li> </ol>
10	소화 불량(4)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원료의 소화율과 지방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율이 높은 성분 공급원</li> <li>- 해당시 원료 처리방법 포함</li> </ul>	만성 취약 기능부전의 경우 초기에는 12주까지 지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표시</li> <li>2. '소화율이 높은 사료'라는 문구 표시</li> </ol>
11	만성 심장 기능 부전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만성 심장 기능 부전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나트륨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그네슘</li> <li>- 칼륨</li> <li>- 나트륨</li> </ul>	처음에는 최대 6개월까지 사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문구 표시</li> </ol>
12	포도당 공급 조절	이 제품은 당뇨병 '급여대상'의 포도당 공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탄수화물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수화물 공급원</li> <li>- 녹말</li> <li>- 총 당류</li> <li>- 프락토스(첨가된 경우)</li> <li>- 필수 지방산(추가된 경우)</li> <li>- 단쇄 및 중쇄 지방산 공급원(추가된 경우)</li> </ul>	처음에는 최대 6개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라는 문구 표시</li> <li>2. '낮은 수준의 단당류 및 이당류'라는 문구 표시</li> </ol>
13	만성 간 기능 부전	이 제품은 간 기능 장애가 있는 '급여대상'의 영양 공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백질 공급원</li> <li>- 구리(합계)</li> <li>- 나트륨</li> </ul>	초기에는 최대 4개월까지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높은 소화율에 기초한 선택된 단백질 공급원 사용(예: 유청, 카제인, 우유, 코티지 치즈, 계란, 가금류 및 콩 등)</li> <li>2.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및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li> </ol>

번호	사료의 분류	급여대상 표시문구	성분 표시사항	권장 급여기간	기타 사항
14	고지혈증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지방과 필수 지방산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조지방	초기에는 최대 2개월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라는 문구 표시 2. '낮은 수준의 지방'이라는 문구 표시
15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태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탄소는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요오드(합계)	초기에는 최대 3개월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라는 문구 표시
16	간에서 구리 함량 감소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간에서 구리를 줄이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구리는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구리(합계)	초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사용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라는 문구 표시
17	회복기 영양 공급	이 제품은 질병 후 '급여대상'의 영양 회복 및 제품의 에너지 공급에 사용됩니다. 필수 영양소와 쉽게 소화 가능한 원료는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소화율이 높은 원료 공급원 - 에너지값	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1. 건조 물질 $\geq 80\%$ 또는 유기물 $\geq 85\%$ 의 권장되는 외관 소화율(apparent digestibility) 2. 튜브를 통해 제공되도록 특별히 제시된 사료의 경우, 포장, 용기 또는 리벨에 '수의 관리·감독하에 투여'를 표시 3. '고에너지 밀도, 고농도 필수 영양소 및 소화성이 높은 성분'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 (1) 적절한 경우 제조자는 일시적인 신장 기능부전에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2) 일시적인 신부전으로 사료를 권장하는 경우 사용 권장 기간은 2~4주이어야 한다.
- (3) 특정 불내증을 위한 사료의 경우, 특정 불내증을 언급하면 '성분과 영양'을 대체할 수 있다
- (4) '외분비 채장 기능부전'이 추가될 수 있다.

### 3. 표시예시

#### <예시1>

- 제품명 : 에이비씨 카디악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30
- 사료의 명칭 : 배합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만성 심장 기능 부전

- 급여대상 : 이 제품은 10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만성 심장 기능 부전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나트륨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권장 급여기간: 초기에는 최대 6개월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16.0% 이상	18.0% 이상	0.4% 이상	0.2% 이상	4.0% 이하	6.0% 이하	12.0% 이하

- 추가 표시성분량  
 마그네슘 0.8g/kg  
 칼륨 7g/kg  
 나트륨 1.2g/kg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쌀, 가수분해대두단백, 닭기름, 연어유, 비트펄프, 이눌린, 향미제, 맥주효모, L-카르니틴, 탄산칼륨, 비타민합제(비타민A, D, E, K, B1, B2, B6, B12, 나이아신 외), 미네랄합제(철, 구리, 망간, 아연, 요오드 외), 구연산(산미제), 로즈마리 추출물(천연 향산화제)
- 실제 중량 : 1.5kg
- 제조 연월일 : 제품 뒷면 표시(년.월.일)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00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빨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처음에는 최장 6개월까지 급여 가능합니다.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반려동물사료 제조, 판매 및 수입업자들이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시를 제시함
- 표시방법은 유럽 FEDIAF의 PARNUTs를 기준을 적용하되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시의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유럽 FEDIAF의 PARNUTs 기준중에서 영양기능성에 가까운 목적인 ‘체중조절’, ‘털빠짐관리’ 등은 사실상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의 분류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함

□ 별표3 기타 반려동물사료의 표시

입법안

[별표3]

기타 반려동물사료의 표시

1. 표시문구 예시

- 기타 반려동물사료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익스트루전)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육포)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건조육)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껌)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동결건조)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비스킷)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습식)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습식캔)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레토르트)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트레이사료)
- 기타 반려동물사료-영양보충용
- 기타 반려동물사료-첨가제(비타민C)
- 기타 반려동물사료-첨가제(비타민 프리믹스)
- 기타 반려동물사료-유년기 펫밀크
- 기타 반려동물사료-음료

2. 표시예시

<예시1>

- 제품명 : 에이비씨 육포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5
- 사료의 명칭 : 혼합성단미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육포)
- 급여대상 : 반려견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40.0% 이상	5.0% 이상	0.1% 이상	0.03% 이상	0.4% 이하	6.0% 이하	28.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오리고기, 식물성 글리세린, 전분, 정제염, 소르빈산칼륨(산미제)
- 실제 중량 : 300g
- 제조 연월일 : 제품 뒷면 표시(년.월.일)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 채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00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후 빨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2>

- 제품명 : 에이비씨 덴탈츄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6
- 사료의 명칭 : 혼합성단미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껌)
- 급여대상 : 3개월령 이상 반려견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5.0% 이상	3.0% 이상	0.01% 이상	0.01% 이상	2.0% 이하	3.0% 이하	20.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타피오카, 이소말토올리고당, 현미분말, 젤라틴, 글리세린, 식이섬유,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유화제), 비타민합제(비타민B1, B2, B6, D3, E), 소르빈산 칼륨(산미제), 천연색소
- 실제 중량 : 150g
- 제조 연월일 : 제품 뒷면 표시(년.월.일)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 채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00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후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3>**

- 제품명 : 에이비캔-닭고기와 호박캔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7
- 사료의 명칭 : 배합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습식캔)
- 급여대상 : 전연령 고양이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12.5% 이상	0.5% 이상	0.1% 이상	0.1% 이상	0.5% 이하	1.0% 이하	82.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닭고기(배합기준 70%), 정제수, 호박(배합기준 5%), 쌀
- 실제 중량 : 70g
- 제조 연월일 : 제품 하단 표시(년.월.일)
- 유통기한 : 제품 하단 표시(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00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조문의 취지 및 내용】**

- 반려동물사료 제조, 판매 및 수입업자들이 기타 반려동물사료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시를 제시함

기타 반려동물사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 보다 많은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하여 현재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해외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추후 연구를 통해 구분기준 설정 논의가 요구됨



## 현행 예시

### <예시4>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MNOP4567
- 사료의 명칭 : 혼합성단미사료
- 사료의 형태 : 육포사료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65.0% 이상	7.0% 이하	0.4% 이하	3.0% 이하	24.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돈피, 치즈, 고구마
- 사료의 용도 : 애완견 간식용
- 실제 중량 : 100g
- 수입 연월일 : 별도표기
- 유통기한 : 2016.12.31까지
- 수입업자 :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
- 기타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냉장보관하면서 가급적 빨리 급여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소, 사슴 등 반추동물에게는 급여하지 마십시오.

## VII. 결론 및 제언

현행 사료관리법하에서 해외 및 국내 수요조사 및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표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분류체계 및 새로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반려동물사료에서 최근 영양기능성 사료에 대하여서는 소비자들의 표시 요구사항은 존재하지만 이의 정확한 분류기준이나 검증기준을 정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같은 상황인 바 추후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미 공청회 및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들과 같이 반려동물사료에 있어서 다른 모든 규정은 사료관리법의 배합사료,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분류에 따르되 표시제도만 예외로 별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이는 본 연구의 범위가 법 전체가 아닌 고시규정을 중심으로 한 한계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사료를 사료관리법과 분리하여 별도의 법체계를 성립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식품에서는 표시제도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식품표시에 대한 실증검증기준이 존재하지만 현재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실증 검증기준에 대한 규정은 본 연구에 담지 못하였다. 이는 현재 반려동물사료의 표시가 이제 막 양축사료표시와 분리되는 시점으로 이러한 분리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상의 단계를 논의하기에는 무리한 상황이었기에 이후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제도가 확정된 후 추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반려동물사료 국내외 기준 및 규격 비교 및 제도개선 연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21.
- 김현희,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 (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사)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반려동물에 특화된 사료관리법령 제정안 마련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22.
- (사)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사료 관련 법령 체계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20.
- (사)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사)한국펫사료협회, “펫푸드 특화 분류·표시 기준마련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 2023.
- (사)한국펫사료협회, 반려동물사료의 품질 및 안전 관리체계 기반 구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2020.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제정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20.
-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식품시장 뉴스레터 펫푸드, 2022.
- 한국법제연구원,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2017)
- 한국펫사료협회.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2017.8.)
-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사료 유통 및 표시 실태조사, 2021.
- 황원경·이신애, 2023한국반려동물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 황원경·손광표, 2021한국반려동물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
- AAFCO, AAFCO Pet Food and Speciality Pet Food Labeling Guide, 2016.
- FAO, Handbook on Food Labelling to Protect Consumers, 2016.
- FEDIAF, Code of Good Labelling Practice for Pet Food. 2019.

## [부록1]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4와 같다. 단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상의 반려동물중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사료의 경우에는 별표4의2에 따른다.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반려동물사료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

##### 1.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사항

- 가. 제품명
- 나.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다. 사료의 명칭
- 라.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마. 급여대상
- 바. 등록성분량
- 사.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아. 주의사항
- 자. 내용량 (g, kg, 톤)
- 차.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
- 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단 판매업자의 경우 제3자에게 주문·생산하여 주문자인 판매업자 상표를 부착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만 해당
- 타. 재포장 내용, 재포장 업체명 및 주소
- 파.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 표시방법

- 가. 위 사항의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부록2]

### 반려동물사료의 표시기준(안)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사료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명(브랜드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2.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가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사료는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소분판매하는 사료는 소분용 원 사료의 제조연월일로, 원 사료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사료는 원 사료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3. "유통기한"이라 함은 사료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4.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사료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사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5.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사료를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6. “정보표시면”이라 함은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 제3조(의무 표시사항)

규칙 제14조 별표4의2 의무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제품명 : 제5조 참조
2. 반려동물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관할 시·도에 등록한 반려동물사료의 성분등록번호
3. 사료의 명칭 : 법 제2조제2호 단미사료(혼합성단미사료 포함) 및 제3호 배합사료
4.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제6조 참조
5. 급여대상 : 반려동물사료를 급여하는 동물의 종류+ 생애단계로 표시한다. 단 생애단계는 불

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표시 예: 개와 고양이용, 반려견, 반려묘용, 3개월 이상 자견용, 3개월 이상 자묘용, 1세 이상 성견용, 1세 이상 성묘용, 반려동물용, 전연령견용, 전연령묘용, 7세 이상 반려견용, 7세 이상 반려묘용 등]

6. 등록성분량 : 시·도에 성분등록 한 반려동물사료의 등록성분합량
7.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배합비율이 큰 순으로 표시한다.(사용한 원료 중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상의 명칭으로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는 원료의 경우는 괄호안에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원료명을 병기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 사료의 사용과 보관 등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붉은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
9. 내용량 : g, kg, 톤을 원칙으로 하되 액체인 경우 ml, l로 표시
10.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 : 제조된 날짜를 표시
11.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OEM사료의 경우 판매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표시 )
12. 재포장 내용 : 사료를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표시사항을 그대로 표시하고,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도 표시.

#### 제4조(의무표시사항의 표시방법)

제3조의 의무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항에 따라 표시한다.

1.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입되는 사료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제품명 등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 할 수 있다.
2.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cm<sup>2</sup>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개별포장(내포장)에 제품명 등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외포장 내용으로 정보제공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내용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사유: 소단량 제품에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할 경우, 표시면적이 적어 문구표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표시면적의 확대 및 표시방법의 다양한 대체 방법이 필요함).
3.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사료의 경우에는 내포장별로 반려동물사료의 분류 및 급여대상, 등록성분량, 중량,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4. 표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각인(刻印) 또는 소인(消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벌크사료 운반차량 및 탱크로리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가. 제품포장의 특성상 인쇄,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톤백포장, 드럼통, 컨테이너, 합성수지제 용기 등)

나. 통·병조립 및 병제품 등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

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사료 제조업자의 제품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

라. 아무런 표시가 없는 포장재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

마. 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 한 내용이 변경되어 시·도지사에 변경등록이 수리된 경우와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및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표시내용의 오·탈자, 등록성분의 단위, 주의사항 및 재포장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등록성분량, , 중량,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변경처리 할 수 없다.

바. 소량 생산하는 제품 등 특성상 공통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다만, 제조연월일은 제외한다.

5.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인 또는 압인(壓印) 등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포인트)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① 제품명	8 이상
	②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8 이상
	③ 사료의 명칭	8 이상
	④ 반려동물사료의 분류	8 이상
	⑤ 급여대상	8 이상
	⑥ 등록성분량	7 이상
	⑦ 사용한 원료의 명칭	12 이상
	⑧ 실제 중량	10 이상
	⑨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8 이상
정보표시면 또는 기타 표시면	①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수입제품의 경우 포함)	8 이상
	② 재포장 내용 표시	10 이상
	③ 주의사항	10 이상
	④ 기타사항	6 이상

나. 주 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면적이 200cm<sup>2</sup>이하인 제품의 경우 가목의 표시사항에서 규정한 활자 크기보다 2포인트 작게 표시할 수 있다.

다.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가.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6. 사료의 유형 및 급여대상 : 제6조 참조

7. 등록성분량 : 등록 성분량은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한다.

8.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및 함량 : 제8조 참조

9. 내용량

가. 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톤, kg, g등)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kl, l, ml 등)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으로 표시하고,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나. 급여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 제외)와 함께 포장되는 사료는 액체를 뺀 사료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정제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한 용기·포장내의 정제수와 총중량을, 캡슐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캡슐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포제의 중량은 내용물을 포함한 캡슐 전체 중량의 50%미만이어야 한다.

10.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제조일은 “○○년○○월○○일”, “○○.○○.○○”, “○○○○년○○월○○일”, “○○○○.○○.○○” 또는 “유통기한으로부터 ○○월 전 제조”로 표시하여야 하고,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수입되는 사료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가목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제조일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빠른 제조일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11.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표시

가. 유통기한은 제조일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유통기한의 표시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이면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이면 "제조일로부터 ○○개월까지 또는 ○○년까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입되는 사료인 경우 수출국의 유통기한 표시순서가 위의 2) 표시순서와 다를 때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해당 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는 「냉장보관」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12. 제조업자의 상호(공장 명칭) 및 주소 표시 :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13. 판매업자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 판매업자의 경우 제3자에게 판매업자 본인이 주문·생산하여 주문자인 판매업자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재포장내용 표시 : 사료를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표시 사항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도 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재포장한 자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 15. 수입사료에 대한 표시방법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료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에는 위 제4호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으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는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수입 신고한 해당 사료의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한글 표시 스티커 등에 당해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수입되는 사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1)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사료 및 사료 원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외국의 인증마크 중 국내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HACCP 사료공장, 유기농, 친환경 등)은 표시할 수 없다. 수입된 제품에 표기된 경우에는 스티커등으로 가려야 한다.

마. 수출국의 등록성분 표시사항이 사료성분등록증의 성분량과 비교하여 「사료검사기준」 별표 4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가려야 한다.

#### 제5조 (제품명 표시방법)

1. 제품명(또는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 일부에 성분명 또는 원료명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위 원료의 함량비율(%)의 표시는 배합기준, 건물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함께 표시 해야한다. [예시: 연어(배합기준 22%, 황태분말(건물기준 1.5%) ]

#### 제6조(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및 급여대상 표시방법)

##### 1. 반려동물완전사료

가. “반려동물완전사료”란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반려동물사료를 의미한다.

나. “반려동물완전사료”라고 표시한다.

다. 반려동물완전사료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사료영양학적으로 검증되거나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예시 : 미국사료관리자협회(AAFCO; Association of America Feeding Control Officials) 또는 유럽반려동물사료협회(FEDIAF; European Pet Food Industry)의 영양가이드라인] 해당 기준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1]과 같다.

## 2.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

가.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란 반려동물이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건강한 동물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동물에게 식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 급여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및 가공된 사료를 의미한다.

나.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라고 표시한다.

다. [별표2]의 ‘목적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 급여전 수의사와 상담을 권고하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동물의약품에 해당되지 않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수의학적으로 검증되거나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에 부합한다는 표시와 그 기준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유럽반려동물사료협회(FEDIAF)의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에서 발표한 PARNUTs(특정한 영양 목적을 위한 사료)의 목록권장영양소 함량기준]

사.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2]와 같다.

## 3. 기타 반려동물사료

가. “기타 반려동물사료”란 반려동물사료중 1호와 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료를 의미한다.

나. “기타 반려동물사료”라고 표시한다.

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다.

## 제7조(의무 표시사항 외 표시방법)

1.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 표시: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9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 참고)

2.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 표시: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견본품이나 비매품 등)는 제품명,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유통기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수출사료에 대한 표시: 수출사료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5.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체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대한 포장재질 표시

가. 합성수지체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재질표시 생략 가능

6.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사료의 표시: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 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7. 품질유지기한

가. 소비자의 올바른 사료사용을 위하여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통조림 형태로 되어 있는 사료는 품질유지기한을 가급적 표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유지기한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제3조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사료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8.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사료명칭,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9. 기타 표시사항

가. 레토르트(retort)사료는 “레토르트사료”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희석·용해하여 급여하는 제품은 그 희석배수 또는 희석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1부터 별표 13의 비고란에서 표시하도록 기준이 설정된 사항은 표시하여야 하며, 미생물제를 이용해서 발효한 사료 중 그 명칭 앞에 “발효”를 표시한 경우(예 : 발효대두박)에는 g당 균주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의3 참조).

**제8조(원료의 표시방법)**

1. 사료의 제조시 사용한 모든 원료의 명칭(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관계없이 표시할 수 있다.

2. 프리믹스원료 및 각종 합제류 등의 복합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과 함께 괄호안에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료에 포함된 원료가 제품명에 사용되는 경우 또는 반려동물의 건강·기능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명칭 및 해당 원료의 함량 또는 함량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식육의 특정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식육의 원료육 명칭 뒤에 괄호로 그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식육의 함량을 해당 표시와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어분, 육분, 육골분, 가금부산물건조분 등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 명칭에 “OO고기”라고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사용한 원료 중 사료공정서의 명칭으로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는 다음 원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이외 원료의 경우 괄호안에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원료명으로 병기할 수 있다.

사료공정서의 명칭	표기명칭
가금부산물건조분 (도축 및 가금도축부산물, 계육분 포함)	가금(단일 조류 원료구성일 경우 조류명 표시 가능, 예: 닭, 오리)분말
수지박 (우지박, 돈지박을 포함)	고기(단일 동물 원료구성일 경우 조류명 표시 가능, 예: 소, 돼지)분말
어분(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포함)	생선(단일 생선일 경우 어종표시 가능, 예: 참치)분말
유도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처리 등을 한 것을 포함)	가수분해(단일 동물 원료일 경우 동물명 표시 가능, 예: 닭, 연어) 단백질
육분	고기(단일 동물 원료일 경우 동물명 표시 가능, 예: 소, 돼지)분말
육골분	고기(단일 동물 원료일 경우 동물명 표시 가능, 예: 소, 돼지)뼈 혼합분말
어골분	생선(단일 생선일 경우 어종명 표시 가능, 예: 참치)뼈 분말
계유	닭기름
돈지(돼지기름)	돼지기름
우지(소기름)	소기름
양지(양기름)	양기름
어유(어류기름)	생선기름

6.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제6조제호 규정에 의한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또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및 별표 6에 기재된 단미·보조사료를 원료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 및 별표 6, 별표 13 제2호 참조)

가. 원료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쓰고, 필요시 원소 및 화합물의 화학 명칭을 공정에 기재된 영문명을 병기.

예) 비타민B<sub>12</sub> (Cyanocobalamin), 비타민C (Ascorbic acid)

나. 유효 성분명 및 함량, 부형물질 등의 명칭 및 함량

다. 첨가할 수 있는 배합사료의 종류 및 양

라. 보존상의 주의사항은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여진 보존방법을 기재한다.

7. 단미사료(광물성사료에 한한다)·보조사료·식품첨가물(이하 “보조사료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료를 제조 시에 직접 사용·첨가하는 보조사료등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당 규정에 따라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식용색소청색5호(착색료), 안식향산(보존료)]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5에 해당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당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6에 해당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주용도(중복된 사용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주요 목적을 주용도로 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6에서 규정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한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제9조(원료표시방법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전분은 “전분명(OO전분)” 또는 “전분” 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당해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료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보조사료(식품첨가물포함)등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보조사료등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료의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 제품에 제거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주표시면의 면적이 30cm<sup>2</sup> 이하인 것은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제10조(강조표시 기준)

1. '유기'등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반려동물 유기사료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2. "천연"의 표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며, 합성결착제·인공(조합)향·합성착색제·합성보존제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다.
3.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휴먼그레이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100% 휴먼그레이드" 또는 이와 유사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관련법상 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5. 열량 관련하여 "덜", "light", "lite" 또는 "저칼로리"용어사용
  - 가. 반려견사료의 경우(단, 건물기준이 아니라 급여기준임)
    - 1) 수분 20%이하 사료에서는 3100kcal/kg미만인 경우
    - 2) 수분 20%-65% 이하 사료에서는 2500kcal/kg미만인 경우
    - 3) 수분 65%이상 사료에서는 900kcal/kg미만인 경우
  - 나. 반려묘사료의 경우(단 건물기준이 아니라 급여기준임)
    - 1) 수분 20%이하 사료에서는 3250kcal/kg미만인 경우
    - 2) 수분 20%-65% 이하 사료에서는 2650kcal/kg미만인 경우
    - 3) 수분 65%이상 사료에서는 950kcal/kg미만인 경우
6. 지방관련 "저지방", "지방함량을 줄인", "less", "reduced"용어사용
  - 가. 개사료의 경우(단, 건물기준이 아니라 급여기준임)
    - 1) 수분 20%이하 사료에서는 지방 9%이하일 경우
    - 2) 수분 20%-65% 이하 사료에서는 지방 7%이하인 경우
    - 3) 수분 65%이상 사료에서는 지방 4%이하인 경우
  - 나. 반려묘사료의 경우(단 건물기준이 아니라 급여기준임)
    - 1) 수분 20%이하 사료에서는 지방 10%이하일 경우

- 2) 수분 20%-65% 이하 사료에서는 지방 8%이하인 경우
  - 3) 수분 65%이상 사료에서는 지방 5%이하인 경우
7. 특정균 등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 등의 g당 함유균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사료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합성착향료를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무 보존제(또는 무 보존료)”, “보존제 무첨가(또는 보존료 무첨가)”, “무 착색제(또는 무 색소)”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존제와 착색제를 직접 첨가하지 않고, 원재료로부터 이행(carry-over)된 보존제와 착색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표시가 가능하다.

#### 제11조(등록성분의 실제 측정값의 허용 오차범위)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3의2 제3호 참조, 권고기준)

1. 최저량(이상)에 해당하는 등록성분의 실제측정 값은 가급적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2. 최고량(이하)에 해당하는 등록성분의 실제측정 값은 가급적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위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7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성분량이 “최저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측정 값은 표시 값 이상이어야 하고, 성분규격이 “최대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 값 이하이어야 한다.
4. 실제 측정값이 위 1항 내지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사료검사기준 별표 4의 허용오차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인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2조(냉동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사항)

1. 냉동 반려동물사료는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반려동물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는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은 효모 또는 유산균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3. 냉동 반려동물사료는 해당 사료의 냉동보관방법 및 조리시의 해동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조리 또는 가열처리가 필요한 냉동 반려동물사료는 그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제조업체가 냉동 사료를 해동하여 출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 사료로서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주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주의사항 표시)

1.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 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냉동 유통되는 사료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다만, 제조업체가 냉동된 사료를 해동하여 출고할 때에는 "이 사료는 냉동된 사료를 해동한 사료이니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하여야 한다.
3. 수분함량이 14%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개봉 후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개봉 후 냉장 보관하거나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누구든지 반려동물사료에는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을 포함)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폴리스티렌,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용기·포장재는 가열·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허위 및 과장 광고의 범위)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외국어로 표시·광고한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등록과 법 제12조에 따른 성분등록에 따라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법 제16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표시한 명칭 및 표시·광고
3.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가. “사료”는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 할 수 없다. 다만,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는 제6조2호에 따른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II.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기준 참고

다. 「약사법」 제2조제4호에서 의약품을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기계·장치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어 빈혈예방, 고혈압 예방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약사법」 제61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다.

5. 제조방법,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6.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학·사료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축산학·사료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는 제외한다.

7.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8.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사료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사료영양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예시 : SCI급 논문인용은 허용된다)

나.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반려동물사료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 라. 수의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수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 사.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사료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사료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 아. 해당 제품이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 식품 관련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법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9.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원료·등록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소비자가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을 포함)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13. 허위 및 과장 표시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광고의 범위
- 가. 동물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 나. 동물의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다. 동물의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균)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사료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사료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1) 특수용도사료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령동물의 영양보급, 아픈 동물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동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바. 반려동물사료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해당 사료가 어린동물, 아픈동물 등으로 급여하는 특수용도사료라는 표현

2) 해당 사료가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노령기 등 동물의 특정 성장단계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사료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사. 해당 제품의 사료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급여방법 또는 급여량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반려동물사료(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반려동물사료를 포함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반려동물사료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별표1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시

별표2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 표시

별표3 기타 반려동물사료 표시

※(별표1)

반려동물완전사료의 표시

1. 표시문구 예시

<예시1>

- 제품명 : 에이비씨 닭고기와 쌀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3
- 사료의 명칭 : 배합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분류 : 반려동물완전사료
- 급여대상 : 3개월령 이상 전연령견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25.0% 이상	12.0% 이상	0.9% 이상	0.8% 이상	4.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닭고기(배합기준 24%), 쌀(배합기준 15%), 대두박, 비트펄프, 닭기름, 맥주효모, 염화칼륨, 치커리, DL-메티오닌, L-라이신, 탄산칼슘, 미네랄합제(철, 구리, 아연 등), 비타민합제(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B1 외),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항산화제)
- 실제 중량 : 2kg
- 제조 연월일 : 제품 뒷면 표시(년.월.일)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OO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빨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2>

- 제품명 : 에이비씨 소고기와 참치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4
- 사료의 명칭 : 배합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명칭 : 반려동물완전사료
- 급여대상 : 1세 이상 고양이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11.0% 이상	6.0% 이상	0.2% 이상	0.2% 이상	1.0% 이하	3.0% 이하	80.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소고기(배합기준 30%), 참치(배합기준 15%), 타피오카, 카놀라유, 미네랄합제(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합제(비타민A, 비타민D3, 비타민E)
- 실제 중량 : 160g
- 제조 연월일 : 제품 측면 표시(년.월.일)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OO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식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냉장보관 하거나 빨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별표2)

반려동물특수목적영양사료의 표시

1.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사료의 분류 표시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만성 신부전증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스트루바이트 결석 용해에 도움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스트루바이트 결석 형성 감소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요산 결석 형성 감소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옥살산 결석 형성 감소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시스틴 결석 형성 감소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급성 장 흡수 장애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장 흡수 장애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원료 및 영양 불내증 감소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소화 불량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만성 심장 기능 부전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포도당 공급 조절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만성 간 기능 부전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고지혈증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갑상선 기능 항진증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간에서 구리 함량 감소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회복기 영양공급

2. 표시문구 및 기준

번호	목적의 분류	급여대상 표시문구	성분 표시사항	권장 급여기간	기타 사항
1	만성 신부전증 1)	이 제품은 만성 신부전증이 있는 ‘급여대상’에게 적합합니다. 제품의 인과 단백질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단백질 공급원 — 칼슘 — 인 — 칼륨 — 나트륨 — 필수 지방산(첨가된 경우)	초기에는 최대 6개월 (2)	1. 권장되는 단백질 소화율: 최소 85%. 2.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및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2	스트루바이트 결석 용해에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스트루바이트의 용해를 촉진하는	— 인 — 칼슘 — 나트륨	5~12주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및 '항상 물

	도움	데 사용되며, 제품의 마그네슘과 단백질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마그네슘 — 칼륨 — 염화물 — 황		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2. 식품의 과소포화 및/또는 산성화 특성을 뒷받침하는 실증 자료를 관련 관할 당국이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3	스트루바이트 결석 형성 감소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스트루바이트의 형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제품의 마그네슘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인 — 칼슘 — 나트륨 — 마그네슘 — 칼륨 — 염화물 — 황	초기에는 최대 6개월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및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4	요산 결석 형성 감소	이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요산염 결석의 형성을 줄이는데 사용되며 제품의 아연과 단백질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단백질 공급원	6 개월 까지 사용 하나, 요산 대사에 비가역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평생 사용	1.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할 때, 단백질 품질 및 퓨린의 수준이 고려함 (예. 퓨린 함량이 낮은 단백질 공급원: 계란, 카제인, 콩 단백질 및 옥수수 글루텐 등) 2.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및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3. '낮은 수준의 단백질' 또는 '제한된 수준의 단백질 및 선택된 단백질 공급원 사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음
5	옥살산 결석 형성 감소	이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옥살산 염 결석의 형성을 줄이는데 사용되며, 제품의 칼슘과 비타민 D는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인 — 칼슘 — 나트륨 — 마그네슘 — 칼륨 — 염화물 — 유황 — 비타민D(총계) — 하이드록시프롤린 — 소변 알칼리성 물질	최대 6개월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및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6	시스틴 결석 형성 감소	이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시스틴 결석의 형성을 줄이는데 사용되며, 제품의 단백질과 유황	— 황아미노산(총) — 단백질 공급원 — 나트륨 — 칼륨 — 염화물	초기에는 최대 6개월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및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함유 아미노산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소변 알칼리화 물질 (첨가된 경우)		2. '노중 알칼리화 특성 및 낮은 수준의 단백질' 또는 '선택된 단백질의 낮은 수준' 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음 3. 알칼리화 특성은 요중 pH $\geq 7$ 을 목표로 식단을 구성해야 함
7	급성 장 흡수 장애	이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급성 장 흡수 장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제품의 전해질과 소화율이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나트륨 — 칼륨 — 탄수화물 공급원(s)	1-7일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및 '급성 설사 기간과 회복기 동안 사용'이라는 문구 표시 2. 고체 공급의 경우, 권장되는 전해질 범위는 일반적인 일일 자발적 물 섭취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
8	장 흡수 장애	이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장 흡수 장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제품의 전해질과 소화율이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소화율이 높은 원료 공급원(필요 시 원료처리방법 포함) — 나트륨 — 칼륨	최대 12주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표시 2. 나트륨과 칼륨 증가로 소화가 잘 되는 사료'
9	원료 및 영양 불내증 감소 (3)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원료 및 영양소에 대한 불내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제품의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단백질 공급원(추가된 경우, 필요 시 원료처리방법 포함). — 적절한 경우 처리를 포함한 탄수화물 공급원(추가된 경우). — 필수 지방산(추가된 경우)	3주에서 8주: 과민증의 징후가 사라지면 이 사료는 1년까지 초기에 사용할 수 있다.	1. 주요 단백질 공급원의 수를 3개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됨 2.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문구 표시
10	소화 불량 (4)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원료의 소화율과 지방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소화율이 높은 성분 공급원 — 해당시 원료 처리방법 포함	만성 취약 기능부전의 경우 초기에는 12주까지 지속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표시 2. '소화율이 높은 사료'라는 문구 표시
11	만성 심장 기능 부전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만성 심장 기능 부전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나트륨은 과학적	— 마그네슘 — 칼륨 — 나트륨	처음에는 최대 6개월까지 사용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문구 표시

		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2	포도당 공급 조절	이 제품은 당뇨병 ‘급여대상’의 포도당 공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탄수화물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탄수화물 공급원 — 녹말 — 총 당류 — 프럭토스(첨가된 경우) — 필수 지방산(추가된 경우) — 단쇄 및 중쇄 지방산 공급원(추가된 경우)	처음에는 최대 6개월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라는 문구 표시 2. '낮은 수준의 단당류 및 이당류'라는 문구 표시
13	만성 간 기능 부전	이 제품은 간 장애가 있는 ‘급여대상’의 영양 공급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단백질 공급원 — 구리(합계) — 나트륨	초기에는 최대 4개월까지 가능	1. 높은 소화율에 기초한 선택된 단백질 공급원 사용(예: 유청, 카제인, 우유, 코티지 치즈, 계란, 가금류 및 콩 등) 2.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및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14	고지혈증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지방과 필수 지방산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조지방	초기에는 최대 2개월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라는 문구 표시 2. '낮은 수준의 지방'이라는 문구 표시
15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태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탄소는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요오드(합계)	초기에는 최대 3개월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라는 문구 표시
16	간에서 구리 함량 감소	이 제품은 ‘급여대상’의 간에서 구리를 줄이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구리는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구리(합계)	초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사용	1. 주의사항에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라는 문구 표시
17	회복기 영	이 제품은 질병 후	— 소화율이 높은 원	회복이 완료	1. 건조 물질 $\geq 80\%$ 또는 유기

양 공급	‘급여대상’의 영양 회복 및 제품의 에너지 공급에 사용됩니다. 필수 영양소와 쉽게 소화 가능한 원료는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료 공급원 — 에너지값	될 때까지	물 ≥85%의 권장되는 외관 소화율(apparent digestibility) 2. 튜브를 통해 제공되도록 특별히 제시된 사료의 경우, 포장, 용기 또는 라벨에 '수의 관리·감독 하에 투여'를 표시 3. '고에너지 밀도, 고농도 필수 영양소 및 소화성이 높은 성분'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	-------------------------------------------------------------------------	-----------------	-------	------------------------------------------------------------------------------------------------------------------------------------------------------------------------

- (1) 적절한 경우 제조자는 일시적인 신장 기능부전에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2) 일시적인 신부전으로 사료를 권장하는 경우 사용 권장 기간은 2~4주이어야 한다.
- (3) 특정 불내증을 위한 사료의 경우, 특정 불내증을 언급하면 '성분과 영양'을 대체할 수 있다
- (4) '외분비 취약 기능부전'이 추가될 수 있다.

### 3. 표시예시

<예시1>

- 제품명 : 에이비씨 카디악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30
- 사료의 명칭 : 배합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반려동물 특수목적영양식-만성 심장 기능 부전
- 급여대상 : 이 제품은 10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만성 심장 기능 부전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며, 제품의 나트륨은 과학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권장 급여기간: 초기에는 최대 6개월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16.0% 이상	18.0% 이상	0.4% 이상	0.2% 이상	4.0% 이하	6.0% 이하	12.0% 이하

- 추가 표시성분량  
 마그네슘 0.8g/kg  
 칼륨 7g/kg  
 나트륨 1.2g/kg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쌀, 가수분해대두단백, 닭기름, 연어유, 비트펄프, 이눌린, 향미제, 맥주효모, L-카르니틴, 탄산칼륨, 비타민합제(비타민A, D, E, K, B1, B2, B6, B12, 나이아신 외), 미네랄합제(철, 구리, 망간, 아연, 요오드 외), 구연산(산미제), 로즈마리 추출물(천연 향산화제)
- 실제 중량 : 1.5kg
- 제조 연월일 : 제품 뒷면 표시(년.월.일)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OO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빨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전 또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처음에는 최장 6개월까지 급여 가능합니다. 항상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별표3)

기타 반려동물사료의 표시

1. 표시문구 예시

기타 반려동물사료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익스트루전)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육포)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건조육)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껌)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동결건조)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비스킷)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습식)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습식캔)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레토르트)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트레이사료)

기타 반려동물사료-영양보충용

기타 반려동물사료-첨가제(비타민C)

기타 반려동물사료-첨가제(비타민 프리믹스)

기타 반려동물사료-유년기 펫밀크

기타 반려동물사료-음료

2. 표시예시

<예시1>

- 제품명 : 에이비씨 육포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5
- 사료의 명칭 : 혼합성단미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육포)
- 급여대상 : 반려견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40.0% 이상	5.0% 이상	0.1% 이상	0.03% 이상	0.4% 이하	6.0% 이하	28.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오리고기, 식물성 글리세린, 전분, 정제염, 소르빈산칼륨(산미제)
- 실제 중량 : 300g
- 제조 연월일 : 제품 뒷면 표시(년.월.일)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OO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후 빨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2>

- 제품명 : 에이비씨 덴탈츄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6
- 사료의 명칭 : 혼합성단미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껌)
- 급여대상 : 3개월령 이상 반려견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5.0% 이상	3.0% 이상	0.01% 이상	0.01% 이상	2.0% 이하	3.0% 이하	20.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타피오카, 이소말토올리고당, 현미분말, 젤라틴, 글리세린, 식이섬유,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유화제), 비타민합제(비타민B1, B2, B6, D3, E), 소르빈산 칼륨(산미제), 천연색소
- 실제 중량 : 150g
- 제조 연월일 : 제품 뒷면 표시(년.월.일)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00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후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3>

- 제품명 : 에이비캔-닭고기와 호박캔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7
- 사료의 명칭 : 배합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기타 반려동물사료-간식(습식캔)
- 급여대상 : 전연령 고양이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12.5% 이상	0.5% 이상	0.1% 이상	0.1% 이상	0.5% 이하	1.0% 이하	82.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닭고기(배합기준 70%), 정제수, 호박(배합기준 5%), 쌀
- 실제 중량 : 70g
- 제조 연월일 : 제품 하단 표시(년.월.일)
- 유통기한 : 제품 하단 표시(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00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부록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4의 2) 대조표

< 현행 >	<개정(안)>
<p>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4와 같다.</p> <p>■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p> <p>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p> <p>1.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6) 주의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11) 재포장 내용 12)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표시방법 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한다. 2) 사료의 형태는 사료 내용물이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다.</p>	<p>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4와 같다. 단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상의 반려동물중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사료의 경우에는 별표4의2에 따른다.</p> <p>■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p> <p>반려동물사료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14조 관련)</p> <p>1.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다. 사료의 명칭 라.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마. 급여대상 바. 등록성분량 사. 사용한 원료의 명칭 아. 주의사항 자. 내용량 (g, kg, 톤) 차.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 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단 판매업자의 경우 제3자에게 주문·생산하여 주문자인 판매업자 상표를 부착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만 해당 타. 재포장 내용, 재포장 업체명 및 주소 파.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2. 표시방법 가. 위 가항의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가) 종류

- (1) 가루: 곱게 가루로 만든 것
- (2) 펠릿: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
- (3) 크럼블: 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 목적에 맞게 분쇄·선별한 것
- (4) 후레이크: 사료를 그대로 또는 증기로 찌서 납작하게 압편(壓片)한 것
- (5) 익스투루전(膨化):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을 호화(糊化)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
- (6) 액상: 용액으로 된 것
- (7) 그 밖의 형태: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

나) 표시 예

사료의 형태: 펠릿사료

3) 등록 성분량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 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한다.

4)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서대로 적는다. 다만, 식물성의 곡류, 강피류 및 박류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쓰지 아니하고 곡류·강피류·박류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며, 첨가한 단미사료 중 광물성과 보조사료는 명칭을 적고, 다음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

"위 사용 원료는 공장 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은 첨가한 동물용의약품의 명칭(상품명은 괄호 안에 적을 수 있음)과 사용된 함량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로 표시하며, 휴약기간(休藥期間)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일 경우에는 그 휴약기간을 명시한다.

6)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증성분표 하

단에 **(주의):** 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가 포함된 배합사료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사료의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자가 혼란을 줄 정도로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제품의 상품명을 과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실제 중량은 제품의 실제 중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단위는 포장 크기에 따라 "kg" 또는 "톤"으로 표시한다.

9)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은 제조(수입) 포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하게 표시한다.

10) 재포장 내용은 재포장 사유·날짜·중량,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고, 그 외에 등록성분량 등은 재포장 전에 표시된 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할 수 있다.

## 2.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사료의 용도

6) 주의사항

7) 실제 중량 (kg 또는 톤)

8)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10) 재포장 내용

11)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나. 표시방법

1)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괄호 안에 표시할 수 있다.

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사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품명을 적는다.

3) 삭제 <2015.1.2.>

4) 주의사항은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증성분표 하단에 그 내용을 **(주의):** 형태로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추동물을 원료

<p>로 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는 "반추가축 사료로 사용금지 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돼지전용 남은음식물사료(80℃에서 30분 이상 가열)는 "돼지 외에는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각각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p> <p>5) 사료의 형태, 등록성분량, 사료의 용도, 실제 중량, 제조(수입) 연월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및 재포장 내용은 배합사료의 표시방법과 같다.</p> <p>6) 삭제 &lt;2015.1.2.&gt;</p>	
-----------------------------------------------------------------------------------------------------------------------------------------------------------------------------------------------------------------------------------------------------------------	--